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오늘을 여는 <mark>주인공, 청소년</mark> 입니다!"



2020. 7. ~ 2021. 6.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오늘을 여는 <mark>주인공, 청소년</mark> 입니다!"



2020. 7. ~ 2021. 6.



1	인사말	
	발간사(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격려사(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2	제5대 정남시청소년행복의회 소개 • 소개	08
3	화보 • 의정활동	12
4	행복인회 규정 • 1. 운영규정 • 2. 윤리헌장 • 3. 행동강령	. •
5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정활동 현황 • 1. 지역구별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온라인 청소년 선거를 통한 선출직 의원제 시행 □ • 1-1. 면접심사 및 청소년 선거 오리엔테이션 □ • 1-2. 제5대 청소년 선거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 1-3.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선거 운영 □ • 1-4. 최종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 • 1-5. 당선증 교부식 및 의정연수	28 29 30 30
	2. 온라인 의정활동 한계를 보완하는 교육 커리큘럼 구성 및 운영 3.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 3-1. 2021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심의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3-2. 제5대 행복의회 입법제안서 제작 및 전달	33 34 34 35
	4.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청소년 의견수렴 활동 및 정책제안 추진 4-1. 성남시 청소년 의견수렴 및 정책제안 활동 - 토론회&제안대회 등 4-2. 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실현을 위한 주요 인사 간담회	36 37
	5. 청소년 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입법(정책)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문단」운영 5-1. 제5대 행복의회 자문단 위촉 5-2. 제5대 입법(정책)제안 추진사항 점검, 피드백을 위한 간담회 6. 성당시청소년해보이히 으스사례 및 유역 노하우 저대	38
	• N 싱닉시성소년액본의 인 우수사례 및 운영 노하우 선때 ···································	/. []



6 입법(정책)제안

	〈조례제안〉		
	• 1. 성남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44		
	• 2.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개정53		
	• 3. 성남시 청소년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58		
	• 4. 성남시학생회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64	
	• 5.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 70	
	• 6.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78	
	• 7.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88	
	• 8. 성남시 학교 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 제정	94	
	• 9.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개정		100
	• 10. 성남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06
	• 11. 성남시 청소년 심리검사 지원 조례 제정		112
	〈정책제안〉		
	• 1. 성남시 청소년 예산 검토 권한 부여에 관한 제안		122
	〈자유발언〉		
	• 1. 성남시 청소년 주거권 보장에 관한 정책 제안		130
	• 2. 우리는 오늘을 여는 주인공, 청소년 입니다!		131
7	제다마 해보이런 전체 핵이로		
1	제5대 행복의회 전체 회의록		
	• 회의록 ·····		134
Ω	부록		
U			
	•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명단		168



발간사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오늘을 여는 주인공, 청소년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최경민 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당선증을 교부받고 8월, 제5대 청소년 의장으로 선출되어 의정활동에 임한지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보고계시는 의정활동 보고서는 1년 동안 함께해온 청소년 의원 포함, 모든이들의 땀과 노력, 열정의 결과물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행복의회 임기는 부득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1년간의 의정활동 중 절반 이상을 온라인 매체를 통해 만나다보니 오프라인으로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적어 매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상황에서도 언제나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청소년 의원분들 덕분에 뜻깊은 시간을 나누고 공유하면서 제5대 임기를 꽉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 의장이었습니다.

'의장'이라는 지위 때문인지 항상 긴장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 의원분들과의 활동을 거듭하면서 15만 청소년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에 대해 누구보다 먼저 느끼고, 경험하면서 한층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긴장하고 실수했던 기억마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되고, 제5대 임기 중 경험하고 만났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제5대 행복의회 및 성남시 청소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해주신 청소년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중원청소년수련관 관장님, 팀장님, 선생님들, 그리고 정책실현을 위해 꾸준히 소통했던 성남시의회 의장님, 성남시의원님들과 성남시청 관계자분들, 아름방송 부장님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복의회 입법기능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던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심의,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토론회, 포럼 및 정책제안대회, 그리고 대망의 본회의까지 무엇하나 놓치지 않고 평생 기억하고 추억하며 앞으로 추진되는 제6대 행복의회, 제7대, 제8대로 이어지는 모든 임기를 응원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의회의 목표는 청소년의 행복과 권리 증진 하나라는 것을 알아주셨길 바라며, 주체적인 청소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 6.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장 최경민

격려사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징

"りとうはないによくくないなくないはないととのはれるよってないないによ、"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정활동 보고서 발간을 축하드리며,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성남시 구현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주신 청소년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제5대 행복의회 임기는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비교적 제한된 환경과 자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할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대 행복의회부터 지속하고 있는 청소년 선거 제도는 이번 5대 임기에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대표성이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하여 입법(정책) 제안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여러분 개인에게는 민주시민 역량을 함양하는 뜻깊은 시간이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의원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공유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제안하신 정책들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입법부모두의 노력을 담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실패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똑같은 내 인생입니다. 내리막길이나 오르막길이나 똑같은 산길입니다. 과정이 곧 행복입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라는 법륜스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바쁜 학업과 개인적인 활동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성남시와 청소년들을 위해 귀중한 활동을 이어간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여러분의 과정속 행복에 박수를 보냅니다.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2021. 7.

성남시청소년재단 이사장 은 두 외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행부의회 소개





■ "성남시청소년행복이회"란?

성남시 조례(제2812호)에 의거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주도적인 청소년 참여를 기반으로 1년간의 임기 동안 지역사회 청소년의 교육, 환경, 인권 등 분야별 현안에 관심을 통해 관련 정책 과제를 발굴, 연구하여 실제 입법 실현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대표 청소년 입법(정책)참여기구 입니다.

2 주요 운영방향

성남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은수미)이 성남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 지역권역별, 균등한 비율을 바탕으로 청소년 선거를 통해 선출된 청소년 의원들이 각각 교육 · 문화, 환경 · 복지, 인권 · 권익 3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추진경과(History)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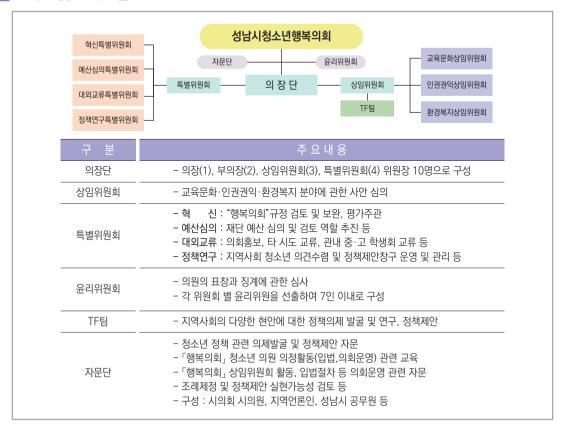
■ 연혁

일정	추진내용
2014. 11. 10.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조례 제정(성남시조례-제2812호)
2015. 5. 1.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운영 위탁 협약 체결(성남시)
2015. 7. 1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제1대 청소년의원 위촉(40명)
2015. 11. 7. ~ 11. 8.	성남시 청소년 제안주간 주관
2016. 5. 7.	성남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 실시(의정활동 자문)
2016. 5. 17.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본회의 개최(조례2건, 의안7건)
2016. 8. 10.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실시(김병욱 의원 초청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6. 10. 29. ~ 11. 5.	2016. 청소년제안주간(정책 제안대회) 주관 운영(홍보, 사전준비 등) 청소년 100인 포럼 및 정책 제안대회 운영
2016. 11. 12.	제7회 전국청소년사회참여발표대회 참가(경기도 교육감상 수상)
2017. 1. 10.	제1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해단식
2017. 3. 11.	제2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위촉(31명)
2017. 5. 27.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 콘서트" 개최(청소년 정책제안활동)
2017. 8. 25.	"성남시 시민참여 예산"에 대한 청소년 참여방안 및 예산 심의권 제안 성남시 예산법무과 방문(의견전달)
2017. 11. 4.	제3회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포럼 운영
2017. 11. 11.	제7회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운영
2017. 12. 20.	제2대 행복의회 "본회의" 운영(조례4건 등 총 10건 정책제안)
2018. 2. 24.	제2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해단식
2018. 3. 10.	제3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위촉(28명)

일정	추진내용
2018. 5. 11. ~ 5. 15.	성남시장 후보 대상 지방선거 공약제안서 전달(귀갓길 안전 등 4건)
2018. 5. 19.	제2회 청소년 사회참여 토크콘서트&원탁토의「지금 말하러 갑니다」개최
2018. 5. 24.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참가, 우수정책제안상 수상
2018. 6. 21.	성남시 시민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 은상 수상
2018. 8. 8.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청소년참여예산제 관련
2018. 9. 1.	제3회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 포럼 운영
2018. 9. 12.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의 간담회 및 정책제안서 전달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등 7건)
2018. 11. 10.	제8회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운영
2018. 12. 21.	제3대「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본회의 운영(정책제안 총8건)
2019. 1. 22. ~ 2. 10.	제4대「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청소년 선거 운영(3,681명 참여)
2019. 2. 15.	제3대「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해단식
2019. 3. 16.	제4대「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당선증 교부(34명)
2019. 8. 17.	성남시 청소년 토크콘서트 참여
2019. 10. 23.	제4대「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운영
2019. 11. 9.	제9회 성남시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운영 및 정책제안서 전달
2019. 12. 20.	제4대「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본회의 운영(정책제안 총9건)
2020. 2. 22.	제4대「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해단식
주도적인	청소년 참여율 제고를 위한 운영임기 기간 변경(3월~차년도 2월 ⇒ 7월~차년도 6월)
2020. 6. 19. ~ 7. 8.	제5대「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청소년 선거 운영(3,208명 참여)
2020. 7. 25.	제5대「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당선증 교부(35명)
2020. 8. 29. ~ 8. 30.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심의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2020. 12. 8.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입법제안서] 전달
2021. 4. 10.	제5대「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개최
2021. 5. 22.	제5대「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본회의 운영(정책제안 총12건)
2021. 6. 12.	제5대「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해단식
2021. 6. 7. ~ 7. 6.	제6대「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청소년 선거(진행 중)

제5대 행복의회 소개

4 조직도 및 조직구성



5 주요 추진성과

■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지속적인 입법(정책)제안 추진



6 지속적인 의제연구 및 제안 기반, 지난 5년간 입법(정책)반영현황



7 운영절차 [입법/정책반영]







청소년 인권 교육, 토론활동

Seongnam City Youth Happiness Council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청소년 의견수렴 활동 및 정책제안 추진











청소년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행부의회규정





2015. 8. 1. 제정 2017. 6. 10. 6차 개정 2015. 8. 15. 1차 개정 2017. 10. 14 7차 개정 2016. 6. 4. 2차 개정 2018. 5. 12. 8차 개정 2016. 8. 6. 3차 개정 2018. 11. 24. 9차 개정 2016. 12. 10. 4차 개정 2019. 1. 12. 10차 개정 2017. 5. 13. 5차 개정 2019. 4. 20. 11차 개정

0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규정 [시행 2015.8.1.] [2015.8.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의회는 "성남시 청소년 행복 의회"(이하 "행복의회"라 한다)라 칭한다. <개정 2015. 8. 15.>

제2조(소재)

행복의회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둔다.

제3조(목적)

- ① 행복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는데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규정은 행복의회의 조직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역할)

- ① 성남시 청소년 대표 활동 및 청소년 정책제안, 모니터링 등
- ② 성남시 청소년 정책과제 발굴 및 시정 정책 반영
- ③ 성남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예산, 입법 제안
- ④ 성남시 청소년 의견수렴 및 현안조사
- ⑤ 성남시 청소년 제안대회, 원탁토론회 개최 등 청소년 참여의 장 발굴

제5조(지위)

- ① 성남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의 지위
- ② 성남시의 청소년 대표로서의 지위

제2장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의원

제6조(자격) <개정 2016. 6. 4.> <개정 2016. 8. 6.> <개정 2019. 4. 20>

행복의회 의원의 자격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14세~19세)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7조(구성)

행복의회 의원은 시 관내에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연령이나 거주 지역 및 성별 등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6. 8. 6.>

- ① 행복의회란 성남시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개정 2016. 12. 10>
- ②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8, 15.> <개정 2019, 4, 20.>

제8조(인기)

-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② 행복의회 제1대 청소년의원의 경우, 조례에 의거한 모집시기가 5월경이므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설정하도록 한다.

제9조(의원의 자격상실)

의원으로서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① 행복의회 의원으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윤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제명·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20>
 - 1. <삭제 2019, 4, 20.>
 - 2. 본회의,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에 대해서 참가율이 저조한 자 <개정 2016. 8. 6.>
 - 3. 범죄, 의회 명의의 활동 등으로 의회의 명제4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정활동 보고서 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자
 - 4. 이 외의 다른 사항에 관한 것은 윤리 위원회 판단규정, 운영규정 등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9, 4, 20.>
-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불참 시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6. 12. 10.>
 - 1. 불참사유에 따른 불참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의원들의 불참사유서 및 증빙자료들을 보관·관리하여 해당 의원의 윤리위원회가 소집될 시 판단의 근거로서 참고한다.
- □ <삭제 2016. 12. 10.>
- ③ 의원 본인이 제명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9. 4. 20.>
- ④ 제3항에 따른 "제명 의사"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사임한다. <개정 2019. 4. 20.>
 - 1. 임기만료 이전에 부득이하게 사임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2. <삭제 2016. 12. 10.>
- ⑤ 그 외 지침 사항 <개정 2017. 6. 10.> <개정 2018. 5. 12.>
 - 1. <삭제 2017. 6. 10.>
 - 2. 본회의,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 5분 전 입실을 원칙으로 한다.
 - 3. 개인적 사유에 의해 불참할 시에는 회의 개의 최소 1일 이전, 윤리위원회에 사전공지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5. 12.> 가. 의원은 불참 이후 7일 이내에 자신이 불참한 회의에 대한 불참증빙서류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2.>
 - 4. 단, 질병으로 인한 불참 시에는 다음을 따른다.
 - 가, 의원은 회의 개의 익일 오전 12시까지 윤리위원회에 불참을 공지한다.
 - 나. 약 복용기간이 개의 날짜에 포함될 경우 질병에 의한 불참으로 간주한다.
 - 다. 전염성이 있는 질병 혹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하는 중증 이상의 질병일 경우, 의원은 다음 회의 폐의까지 불참증빙서류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의원의 권리와 의무) <개정 2016. 12. 10.>

- ① 성남시 청소년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알 의무를 가지며, 그에 따른 의견 반영 및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 ② 행복의회의 의원은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발언권 및 결의권을 가지며 본 의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③ 행복의회의 의원은 본 의회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④ 행복의회의 의원은 본 의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의무를 가진다.
- ⑤ 행복의회의 의원은 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본 의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⑥ 핵본의회의 의원은 한번적 확통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떤 불이익과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⑦ 행복회의 의원은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 ⑧ 행복의회의 의원은 의회 활동에 불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불참할 경우에는 불참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16, 12, 10.>

제11조(의원의 표창) <개정 2016. 8. 6.>

의원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은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재단, 행복의회 윤리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

- ① 행복의회는 의장, 고등부의장, 중등부의장, 서기, 교육문화상임위원장, 인권권익상임위원장, 환경복지상임위원장 혁신특별위원장, 대외교류특별위원장, 정책연구특별위원장, 행사추진특별위원장 각 1인을 둔다.
- <개정 2015, 8, 15,> <개정 2016, 6, 4,> <개정 2017, 5, 13> <개정 2019, 4, 20,>
- ② 행복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5. 8. 15.>

제13조(청년 정책자문위원) <신설 2018. 5. 12>

- ① 행복의회는 '청년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청년 정책자문위원은 3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청년 정책자문위원은 의제 상정권을 갖는다. 다만, 의장의 재가를 거친 후 의장 발의로 상정한다.
- ④ 청년 정책자문위원은 회의 참석권과 회의에서의 발언권을 갖는다. 다만, 의장의 회의진행을 방해해선 안된다.
- ⑤ 의장은 청년 정책자문위원의 의제 상정안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 ⑥ 청년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은 정책자문에 한정한다. 그 외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다만, 간사·의장단의 혐의 후에 청년 정책자문위원에게 의회 운영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자격)

- ① 의장 및 부의장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 ② 각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5, 8, 15.>
- ③ 각 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행복의회의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7. 5. 13>
- ④ 각 TF팀 팀장 및 팀원은 행복의회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설 2019, 04, 20>

제15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제8조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12. 10>

제16조(지위)

① 의장은 행복의회를 대표하며, 본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 8. 15.>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서기는 정기 및 임시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④ 각 상임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상임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며, 행복의회 내의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한다.
- ⑤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임시회의 때 상임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각 상임위원회별 임시회의 때 상임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각 특별위원장은 각 특별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특별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되며, 행복의회 내의 각 특별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7. 5. 13>
- ⑦ 각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각 특별위원회별 임시회의 때 특별위원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5. 13>

제17조(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 및 권한) <개정 2017. 5. 13>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 ① 행복의회의 전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한다.
- ② 규정 개정안은 발의하여 상정한다.
- ③ 행복의회 전체 예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본 의회에 상정한다.
- ④ 행복의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행복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제18조(비상대책위원회) <신설 2016. 6. 4.> <개정 2016. 8. 6.>

- ① 의장이 궐위되거나 의장단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 행복의회의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할 때 성립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전임 의장단은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장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장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⑥ 비상대책위원회는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된 후 전체회의에서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9조 (불신임) <신설 2016, 6, 4.> <개정 2017, 6, 10.> <개정 2017, 10, 14.> <개정 2018, 11, 24.>

- ① 전체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할 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성남시청소년재단 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 ②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통과된다.
- ③ 의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불신임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을 시, 제소를 당한 사람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은 즉시 지위를 상실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 ⑤ 윤리위원회는 불신임안 가결 절차에 관여할 수 있다.



제4장 활동과 역할

제20조(활동의 권한) <개정 2017. 5. 13>

행복의회의 활동 전반의 집행은 의장이 맡는다. 단, 의장이 궐위 시 부의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부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부의장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21조(활동의 권한)

행복의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 자치에 의한 의회 운영
 - 1. 상임위원회의, 본회의, 임시회의 운영
- ② 청소년 참여를 통한 정책 개발 활동
 - 1. 청소년 정책 개밬 및 제안
 - 2. 의제 발굴 및 의제 모니터링
 - 3. 청소년 원탁토론회, 성남시 청소년 제안대회, 아이디어공모전 등 개최
 - 4. 성남시 청소년 의견 수렴 및 반영 채널 구축
 - 5. 성남시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등
- ③ 청소년 의회 교류 및 홍보활동
 -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 2. 타 지역, 타 국가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와의 교류활동 등

제22조(위원회의 종류) <신설 2016. 6. 4.>

행복의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으로 한다. <신설 2016. 6. 4.>

제23조(특별위원회) <신설 2016. 6. 4 > <개정 2018. 5. 12>

- ① 행복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별위원회의 가입과 탈퇴는 자율적으로 하되, 가입·탈퇴 시에는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가입신청서 혹은 탈퇴사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18. 5. 12.>
- ④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12. 10.>
- ⑥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제24조(윤리위원회) <신설 2016. 6. 4.> <개정 2016. 8. 6.> <개정 2017. 6. 13.> <개정 2018. 5. 12>

- ① 의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모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각 한 명씩 선출하여 구성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위원회에서 윤리위원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따르지 않는다.
- ③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TF팀) <신설 2018. 5. 12> <개정 2019. 1. 12.>

- ① TF팀은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그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한다.
- ② TF팀에서 발의한 정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 ③ TF팀은 가입과 탈퇴를 자율적으로 하고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모든 의원이 필수적으로 1개 이상의 TF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 ④ TF팀에 가인·탈퇴 시에는 해당 TF팀 팀장에게 가인신청서 혹은 탈퇴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 (5) TF팀은 TF팀 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신설과 폐지는 자유롭다.
- ⑥ TF팀은 팀장 1인과 서기 1인을 둔 1인 이상의 체제로 구성한다. 가 팀장과 서기는 중임이 가능하다
- ⑦ TF팀 내 불성실한 의원에 대한 제소 발생 시 해당 TF팀 내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소속 의원의 2/3이 찬성했을 시 퇴출한다.
- ⑧ 어느 TF팀에도 소속되지 않는 상황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의원의 타위원회 및 TF팀 출석과 발언) <신설 2016. 6. 4.> <개정 2018. 5. 12.>

① 의원은 타 위원회 및 TF팀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8. 5. 12 >

제27조(상임위원회의 직무) <개정 2015. 8. 15.> <개정 2016. 6. 4.> <개정 2018. 5. 12.>

행복의회의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① 교육문화상임위원회
 - 1. 교육·문화에 관한 사안심의 <개정 2018. 5. 12.>
- ② 인권권익상임위원회
 - 1. 인권·권익에 관한 사안심의 <개정 2018. 5. 12.>
- ③ 환경복지상임위원회
 - 1. 환경·복지에 관한 사안심의 <개정 2018. 5. 12.>
- ④ <삭제 2016.6.4.>

제28조(회의) <개정 2016. 6. 4.>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개정 2017. 5. 13>

행복의회의 회의에는 본회의,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의를 둔다.

- (1) 본회의
 - 1. 본회의는 연1회 이상씩 집회하며, 최종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기능을 한다. 의장단의 참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을 준수한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법안은 입법청원을 위한 준비과정을 거친다. <개정 2016. 12. 10.>
- ②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의
 - 1. 전체회의와 상임위원회의는 월2회를 주기로 회의 중, 의원 간의 합의하에 결정하여 공고한다.
- ③ 임시회의
 - 1.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활동 및 회의가 계획되고 실행되는 경우
 - 2) 의회의 위원 과반수 필요성을 느낄 경우
 - 2.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간사가 소집한다.
 - 1) 행복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논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제29조(의결)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개정 2017. 5. 13> <개정 2019. 4. 20.>

행복의회의 본회의와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행복의회 규정 개정,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의장, 부의장 해촉은 의원투표로 의결한다.
- ② 각 상임위원회별 사업은 상임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며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
- ③ 각 특별위원회별 사업은 특별위원회의에서 의결하며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보고한다.
- ④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의 의안은 회의 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즉시 상정해야 할 경우에는 의원의 동의를 받아 상정할 수 있다.
 -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규정 개정안: 2일
 - 2. 제정 조례안 및 추진 사업안: 2일
 - 3. 행복의회에서 추진할 의제: 2일
- ⑤ 전체회의, 상임위원회의의 의안은 의원에게 하루 이상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의장단 선거 <개정 2015, 8, 15,>

제30조 <삭제 2015. 8. 15.>

제31조(선거권)

행복의회의 의원은 당대의 선거권을 가진다.

제32조(선거 시기)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행복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위촉워크숍 직후 전체회의에서 실시한다.

- ① 위촉워크숍은 아래의 각 호를 따른다.
 - 1. 위촉워크숍의 시기는 행복의회 위촉식 후 1달 이내로 한다.
 - 2. 토론 및 정책 개발을 비롯한 향후 의제발굴로 일정을 구성하고, 해산 전 워크숍 평가회의를 개최한다.
- ② 의장단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선거) <개정 2016. 8. 6.> <개정 2016. 12. 10.>

행복의회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선거는 직접·보통선거 및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① 의장, 부의장은 전체회의에서 행복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진행한다.<신설 2015. 8. 15.>
-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진행한다.<신설 2015. 8. 15.>
- ③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궐위 시 빠른 시일 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④ 특별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특별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를 진행한다. <신설 2017. 5. 13>

제34조(당선자 결정)

당선자 결정은 다득표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진행한다.

제6장 통례적용

제35조(통례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통례에 의하고, 통례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의회가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5.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 ① 본 규정은 2015. 8. 15. 일부 개정됨.
- ② 본 규정은 2016. 6. 4. 일부 개정됨.
- ③ 본 규정은 2016. 8. 6. 일부 개정됨.
- ④ 본 규정은 2016, 12, 10, 일부 개정됨.
- ⑤ 본 규정은 2017, 5, 13, 일부 개정됨.
- ⑥ 본 규정은 2017. 6. 10. 일부 개정됨.
- ⑦ 본 규정은 2017, 10, 14, 일부 개정됨.
- ® 본 규정은 2018, 5, 12, 일부 개정됨.
- 9 본 규정은 2019, 1, 12, 일부 개정됨.

제3조(특별위원회 활동기한)

- ① 혁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 4. 1.부터 2020. 2. 28.로 정한다.
- ② 대외교류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 4. 1.부터 2020. 2. 28.로 정한다.
- ③ 의제발굴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6. 3. 1.부터 2016.12. 31.로 정한다. <폐지>
- ④ 행사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17. 4. 1.부터 성남시청소년제안주간 폐막일까지로 정한다.
- ⑤ 미디어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17. 4. 8.부터 2019. 2. 28.로 정한다. <폐지>
- ⑥ 정책연구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19, 4, 1,부터 2020, 2, 28,로 정한다.

제4조(특별위원회의 직무) <신설 2017. 4. 8.> <개정 2019. 1. 12.>

행복의회의 특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① 혁신특별위원회
 - 1. 행복의회 규정 개정
 - 2. 행복의회 모니터링
- ② 대외교류특별위원회
 - 1. 타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추진
 - 2. 행복의회 홍보
- ③ 행사추진특별위원회
 - 1. 행복의회 내의 행사 추진
- ④ 정책연구특별위원회
 - 1. 청소년 의견 수렴
 - 2. 행복의회 소통창구 운영 및 관리



0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윤리헌장

우리는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원임을 명심하고 청소년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양심에 따라 의회 운영을 원활히 하여 청소년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윤택한 삶을 이어가고 올바른 시민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 창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밝히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윤리헌장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제1장 (목표)

-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의 의사표명을 통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존재한다.
 - ① 의원은 역시 청소년의 일원으로서 의원 개인의 자아실현에도 힘쓴다.
 - ②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언급된 모든 가치의 실현을 지향한다. 특히 제12조 견해의 표시, 제13조 표현의 자유, 제14조 사상·양심에 대한 자유, 제 15조 모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노력한다.

제2장 (활동자세)

- 1. 의원은 성남시 청소년의 의결권과 참여권을 위임받은 대변인으로서 공사(公私)를 구분하여 사적인 감정으로 당파를 나누어 다투지 않는다.
- 2.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을 대변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구로서, 성남시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활발히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3장 (청소년 교류)

- 1. 의원은 청소년의 입장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청소년이 스스로의 행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 2. 의원은 성남시의 다양한 청소년과 관계를 가지고 소통한다.

제4장 (품위)

-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하여 모인 집단으로서 의원은 성남시청소년의 명예를 더욱 더 높이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성남시 청소년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다.
- 2. 의원은 시민의식에 준하는 행동을 한다.

제5장 (투명성)

1. 의정 전반에 있어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6장 (평등)

1.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모든 의원은 평등함을 근간에 둔다.

03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행동강령

제1장 (근간)

- ① 이 영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의원은 자신에 의해 다른 의원이 부당한 피해를 보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영은 차후 필요시 상황에 맞게 추가할 수 있다.

제2장 (활동자세)

- ④ 의원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사업상 객체가 아닌 청소년 권리실현의 주체임을 명심하고, 의원의 결정사안(일정, 사업 추진, 의제 발굴 등)은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의회 운영전반에 관하여 알아야 한다.
 - 나. 청소년의 대표자로서 청소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 다. 청소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실현한다.
- ⑤ 특별한 사유 없이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가, 특별한 사유는 윤리위원회 규정에서 밝힌다.
- ⑥ 의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을 금지한다.
 - 가.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한 그날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
 - 나, 정책 형성 및 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 다. 의원은 의회 활동 시. 개인적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권리 남용 금지)

- (7) 개인의 영달, 사욕을 위하여 의원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 가. 의회 내에서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우리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수혜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장 (평등)

- ⑧ 의원끼리 서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 가. 의원 간의 인신공격 및 회의 중 비속어 사용을 절대 금지한다.
 - 나. 연소(年少) 의원들 또한 연장(年長) 의원들과 같은 수준의 활동량을 충족할 의무를 지닌다.
 - 다. 우리는 나이나 성별을 근거로 위계서열을 조성하지 아니하며 종교, 신념 또는 사상, 생활수준, 성적 지향, 학력 수준, 장애 또는 질병 등을 근거로 다른 의원을 차별하지 않는다.
 - 라. 의원 상호 간의 인격을 존중하고 기회 균등을 보장하여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에 이르는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 한다.

제5장 (품위)

- ⑨ 의원은 의회를 대표하여 의회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하지 아니한다.
 - 가. 의원이 의회를 대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의정확도 현황





11 지역구별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온라인 청소년 선거를 통한 선출직 의원제 시행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선출 방법]









1차 서류심사

2자 면접심사 및 오리엔테이션 3차 청소년 선거

최종 당선자 공고

1차 서류접수

- 학교 추천
- 기관 추천
- 또래 추천

1차 서류심사

심사기준에 의거한 면접대상자 선정 0

서류 합격자발표

홈페이지 공지 (www.snyouth.or.kr) 및 개별통보

0

2차 면접심사(40%)

심사기준에 의거한 심사위원 구축, 면접실시



- 3차 청소년 선거(60%)
 - 온라인 선거 진행 - 지역구 별 의원 구성



최종 당선자 발표

홈페이지 공지 (www.snyouth.or.kr) 및 개별통보

1-1. 면접심사 및 「청소년 선거」 오리엔테이션

○개 요

- 일 시: 6. 13.(토) 13:00~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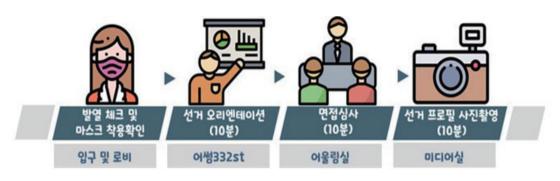
- 장 소 : 중원청소년수련관 1층 어울림실 등

- 대 상: 제5대 행복의회 서류심사 합격자 및 연임의원

- 인 원: 42명(1명 불참/후보자36명, 연임3명, 자문위원3명)

- 내 용: 발열체크 확인 ⇒ 선거 오리엔테이션 ⇒ 면접심사 ⇒ 선거 프로필 촬영 등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다수가 한 곳에 밀집되어 운영되지 않도록 조별로 나누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워킹스루 방식으로 진행



○ 항목별 추진내용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 손소독 확인, 입장 확인 대기 시 거리두기 준수
선거 오리엔테이션	청소년 선거 홍보 방법 및 추진사항 안내, 선거 동의서 작성 등
면접심사	정책제안의 이해도 및 활동의지, 성실성, 책임성, 지원동기 항목 심사
선거 프로필 촬영	선거 홍보 포스터 및 전자투표시스템 내 후보자 프로필 촬영





1-2. 제5대 청소년 선거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 **전자투표시스템 구성** 청소년선거 안내 / 투표하기 / 공약확인 / 정책 제안하기(상시)
- 접속링크 http://www.snyouth.or.kr/youthcouncil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3.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 선귀 운영

○개 요

- 투표기간 : 6. 19.(금) ~ 7. 8.(수) 20일간

- 투표대상: 만9세~24세 청소년(투표시작일 기준, 1995. 6. 20. ~ 2011. 6. 19. 출생자)

- 참여인원 : 청소년 총3.208명

- 투표방법 : 온라인 전자투표시스템 접속 ⇒ 투표하기 클릭 ⇒ 본인인증 ⇒ 공약확인 및 투표(지역구별 2표씩, 총6표 투표)

⇒ 투표완료

○ 선거 운영방법

구분	내용		
온라인	- 온라인 및 모바일을 통해 개별 전자투표시스템 접속 및 참여 (http://www.snyouth.or.kr/youthcouncil)		
오프라인	- 오프라인 투표소 설치를 통한 현장투표 진행(노트북을 통한 전자투표 시스템 접속) · 번화가 및 기관, 단체, 학교 연계 투표소 설치 및 운영		
SALOR MARK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운영

○ 제5대 행복의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역할: 제5대 행복의회 서류 및 면접심사 진행, 온라인 청소년 선거 관리 등
- 구성: 제1대~제4대 행복의회 의장단 6명, 성남시청소년재단 관계자 4명, 지역 언론인 1명

○ 추진성과

- 제5대 청소년 선거 홍보 시 온라인과 모바일 활용 뿐만 아니라 관내 학교, 번화가 등 청소년이 군집하는 공간에 오프라인 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표 참여 홍보 및 독려
- 18세 선거권 확대에 대한 예비적 경험 실현
- 성남시 청소년의 대의 정치 및 간접 민주주의 경험을 통한 참여, 시민 역량 강화 도모
- 만9세~ 24세 청소년 총3,208명 참여,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대표성 보장 노력 추진

1-4. 최종 당선자 오리엔테이션

○개 요

- 일 시: 2020. 7. 18.(토) 10:00~12:40

- 장 소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공연장

- 대 상: 제5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청년 자문위원 등

- 인 원: 39명(청소년 의원 35명+자문위원 4명)

- 내 용: 자기소개, 정책제안 방법 및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규정교육, 향후 일정안내 등

○ 세부 추진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10 ~10:10	- 참석여부 확인 -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개	홍보영상
10:10 ~10:30	- 자기소개	간사 김마리
10:30 ~10:50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소개 - 행복의회 활동 유의사항 및 규정교육	청년자문위원 김주환
10:50 ~11:10	- 1~4대 정책 반영 사례 - 정책제안 방법	청년자문위원 홍승민
11:10 ~11:30	- 청소년 의원이 가져야 할 자세	청년자문위원 허지수
11:30 ~12:30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강사 권복희
12:30 ~12:40	- 제5대 행복의회 운영 일정 안내 - 공지사항 전달	간사 김마리

○ 추진성과

- 행복의회 규정교육 등 의회활동 관련 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해 성남시 청소년 대표, 청소년 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 및 역할 습득, 인식
- 제5대 임기 중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정활동 추진 도모











1-5. 당선증 교부식 및 의점연수

○개 요

- 일 시: 2020. 7. 25.(토) 10:00~11:20

- 장 소: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 대 상: 제5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및 관계자 등

- 인 원: 50명(청소년 의원 35명, 학부모 및 관계자 15명)- 내 용: 당선증 및 배지수여, 자문단 위촉, 윤리헌장 낭독 등

○ 세부 추진내용

人	간	소요	내용	비고
부터	까지	시간(분)	-110 	
10:00	10:30	3	○ 내빈소개	
10:03	10:05	2	○ 개회	
10:05	10:08	3	○ 국민의례	
10:08	10:15	7	○ 격려사 및 축사	- 축사: 성남시의회 의장 - 격려사: 대표이사
10:15	10:45	30	○ 당선증 및 배지 수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성남시의회 의장
10:45	10:50	5	○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 대표이사
10:50	10:55	5	○ 행복의회 의원 윤리헌장 낭독	- 제5대 행복의회 의원
10:55	11:00	5	○ 폐회 및 기념사진 촬영	
11:00	11:20	20	○ 의회활동 기본교육	- 성남시의회 의장

○ 추진성과

- 행복의회 규정교육 등 의회활동 관련 교육과 전문교육을 통해 성남시 청소년 대표, 청소년 의원으로서의 올바른 자세 및 역할 습득, 인식
- 제5대 임기 중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정활동 추진 도모



2 온라인 의정활동 한계를 보완하는 교육 귀리큘럼 구성 및 운영

구 분	운영일시	주 제	내 용
1회차	07. 18.(토) 10:30~11:30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일상의민주주의 #청소년시민 #의사소통놀이 - 미로놀이 및 의사소통 방법과 역할 교육
2회차	07. 18.(토) 11:30~12:30	행복의회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규정교육 - 정책반영 사례 및 제안방법 교육 - 청소년 의원이 가져아할 자세
3회차	08. 08.(토) 11:30~12:00	윤리위원회 규정	- 윤리위원회 운영 배경 - 윤리위원회 판단규정 -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규정 - 윤리위원에게 요구되는 자세 및 질의응답
4회차	08. 29.(토) 09:40~10:00	예산의 구조 및 수립과정	- 예산의 개념과 운영원칙 - 예산 운영 프로세스 - 예산 편성 프로세스
5회차	09. 05.(토) 09:30~10:00	헌법의 이해	헌법의 개념과 법의 종류헌법의 분류국민의 기본권내가 생각하는 기본권이란??
6회차	09. 12.(토) 09:30~10:30	삼권분립과 입법기관	- 정부형태 및 국회 소개 - 지방자치 및 의회의 기능 - 입법절차에 대한 이해
7회차	11. 14.(토) 09:30~11:00	우리사회는 지금?	- 훈육목적 자녀 체벌 관련 이슈 나눔 - 민법 제915조(징계권) 삭제에 대한 찬/반 주제토론 -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8회차	12. 05.(토) 09:30~12:30	청소년 인권	- 청소년, 인권 등 생각 나누기 - 청소년 인권을 알아야 하는 이유 - 성남시 청소년 인권 대응 체계 구축 - 유형/장소별 인권 대응 체계 논의 - 성남시 청소년 인권 중장기 로드맵기획



3 성남시청소년행복이회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

3-1, 2021년 성남시청소년대단 예산심의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

청소년 사업 예산심의를 통해 청소년 대표로 선출된 청소년 의원으로써 청소년 의견을 반영한 예산 편성 도모 및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 강화

- 예산 담당부서 주도 예산교육 ⇒ 1차 시설별 예비심사 ⇒ 2차 종합심사 등 일련의 단계적 과정을 통한 실현가능한 예산 검토 추진
- 향후 검토요약서 기반 재단 시설별 검토의견 수렴 등 청소년 의원 심의 내용 반영 추진

□ 예산교육 및 예비심사

○개 요

-일 시: 2020. 8. 29.(토) 09:30 ~ 12:30

- 장 소: 재단 차오름실 및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ZOOM) - 참여인원: 37명(청소년 의원 33명, 청년 자문위원 4명)

- 내 용: 전문교육 [예산의 구조 및 수립과정] 및 2021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 사업 예산심의(지역구별 예비심사)

시간	운영내용	비고
~09:30	- 연결테스트 및 출석확인	윤리위원회
09:30~09:40	- 의정활동 보고 및 향후 일정 안내	제5대 의장
09:40~10:00	[전문교육 - 예산의 구조 및 수립과정] - 예산의 개념과 운영원칙 - 예산 운영 프로세스 - 예산 편성 프로세스	기획조정팀장
10:00~12:00	[지역구별 예비심사 진행] - 2021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 예산심의 - 지역구별 청소년재단 시설 안배 및 해당 예산심의	
12:00~12:30	- 예비심의 결과 공유 및 의결	제5대 의장

□ 종합심사

○ 예산심의특별위원회 2차 소그룹회의 - 재단 예산심의 종합심사 검토요약서 제출

- 일 시: 2020. 8. 30.(일) 14:00 ~ 17:00 - 장 소: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ZOOM)

- 참여인원: 8명(제5대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청소년 의원 7명, 청년 자문위원 1명)

- 내 용: 지역구별 예비심사 결과 기반 종합심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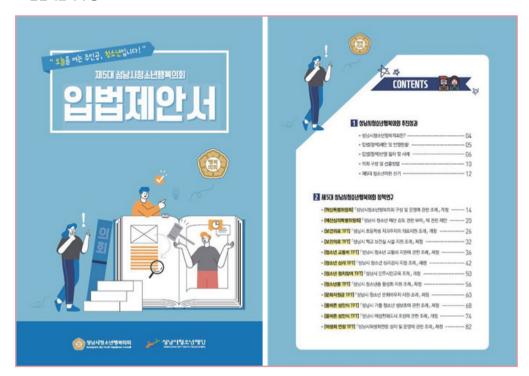
- 결 과: 성남시청소년재단 9개 시설

· 총30개 사업 예산액 537,078천원 삭감

· 총4개 사업 예산액 2,090천원 증액

3-2. 제5대 행복의회 「입법제안서」 제작 및 전달

□ 입법제안서 구성



○ 상임위원회 심의 및 자문단 중간점검,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작

- 「성남시 학교 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 등 입법제안 12건
- 2020. 09. 27.(일) 입법(정책)제안서 1차 제출 및 피드백
- 2020. 11. 14.(토) 입법(정책)제안서 기반, 자문단 중간점검 진행
- 2020. 12. 08.(화)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입법제안서 전달
- 2021. 05. 22.(토) 제5대 본회의 조례의결 시 최종 입법(정책)제안서 기반, 의안투표 진행 총12건 제안 ⇒ 12건 전체 가결 ⇒ 성남시&성남시의회 입법청원 과정



다양한 소통참구를 활용한 청소년 이견수렴 활동 및 정책제안 추진

4-1. 성남시 청소년 이견수렴 및 정책제안 활동 - 토론회&제안대회 등

□ 2020 성남시 청소년 ON&OFF 미래학습 포럼 참여

○개 요

- 일 시: 2020. 9. 8.(화) 14:00~16:10

- 장 소 :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및 온라인 플랫폼

- 참여인원: 제5대 행복의회 의장단 및 참여 희망 의원 5명

- 주요내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 방향 수립을 위한 온라인 포럼

- 참여결과 : 포럼 발제자 발제 내용 학습 및 청소년 미래교육방향 수립에 대한 의견 수렴

□ 제5회 성남시 청소년 토크콘서트 참여

○개 요

- 일 시: 2020. 10. 24.(토) 14:00~16:00

- 장 소: 중원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및 온라인 플랫폼

- 참여인원: 제5대 행복의회 의장단 및 참여 희망 의원 6명

- 주요내용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안

- 참여결과 :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예방 및 대처방안에 대한 학습, 참여한 행복의회 의원과 토크콘서트 운영진 간 질의응답 진행, 의견 수렴

□ 제10회 빅데이터 기반,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참여

○개 요

- 일 시: 2020. 12. 15.(화) 19:00~21:00

- 장 소: 유투브 등 온라인 채널

- 참여인원 : 제5대 행복의회 참여 희망 의원 7명

- 주요내용 : 분야별 청소년 정책제안 대회

- 참여결과: 제안대회 참여 및 지역 청소년 의견 수렴





4-2. 행복의회 입법(점책)제안 실현을 위한 주요 인사 간담회

□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간담회

○개 요

· 일 시: 2020. 8. 26.(수) 12:30~13:30

· 장 소 : 재단 차오름실

· 참여인원: 재단 대표이사, 제5대 행복의회 의장단 7명 · 주요내용: 의장단 소개, 애로사항 청취 및 당부사항 전달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담회

○개 요

· 일 시: 2020. 8. 26.(수) 12:30~13:30

· 장 소: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장실

· 참여인원: 제5대 행복의회 의장단 5명,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2명

· 주요내용 : 의회 및 행복의회 구성 공유, 의장단 소개, 애로사항 청취 및 당부사항 전달







5 청소년 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입법(점책)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문단」운영

5-1. 제5대 행복의회 자문단 위촉

□ 정식명칭: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문단

□ 자문단 임기: 위촉일 ~ 2021. 6. 30.(수) (※청소년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운영)

□ 자문단 구성 : 자문영역별 10명 내 · 외

□ 자문단 역할

○ 청소년 정책 관련 의제발굴 및 제안사항 자문

○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의정활동(입법, 의회운영) 관련 교육

○ 행복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및 입법절차 등 의회운영 관련 자문

○ 조례제정 및 입법(정책)제안 실현가능성 검토 등

□ 자문단 위촉

○개 요

- 일 시: 2020. 7. 25.(토) 10:00~11:00

- 장 소 :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 대상인원 : 제5대 행복의회 자문위원 10명

- 주요내용 : 자문위원 위촉장 전달 및 의견청취 등



□ 제5대 행복의회 자문단 명단

자문영역 성 5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입법활동(의회운영)		박은미	성남시의회 의원	
		최미경	00/114 12	
지역 언론인		김용기	지역 언론사(아름방송) 및 방송사 등	
정책 - 의제 발굴	정치 활동가 (청년 등)	김주환	행복의회 청년 자문위원	위촉직
		허지수		
		홍승민		
예산심의		오재곤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제정과장	
의제검토		서재섭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 교육청소년과장	당연직
청소년 참여		이재영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장	당연직
		김광식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청소년활동팀장	간 사

5-2. 제5대 입법(점책)제안 추진사항 점검, 피드백을 위한 간담회

□ 자문단 중간점검

○개 요

· 일 시: 2020. 11. 14.(토) 09:30 ~ 12:30

· 장 소 : 성남시의회 의원 세미나실

· 참여인원 : 제5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25명 및 자문위원 8명

· 주요내용: 제5대 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관련 연구자료 및 발표자료 검토, 피드백





□ 제5대 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개 요

·일 시: 2021. 4. 10.(토) 10:30 ~ 13:30

· 장 소 : 성남시의회 4층 의원 세미나실

· 참여인원 : 제5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15명 및 자문위원 7명

· 주요내용: 제5대 추진사항 브리핑 및 본회의 의안, 입법(정책)제안서 최종 피드백 등

시간	운영내용	
~ 09:30	입실확인	- 청소년 의원 참여 확인 및 발열체크 등
09:30~10:20	행복의회 정례회의	- TF팀 및 위원회 별 의안, 발표자료 검토
10:20~10:30	입실확인	- 자문단 참여 확인 및 발열체크 등
10:30~10:45	5대 행복의회 브리핑	- 5대 행복의회 추진사항, 현안 브리핑
10:45~11:40	의안 발표	- TF팀 및 위원회 별 의안 발표
11:40~13:30	질의응답 및 피드백	- 질의응답 및 자문단 최종 피드백, 의정활동 제언 등







6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우수사례 및 운영 노하우 전파

구 분	세부내용	운영방법	연인원
	계	13건	19명
	- 요청기관 : 양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요청내용 : 청소년 의회 및 세부활동 문의 ⇒ 요청내용 설명 및 자료 안내 등		
1~7월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 요청내용 : 청소년의회 세부활동 질의 ⇒ 요청내용 설명 및 자료 안내 등	유선	_
1°7 <u>a</u>	- 요청기관 :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 요청내용 : 청소년 의원 선거 시스템 등 ⇒ 요청내용 설명 및 자료 안내 등	πυ	
	- 요청기관 : 도봉구청 교육지원과 - 요청내용 : 청소년 의원 선거 시스템 및 청소년 의회 운영 내용 등 ⇒ 요청내용 설명 및 자료 안내 등		
2. 14.(금)	- 요청기관 : 중구청소년수련관 참여플랫폼조성팀 - 요청내용 : 청소년정책참여 및 청소년 민주시민 활동 사례 공유 등 ⇒자료 배포 및 요청내용 설명, 질의응답	대면	6
6. 11.(목)	- 요청기관 :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청소년사업국 청소년정책팀 - 요청내용 : 청소년행복의회 전반적인 과정 및 세부사항 등 ⇒ 자료 배포 및 요청내용 설명, 질의응답	대면	4
7. 31.(금)	- 요청기관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활동진흥센터 활동정책팀 - 요청내용 : 청소년행복의회 전반적인 과정 및 세부사항 등 ⇒ 자료 배포 및 요청내용 설명, 질의응답	대면	4
7. 31.(금)	- 요청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청 교육체육과 - 요청내용 : 행복의회 구성 및 연간 운영계획 벤치마킹 의뢰 ⇒ 요청자료 발송(연간 운영계획 및 의성활동 보고서)	서면	-
8. 24.(월)	- 요청기관 : 도봉구청 교육지원과 - 요청내용 : 예산 운영 계획 및 현황, 온라인 전자 투표 시스템 관련 개인정보 및 운영 방법 질의 ⇒ 요청내용 설명 및 자료 안내 등	유선	-
9. 21.(월)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 요청내용 : 청소년 의원 선거 방법 및 절차 질의 ⇒ 요청내용 설명 및 온라인 시스템 안내 등	유선	-
9. 28.(월)	- 요청기관 : 인권교육센터 들 - 요청내용 : 청소년 의회 활동 소개 및 청소년 선거586권 및 참여 관련 세부 내용 ⇒ 인터뷰를 통한 질의내용 답변 및 요청자료 안내 등	대면	1
10.29.(목)	- 요청기관 :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 요청내용 : 행복의회 및 참여위원회 역할구분 및 운영 방향 질의 ⇒ 요청내용 설명 및 안내	유선	-
11.13.(금)	- 요청기관 : 여수시의회 - 요청내용 : 청소년의회 운영 방안 및 의회의 의정활동 지원 질의 ⇒ 요청내용 설명 및 안내	대면	4

Seongnam City Youth Happiness Council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성남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제정

문화지원금 TFT

채워희, 김영중, 이규리 3명

1. 문제인식

"World Happiness Report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OECD 행복지수는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왜 최하위권인지 의문이 생겨 그 이유를 찾아보니 청소년들의 학업부담감이 가장 높았고, 그 뒤로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업부담감이 단순히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살로 생각이 이어질 만큼 이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낮추는 가장 큰 요인인, 학업부담감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다 도출한 결과로는 바로 문화여가생활이었다. '굿네이버스 청소년권리서포터즈'에서 '놀이 및 여가가 주는 도움'표를 보면, 46.9%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기분전환이 된다'가 24.9%였다. 이로써 청소년들에게 여가가 주는 도움이 크다는 사실을 통계로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문화여가생활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는지 찾아보았더니,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초등학생은 2~3시간, 중·고등학생은 1~2시간 미만으로 매우 적은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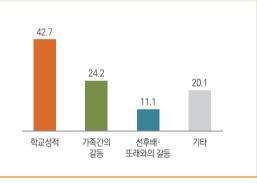
청소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굿네이버스 청소년권리 서포터즈'에 따르면 놀이 및 여가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로 '학원 수업 및 숙제가 많아서'가 가장 높았고, '용돈 및 비용이 부족해서'와 '학교 수업 및 숙제가 많아서'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우리는 청소년들의 비용 부담에 더 중점을 두어 청소년들이 비용 부담 없이 문화여가생활을 누리고 또한 학업 부담감도 덜 수 있도록. 성남시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바우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청소년들의 OECD 행복지수 최하위]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



[출처]: World Happiness Report2019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받는 원인]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 】





[출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통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청소년들의 여가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청소년들에게 여가가 주는 도움]

〈표2-4〉 놀이 및 여가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

714	1+2+3순위	
구분	빈도	%
'학원' 수업 및 숙제가 많아서	10	22,2
'학교' 수업 및 숙제가 많아서	6	13,3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5	11,1
놀이시실 및 공간이 부족해서	4	8.9
용돈 및 비용이 부족해서	6	13.3
기타	5	11,1
무응답	9	20,0
합계	45	100

(E2-8)	뉅이	및	OPPH	쓔	도움	
		П				

祕	4(2(4)	%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1,1
신체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	11	6.2
하습 능물이 항상된다	1	0.6
친구들과 더욱 전략한다	16	9.0
스트레스가 예소된다	83	463
기본전환이 된다	44	245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한다	7	4.0
가족과의 관계가 다욱 좋아간다	- 1	0.6
神	2	1.1
무용답	10	5.6
함세	177	100

-[출처] :굿네이버스 청소년권리서포터즈

[출처] :굿네이버스 청소년권리서포터즈

2. 현황 및 문제점

○ 타 지자체 문화지원금 운영 사례

-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 · 전국최초 청소년 수당 지급, 2020년 11월부터 지급

사업목적	-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내용	-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영화관, 공연장, 각종 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 카페), 취마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 이·미용실, 문구점 등 가맹점으로 지정된 사업장에서만 사용 가능
지원대상	-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김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만16~18세
지원금액	- 월 5만원/1인당(연 최대 60만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김제시 청소년드림카드 지원 조례

[시행 2020. 9. 24.]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330호, 2020. 9. 24., 제정]

전라북도 김제시(체육청소년과), 540-409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청소년이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을 통해 현재를 즐기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드림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드림카드"란 청소년이 창의적 역량 개발 등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포인트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 2. "가맹점"이란 카드 포인트를 이용하여 물품과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이 정한 업소를 말한다.
- 3. "사용자" 란 카드를 발급받아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카드의 지원 대상자는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지원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카드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사용자에게 매월 10만원 이내의 포인트를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지원대상자 본인
- 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
- 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발급신청 등)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
- 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 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 ②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포인트 지급방법) 시장은 카드를 발급 즉시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매월 지급대상 확정)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기 발급받은 사용자에 대해 매월 1일 기준으로 제3조의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포인트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카드의 사용) ① 시장은 문화·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 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
- 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
- 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 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미술,무용) 학원, 서점
- 4. 경제지원: 이 미용실, 문구점
- 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 사용장소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카드의 사용 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이며, 사용 기한 이후 남아있는 포인트는 자동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카드를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
- ③ 사용자는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11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 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
- 2. 제10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 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 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 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가맹점으로 지정받기 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한 사항을 변경·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시장은 제1호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 대해 카드의 사용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가맹점 지정 시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성 불편등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3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가맹점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카드 포인트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 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포인트를 차감하는 행위
- ②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 \cdot 감독) 시장은 카드사업의 점검 \cdot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맹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가맹점은 적극 현조하여야 한다.

제15조(매출금의 지급) 시장은 카드 포인트 매출금액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제16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 등) ① 시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카드 관리시스템 운영비는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네종특별자치시 꿈귀카드(진로체험 카드)

사업목적	- 청소년이 진로ㆍ직업체험 및 문화활동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기회 제공
사업내용	- 진로직업체험 : 진로탐험, 캠프, 진로 컨설팅, 직업상담·체험, 직업체험관 등 - 문화체험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문화센터 등 문화체험 - 스포츠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된 중학교 1학년 재학생(만 13세 학교밖 청소년)	
지원금액 - 연 10만원/1인당	
신청방법	- 신규신청 및 최초카드 수령 ·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은 해당 중학교 · 학교밖 청소년 및 전입생 신규신청, 카드 재발급 신청 및 수령은 모두 읍·면·동 주민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시행 2017. 1. 1.]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915호, 2016. 10. 31., 제정]

세종특별자치시(아동청소년과) 044-300-4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 내의 청소년에 대한 문화카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문화활동·직업체험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 문화카드"란 청소년이 영화·공연·연극 등의 문화활동과 직업체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발급대상자) 청소년 문화카드의 발급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일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학교(시 소재 중학교로 한정하되, 시 관할구역이 포함된 학군의 인접 지방자치단체 소재 중학교는 포함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3세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4조(발급시기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사람에게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해가 각각 다른 청소년의 경우에는 먼저 신청하는 하나의 청소년 문화카드만 발급할 수 있다.

- 1.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한 날
- 2. 학교 밖 청소년: 만 13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3월 2일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주민등록지를 시 외의 지역으로 옮긴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분의 사용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5조(지원금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발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문화카드에 1원을 1점으로 환산·충전하여 발급하는 방식으로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① 청소년 문화카드를 신청하려는 사람(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발급대상자를 포함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이거나 발급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 직인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신청인이 발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시장이 지정하는 전국의 온·오프라인의 영화, 공연, 연극 등 문화활동 및 직업체험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판단하는 문화활동이나 직업체험 항목에 대해서는 사용장소를 시 관할구역 내로 한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 문화카드의 사용장소에 대해서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청소년 문화카드의 사용기한은 청소년문화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요금의 정산) 청소년 문화카드의 사용요금은 제10조에 따라 청소년 문화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월 2회 이상 정산한다.

제9조(발급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청소년 문화카드의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청소년 문화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카드 관리·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꿈인카드(꿈IN카드)

사업목적	-'자유학년제'와 발 맞춰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및 문화 활동의 기회 확대 지원	
사업내용	- 진로직업체험 : 진로탐험, 캠프, 진로 컨설팅, 직업상담·체험, 직업체험관 등 - 문화체험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문화센터 등 문화체험 - 문예체 프로그램 :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 학원 및 교습소 - 특화 가맹점 : 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예술가 등	
지원대상	-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과 만 13세 청소년	
지원금액 - 연 10만원/1인당(상·하반기 각 5만원 포인트 지급)		
신청방법	- 카드 신청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 - 카드 발급 후 개인인증 등록 후 즉시 사용 가능(https://gs.purmee.kr)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지원 카드 운영 조례

[시행 2018. 11. 7.]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201호. 2018. 11. 7..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교육청소년과), 2600-6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문화·예술·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원 카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7.)

제2조(정의) "청소년 지원 카드"란 청소년이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8. 11. 7.)

- 1. 삭제 (2018. 11. 7.)
- 2. 삭제 (2018, 11, 7.)

제3조(지원 대상자) ① 지원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해당 연도에 만 13세가 되는 청소년
- 2. 「초·중등 교육법」제2조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3. 「초·중등 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자를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원 이내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 ①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이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1. 7.)

- ② 신청서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다.(개정 2018. 11. 7.)
- ③ 구청장은 중학교 1학년 재학 중임에도 해당 연도에 만 13세가 도래되지 않거나 이미 지났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8, 11, 7,)

제6조(발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 1. 상반기: 3. 2. ~ 6. 30.
- 2. 하반기: 7. 1. ~ 11. 15.
- ②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하반기 신청 기간 시작일에 강서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 ③ 하반기 신청자 중 상반기 3개월 이상 강서구에 거주한 경우 소급 지원한다.(신설 2018. 11. 7.)



제7조(사용) 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문화·예술·진로체험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발급한 해당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개정 2018. 11. 7.)

제8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정산) 카드의 사용 비용은 제8조에 따라 카드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사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김제시를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중학교 1학년(학교 밖 만 1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학교 1학년 전체에게 지급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긴 하나, 중학교 1학년이라는 대상의 제한이 있음.
- ⇒ 김제시처럼 폭넓은 대상(만16~18세)과 폭넓은 사용처 등 사업목적에 적합한 대상과 사용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성남시 운영 사례

-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카드

사업목적	- 은둔형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 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내용	- 성남시에서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계발을 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 16~18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액 - 월별 5만원 기준(분기별 최대 15만원 지급) -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충전방식		
사용장소	- 서점, 안경점, 학원 등 성남시내 1372곳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	



⇒ 성남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특정 대상만이 혜택이 주어진다. 성남시의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문화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3. 점책 제안

○ 제안내용

- 성남시 거주 만16세부터 만18세 대상 문화 바우처 지원
- · 1인당 연간 20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 발급받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위해 사용

○『성남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신설

성남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받는 학업 부담을 줄이고 문화생활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16세부터 만 18세인 자를 말한다.
- 2. '청소년 문화바우처'란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범위)

청소년 문화바우처의 지급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6세부터 만 18세 청소년이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 ① 청소년 문화바우처는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소년에게 매년 초에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지급액은 1인당 20만 원 이내로 성남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 ①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청소년 문화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④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택1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ㄱ. 주민등록표 초본
- L. 본인 명의의 청소년증
- 다. 위임장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지급결정·지급)

-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수급 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 문화바우처는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달의 28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정한 다른 날짜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들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장려하고,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문화여가생활을 통해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다.
- 문화바우처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 문화바우처를 통해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개정

청소년 정치참여교육 TFT

정규연, 신가원, 이민하, 민소윤 4명

1. 문제인식

아동과 청소년은 어리고 미성숙하다는 것을 이유로 학교에서 마땅히 누려야하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치 참여 권리가 학교 규칙에 의해 통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처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참여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기는 힘들다.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며 국내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었다.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되면서 처음으로 만 18세가 선거에 참여하였고, 사전투표 에서는 만 19세 이하 유권자 26만 명이 참여하여 청소년, 청년 유권자가 정치 참여에 가지는 관심과 열정을 증명하였다.

투표권을 갖게 되는 나이가 하락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정치 활동이 활성화됨이 마땅하지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불가, 학교 내 선거운동과 연설 제한 등으로 청소년들은 주체적인 정치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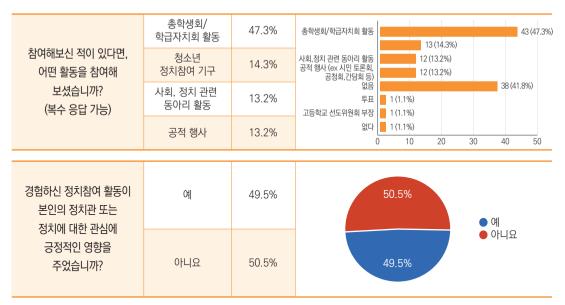
이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와 권리에 관한 관심을 인식한 교육부는 여러 해 학교 현장에 민주주의 교육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교육부는 2018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민주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그 역시 실제로 원활하게 시행되지는 못했으며 교과서의 표현들이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가둔다는 의견이 있었다.

2. 현황 및 문제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이 부족하다.

유년기에 시민으로서의 경험을 가지지 못한 것이 장래에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다. 단위학교 여건에 따라 학생자치기구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결정권 부족, 행 · 재정상 지원 부족으로 다수학교에서 학교 내 정치 참여 기구인 학생자치회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략했다.





[출처]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의 현황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의 필요 제언〉 성남고등학교 김대희, 박건우, 최울

설문조사 결과 총학생회, 학급자치회 활동으로 정치 활동을 경험한 사람이 47.3%였고, 경험한 정치참여 활동이 본인의 정치관 또는 정치에 대한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한 응답자는 50.5%로 과반수를 넘겼다.

학생을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하지 않거나 입시 전까지 모든 참여 활동을 유예하는 문화로 인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수 있는 정치참여 활동이 미비하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시민적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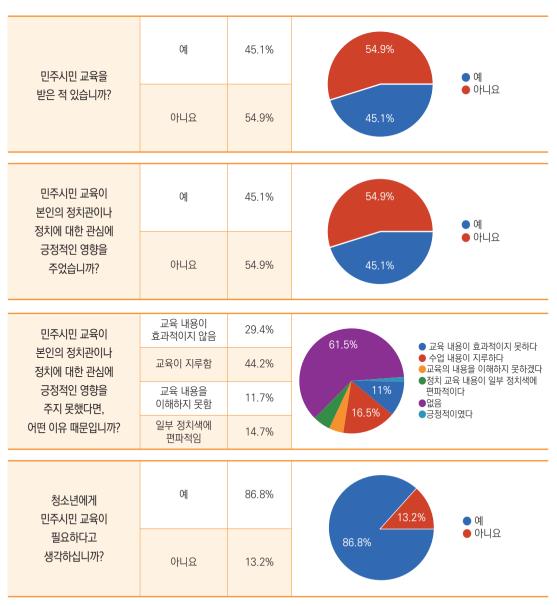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강사진 부족과 제한된 연수인원으로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충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청 남부청사의 재작년 주요 추진 정책과 2020년 변화·강조된 사항이다.

구분	2019년 주요 추진 정책	2020년 변화·강조 사항
실천중심 시민교육	□ 교육과정 연계 민주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 실천 학교 운영 □ 존중과 배려의 생활공동체 성장 지원	□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운영 □ 민주시민교육 실천학교 사례 공유와 확산 □ 민주시민교육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 따뜻한 감성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학교민주주의 정착과 학생자치 내실화	□ 교육주체의 참여와 학교자치 확대 □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학생자치 자율성 확대 □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 □ 학생 참정권 교육 강화	□ 학교자치조례 현장 안착과 학교자치 시스템 강화 □ 교육주체의 학교교육활동 참여·결정권 확대 (교육과정, 재정, 인사) □ 학생자치 내실화와 정책참여 보장

평화통일교육 확산	□ 학교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학교평화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 세계·동북아 평화교육 프로젝트 운영	□ 학교평화통일교육 내실화 지원□ 학교평화통일교육 지원체계 운영 활성화□ 세계시민·동북아 평화교육 프로젝트 확산□ 주제 중심 근현대사 교육 자료 개발
다문화	□ 다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정착
어울림교육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내실화	□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시스템 강화
활성화	□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설립 기반 구축	□ 다문화가정 밀집지역 교육력 제고

[출처] 경기도 교육청 2020 민주시민교육과 정책 추진 기본계획



[출처]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의 현황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의 필요 제언〉 성남고등학교 김대희, 박건우, 최울

아버 (자차)제안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실제 민주 시민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응답자의 과반수인 54.9%였다. 교육청의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 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응답자들이 교육을 받은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민주시민교육이 본인의 정치관이나 정치에 대한 관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이 지루해서(44.2%), 교육 내용이 효과적이지 않아서(29.4%) 등이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8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청소년들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민주시민교육은 원활히 실행되고 있지 않으며 이루어진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

민주시민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할 방법을 아는 것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인 청소년 당사자이다. 하지만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효과적인 민주시민교육을 계획. 실시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정책 제안

○ 제안내용

- 제안목적 :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시민의 의견수렴 및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달성
- 제안내용
- ·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에 관한 내용을 제29조 4항 2호 라목에 신설하고자 한다.

○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개정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제29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제29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생략) 2호 라목 〈신 설〉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현행과 같음) 2호 가, 나, 다 (현행과 같음) 라.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소년 2인 이상		

4. 기대효과

- 청소년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 포함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룬다는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성남시 청소년증 활성화 지원 조례」제정

청소년증 TFT

양다원, 이민하, 유재석, 김지유, 고예진, 조정훈 6명

1. 문제인식

지난 3월, 정부에서 실시한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면서 청소년증과 학생증에 구분된 사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었다. 이는 공적 마스크 5부제의 시행규칙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신분증에 청소년증이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추후의 수정으로 시행 규칙에 청소년증도 기재가 되었지만,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국가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바로 신분증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상황은 청소년증의 현 주소를 보여주며, 많은 문제를 인식하게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소년증은 모두가 공인 신분증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서 (본인확인용에서) 뺐다"며 "공인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청소년증도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 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에서 청소년증을 언급하지 않아 대부분 지역에선 청소년증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출체] 조해영, '40만 학교밖 청소년은 공적 마스크 제외?...본인확인서 청소년증 빠져',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90726625701680&mediaCodeNo=257&OutLnkChk=Y)

한달 뒤, 4월 15일에 있었던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투표 시 지참해야 하는 신분증 관련 안내 자료에서 학생증은 있었으나, 청소년증이 빠져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분증 안내 자료 수정으로 정정되었지만, 이를 통해 청소년증이 선거를 비롯한 공적 상황에서 끊임없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월 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투표 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안내 자료에 또 학생증은 있으나 청소년증을 빠뜨려 논란이 일었다.

[출처] 이영일, "학생증' 없애고 '청소년증'으로 통일해야 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39566\&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and the properties of the$

또한 아래 사례처럼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중에서 청소년증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청소년증의 사용을 거부한 사례들 또한 현재까지의 청소년증 홍보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외버스를 탔을 때 기사님이 학생증을 보여 달라고 하셨어요. 학생증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청소년증을 보여 드리니,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화를 내셨어요. 결국 저는 성인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출체]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사례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095550827)

청소년증은 2004년 1월부터 사정상 학교를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비학생 청소년들 혹은 만 9세 이상 학생들이 금융거래나 시험에서의 신부확인이나 청소년으로서의 각종 입장료 할인 등에서 청소년임을 증명하기 위해 생겨났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의도와 다르게 청소년들이 학생증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실제 사용도 저조하다. 이런 현재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래의 취지대로 청소년증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증에 대한 저조한 발급률 및 관심

현재 우리 사회에는 청소년 대표하는 공적 신분증으로는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은 현저하게 낮다.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는 미약하고, 사용률 또한 저조했으며, 이는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받은 청소년증에 대한 무관심으로까지 이어졌다.

청소년증의 발급률은 2018년 약 160,000건 그리고 2019년 20,000건 감소한 140,000건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2020년 기준으로 지자체별 청소년증 발급비율은 2%미만을 밑돌고 있다. 이는 약 519만여 명의 청소년 중 발급 비율이 고작 4.6%밖에 되지 않음을 보여줌으로, 청소년증의 발급률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2018년 청소년증 발급현황] (단위 : 건)						(단위 : 건)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월
발 급	36,244	40,898	43,543	49,438	50,663	95,536	114,250	188,562	141,652

[출처]: 김정태 "청소년대상 발급 국가공인 신분증 '청소년증' 15년째 발급률 고작10%", nsp통신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불편을 해소하고 학생과 비학생 청소년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된 청소년증의 의도와는 달리 청소년증은 비학생들에게도 큰 관심을 얻지 못했으며, 발급률은 청소년 연령의 인구에 대비하여 0.005%수준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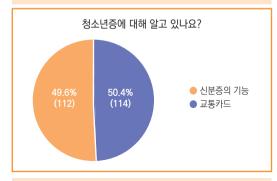
이후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청소년증의 발급 등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2003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증이 많은 비학생에게 선호되어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청소년 발급률이 해당연령의 청소년 인구 대비하여 0.00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정규석, 김영미, 김지영 2014)

[출처] 안미영.(2017).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증의 고찰(1).사법행정,58(2),4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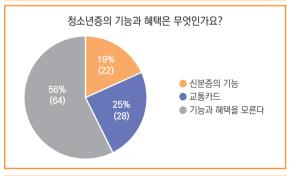
우리 지자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에서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0일 까지 성남시 내의 만13세 이상 만19세 이하의 청소년 2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증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청소년이 무려 49.6%(112명)였으며, 청소년증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청소년들 중에서도 청소년증의 정확한 기능과 혜택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으며, 대부분은 청소년증을 오직 형식적인 청소년의 신분증으로만 알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의향이 없다고 한 청소년이 40.3%(91명)이였으며, 그에 따른 이유 중 '발급받아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가 67.4%(62명)로 가장 높은 이유였으며, 청소년증 사용 가능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에 따라 청소년증의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청소년들이 다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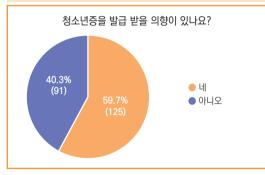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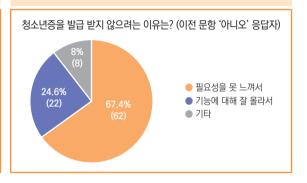
[청소년증의 정확한 기능과 혜택에 대한 인식 유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의향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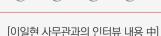
[청소년증을 발급받지 않으려는 이유]



[출처]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청소년증 TF팀'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증의 발급을 필요없다고 느끼는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들의 답변을 통해서 청소년증에 대한 부정적이고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불필요하다는 생각은 청소년증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할인영역 및 할인율 부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은 청소년증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이어졌다.

또한 청소년증의 주체인 청소년들조차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년증 사용의 확대는 거의 불가한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증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청소년 본인이 선택에 의해 알아보고 오지 않는 이상 모르는 청소년증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출체 김민아, '학생증 대용 청소년증, 불량청소년 낙인 같아요',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 view.html?ID=68084,2017.12.05.)

○ 청소년증 사용에 대한 부정적 낙인

청소년과 학생증, 두 가지로 나누어진 청소년들의 신분증은 청소년을 학교 안과 밖으로 나누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차별적인 요소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청소년증과 학생증의 분리이다.

이는 청소년을 학생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문화가 아직도 존재함을 보여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과 달리 사회의 다양한면에서 배제를 받는 듯 하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학교라는 하나의 작은 사회 내에서의 학생증 사용은 계속되더라도, 학교 밖의 사회에서는 통합된 하나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그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증이다. 학생과 비학생의 경계를 없애는 하나의 신분증이 바로 청소년증의 역할인 것이다.



[이성학 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 교육지원팀 실무자님 인터뷰 내용 中]

"청소년증을 내밀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불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을 우려해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들도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출체 김민아, '학생증 대용 청소년증, 불량청소년 낙인 같아요', 스카이데일리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68084,2017.12.05.)

이러한 발급률 저조의 문제와 청소년증에 대한 외면으로 인해 청소년증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신분증'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증은 도입된지 17년이 되어가도 사용이 부진하다.



○ 청소년증 할인가맹점의 사례



익산시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익산시에서 2020년 1월부터 전라북도 최초로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복지확대를 목적으로 하여, 익산시 내의 청소년유해업소를 제외한 모든 점포 및 사업체에서 신청할 경우, '청소년증 할인가맹점'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청소년증 할인가맹점'에서는 청소년증을 소지한 익산시 내의 청소년에게 최대 5~30%의 금액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익산시 내에서의 청소년증 사용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성남시 내에서도 익산시 '청소년증 할인가맹점'과 유사한 제도를 통해 청소년증의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큰 핵심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성남시 청소년증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해 성남시에서는 청소년증이 공적신분증으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 또한 청소년증 사용처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증 사용 가능처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증 사용 가능 인증마크의 부착을 통해서 청소년증 사용처에 대한 홍보와 사용 용도에 대한 임식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 학교 밖의 성남시 사회에서는 청소년증의 사용을 촉구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 사용 시 혜택과 용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

3. 정책 제안

○ 제안내용

- 청소년증 사용 가능처에 인증마크 부착
- : 청소년증 사용시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사용처에 '청소년증 사용 가능 인증마크' 부착
- 성남시 내에서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실시
- : 성남시와 협약을 맺은 가맹점에서 청소년증 제시할 경우, 5~30%의 금액을 할인해주는 할인가맹점 제도 실시

『성남시 청소년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증 사용 지원 및 확대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청소년들의 복지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청소년증"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른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말한다.
- 2."성남사랑상품권"이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 제4호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 원칙) 청소년증의 사용 및 지원은 청소년들의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한 원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증 할인가맹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증의 발급)

① 청소년증의 발급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조(청소년증의 발급신청)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청소년증의 발급)에 따른다.

제7조(청소년증의 내용)

① 청소년증은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제한적 금융결제 기능이 가능하다.

제8조(청소년증의 사용)

- ① 청소년증 사용 가능 시설은 '청소년증 사용 가능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증 사용 가능 인증마크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청소년증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는 청소년증을 제시 할 경우, 금액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증 사용의 확대로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사이의 경계를 줄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
- 청소년증 사용 및 다양한 지원 확대를 통한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도모한다.
- 청소년 공적 신분증 필요시 혼란 최소화 및 편리함을 증진한다.
 - · 획일화된 청소년의 신분증 기준으로 공적 상황에서의 혼란 감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성남시학생회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학생회 연합 TFT

신가원, 최경민, 황혜정 3명

1. 문제인식

○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계

청소년과 정치 참여의 거리가 멀었던 과거와는 달리, 2019년도 12월 국내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되는 공직선거법의 통과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청소년 정치참여의 시작에 따라 이어졌어야 할 다양한 청소년의 참정권 행사 활동, 다시 말해 청소년이 청소년 소속, 참여 기구의 실질적인 주체로서의 활동은 커녕, 현재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는 적극적 고려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부정적이며, 선거관리 위원회의 규제 중심의 방침과 청소년 정치적 참여의 반대 입장인 교원단체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명을 향한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사회의 모습은 청소년정책제안대회를 통한 청소년 의견수렴 방안 및 자치조직 정립과 같이 청소년 의사표명 창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유의미한 정책적 성과를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청소년 민주주의 교육의 빈약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 교육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로 나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민주주의 교육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진행되고 있는 경우 교육의 깊이와 학생들의 이해도는 상당히 빈약하다.

이러한 민주주의 교육의 빈약함을 보충하기 위해 학생회가 직접 교육에 관여하고 학생주도교육을 실천하는 학생주도수업 또한 중요성만 지속적으로 대두될뿐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통해 학생민주주의의 중요성 강화를 이루어 학교 내에서 민주적 자치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학생들의 직접적인 학교정책 현장에서의 관여에 도움이 된다.

현재 청소년의 주체적인 정치에 참여와 민주적인 의견 표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때, 청소년 참정권을 더욱 강화 시키기 위해 각학교의 학생회 사이 서로 간의 교류와 타 학생회의 활동을 통한 배움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참여 기구의 필요성

- 청소년의 기본권 강화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의 시민적 권한은 대개 미성숙함을 이유로 한국사회에서 경시되고 있다.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학교규칙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 당하고 있으며, 학교밖에서도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는 등 자유롭고 자율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청소년은 스스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분위기나 연대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를 바탕하지 않고 있어 시민적 권리를 보존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소수'만 참여하는 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사회참여의 필요성과 요구가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한편, 청소년의 기본권은 청소년의 정치적 역량에 대한 저평가, 청소년이 참여할 시간이 부족함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 기구에 대해 인식하고 참여하는 비율은 전체 청소년의 2%에 불과했다. 제도적으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대개 단년 사업으로 운영되어 활동의 지속성이 부족했으며, 홍보 미비등의 문제로 참여하는 청소년의 다양성이 부족했다.

	명칭	역할	성과 및 활동	정원
1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의회운영(상임·특별·윤리위원회, TF팀), 의제발굴, 정책연구, 입법제안, 예산심의 등	입법제안 및 반영 :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설치, 효성고 통학개선	35명
2	성남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의견수렴 및 참여의장 운영, 청소년 정책 추진 및 이행모니터링, 기획사업 추진, 정책제안 등	청소년 참여정책 및 사업 : 토크콘서트 주최, 청소년 참여예산제 진행	20명 내외
3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 시설 운영 및 청소년 행사&프로그램 모니터링, 지역 내 다양한 참여활동 진행	각 지역구의 청소년운영위원회 교류 프로그램 진행, 시설장 간담회, 수련관 자문위원회 진행	20명 내외
4	분당지역 고등학교 학생회연합 BLU	분당지역 내에서 각 학교 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캠페인, 지역 봉사활동, 청소년 행사 기획 등을 주관	차오름제, 어울림마당, 청소년 참여부스 및 행사운영, 3.1운동 및 환경인식 개선 등 캠페인 진행	제한없음 (분당구 고등 학교만 해당)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현황-성남시 중심]

⇒ 대표성을 띤 참여기구로 운영되어, 소수만을 대상으로 하며, 분당지역 고등학교 학생회 연합도 특정 지역구에만 국한되어 운영되어 성남시 전체 지역을 포괄하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경험 할 수 있는 참여기구가 부재함.



- 지역사회와 학교의 차이 : 학교 민주주의, 자치의 발전 가능성

학교 및 학교활동과의 큰 접근성은 사회적으로 약자이자 소수자인 청소년이 다수자의 입장을 가지게 되는 특수한 공간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런 학교의 성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청소년의 참여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은 2019년 제정된 경기도학교자치 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교 청소년이 교육 행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권리와 참여기회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참여가 확장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91.5%가 학생인 지금 청소년이 겪고 있는 사회 문제와 관심을 가지는 정책 의제는 대개 교육과 학교 환경에 편중되어 있으며, 청소년의 이권에 적극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에 따라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음은 물론, 실질적으로 청소년 권리를 개선하고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학생참여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행복의회에서 주최한 성남시청소년정책제안대회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를 통해 발의된 정책의제 13건 중 4건, 2018 제안대회 수상작 11건 중 3건, 2019년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 본선 진출 10건 중 4건이 학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학교 및 학교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실효성 있는 청소년 대상 시민 정치 교육의 필요성

민주시민 교육상의 정치적 중립 문제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재, 선거연령 인하로 청소년의 참정권이 형식적인 일진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바쳐 줄 시민 정치 교육은 적절히 제공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 실용적이며 효과적인 시민적 경험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생회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청소년들이 양질의 문제해결/합의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 사례

- 국내 사려

2019년 11월 11일자로 공포, 시행된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는 기존에 미비했던 학교 자치 관련 현행 법령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또한 학교자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초·중등교육법 17, 30조를 근거로 한 기존의 법령은 학교자치에 관한 조직권한을 교장에게 위임하여 학교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활동을 꾸려나가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다.

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4조(자치기구의 종류 등)

-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서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를 둔다. 다만, 유치원, 통합학교, 소규모학교 등의 자치기구 설치에 대한 예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배분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회)

- ① 학생회에는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② 학생회 정·부회장은 학생의 대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 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 2. 학생 자치활동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3. 학생 동아리 활동에 관한 사항
 - 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 5. 학생회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
- ④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 ⑤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교직원과 학부모는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이 나게

국가 및 단체		권한 및 지위	비고	
1	오스트리아 (Schülervertreter)	- 학교공동체회의 구성 : 학교 행사, 재판, 자율교과 과정 계획 조율 등	회의 운영방식 및 체계가 지정되어있음,	
2	일본 생도회 및 연합 (*사례:센다이)	- 센다이 시 학생인권조례에 반하여 단합을 통해 의사반영이고 청소년 의사표현 기구로서 학생회의 유용성 표출		
3	미국 (NatStuCo)	- 학교와 지역 사회에 봉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권한을 부여 - 학생들이 학교, 커뮤니티 리더십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장려		

3. 점책 제안

○ 제안내용

- 제안목적: 경기도 학교 자치조례를 근거로 한 학생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며,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학생 연대기구를 만듬으로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제안내용

- · 학생회 연합체의 설치 및 운영
- 1) 현행 고등학교학생회연합의 체계를 정비하고 통합
- 2) 관내 중·고등학교가 모두 소속된 학생회 연합을 구성, 성남시 내의 학생회에 자치권과 역량 부여
- 3) 성남시 학생회연합의 구성 및 의결방식 규명
- · 대의적 권한
- 1) 교장, 교육장, 시장 등과의 의사소통 방법, 창구 명백화



[학생회 연합 조직도]



『성남시학생회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신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 중등교육법' 및 '유엔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성남시 소재 중등학교의 자치 및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도 학교 자치조례'에서 정하는 학생회의 운영과 관내 학생회의 연합체인 성남시학생회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는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중등학교, 제 60조의 3의 대안학교, 2. 제 55조의 특수학교를 의미한다.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학생회'는 '경기도 학교 자치조례' 제 4조에서 정한 민주적 보통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자치회를 말한다. 단,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대표로써 선출된 학생자치회에 따르는 조직을 포함한다.
- 2. '학생회장'은 제 2조 1호의 회장이다.
- 3. '학생부회장'은 제2조 1호의 부회장이다.

제3조(회원의 자격)

① 성남시 학생회 총회(이하 '총회')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성남시 내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학교 내에서 대의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

- ② 성남시 내 각 고등학교의 학생회장 및 학생부 회장 보궐 시 학생회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할 수 있으며 연합의 의장단은 임시 회원의 지위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학생회장 및 학생 부회장의 부재 사유가 치유됨과 동시에 임시 회원은 그 지위를 상실한다.
- ③ 회원의 임기는 회원이 소속된 고등학교의 학생회의 임기를 따른다.

제4조(대의원회)

- ① 대의원회는 관내 학교 청소년에 대한 대의적 권한을 가진다
- ② 대의원회 위원은 성남시 내 각 중등학교의 학생회장 1인 및 학생부 회장 2인으로 한다.

제5조(의장단)

-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당선자 결정은 과반수 득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사무국은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해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합 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따른다.

제6조(상임위원회)

총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임위원회를 두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행한다.

법제위원회

교육위원회

시설환경위원회

생활인권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교류위원회

홍보위원회

제7조(정기회의)

- ① 총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 ② 총회의 정기회의는 재적총회원 과반수의 충석으로 개의하고 충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다
- ③ 정기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 ④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총회의 이름으로 관련 학교, 기관이나 단체에 보내며, 입법 청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제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총회의 이름으로 입법 청원하다.

제8조(임시회의)

- ①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
- ② 임시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에 국한하지 않는다.
- ③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중 긴급한 처리가 있어야 하는 안건은 회기 내에 관련 학교, 기관이나 단체에 보낼 수 있으며, 긴급한 처리가 있어야 하지 않는 안건은 다음 정기회의의 통과 안건과 함께 관련 학교, 기관이나 단체에 보낸다.

제9조(의견반영)

- ① 시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며, 정기회의를 통해 총회의 제안 반영 추이를 전달한다.
- ② 교육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학교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정기회의를 통해 총회의 제안 반영 추이를 전달한다.

제10조(사무국)

- ① 총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사무국을 운영한다.
- ② 사무국 임원의 자격은 각 학교의 학생회 산하 집행부 부장과 부부장이다.
-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 내부 회의를 통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 ④ 사무국은 총회 본연의 의정활동에 개입할 수 없다.

제11조(관계기관)

① 총회는 각호에 따른 청소년 참여기구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성한다.

성남시 청소년 행복 의회

성남시 청소년 참여위원회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

동아리 연합

기타 총회가 협력할 필요 있는 기관

제12조(자문위원)

- ① 총회는 총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자문위원을 섭외할 수 있으며, 총회의를 통해 섭외 목록을 정한다.
-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운영 규정)

총회의 세부 운영 규정은 총회원이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강화
- 학교 청소년을 위한 가까운 정책실현 창구가 제공
- 청소년들에게 시민 교육/정치 교육의 기회가 제공
-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균형 잡힌 사고를 통해 책임과 자기 결정 역량을 함양
- 의사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 등을 습득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올바른 성인식 TFT [1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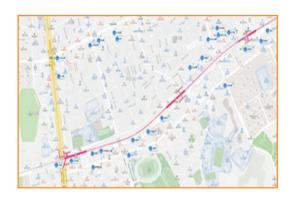
권희정, 김서현, 김서희, 고은교 4명

1. 문제인식

'신림동 원룸 사건'을 비롯한 혼자 사는 여성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일부 배달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인 연락을 하기도 하고, 택배 기사를 사칭해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도 발생했다. 심지어 지난 7월 23일 유튜브에는 '신림동, 소름 돋는 사이코패스 도둑 CCTV 실제상황'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돼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 영상은 택배 대리 수령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노이즈마케팅으로 제작된 영상으로 확인됐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공포 마케팅이었던 것이다. 여성을 노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SNS에는 곽두팔, 육만춘, 김교살 등 억양이 센 이름을 담긴 '세 보이는 이름 리스트'가 공유되기도 했다. 택배 주문 시 혹시 모를 범죄에 노출될까 두려워센 이름을 지난 남성이 살거나 이런 이름을 가진 남성과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이다.

이는 혼자 사는 많은 여성이 주거침입 등 각종 범죄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에 대한 반증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처럼, 1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여러 수단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1인 여성들의 심리적 안정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안전의 손길이 필요한 사각지대]

현재 성남시에 로고젝터가 13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공원 앞길이란 점, 그리고 미러시트는 중원구13곳, 분당구 33곳, 수정구 36곳이지만 대부분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흥가 인근 주택이나 1인 여성들이 밀집해 있는 원룸, 주택가로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성남시 수정·중원·분당경찰서 협력·설치]

[한국시민뉴스] 황정옥 기자 = 성남시는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안전 사업의 하나로 수정·중원·분당경찰서와 협력해 최근 6개월간 지역 82곳에 안심거웈(미러시트)을 설치했다

안심거울 설치는 보행자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의 인상착의를 볼 수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에게 자신의 얼굴이 거울에 드러나는 것에 대한 위축감을 주는 범죄예방 설계기법(CPTED)이다.

설치된 곳은 수정구 단대동 주택가 36곳, 중원구 황송, 대원 등 공원 화장실 13곳, 분당구 서당, 탑골 등 어린이공원 화장실 33곳이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거나, 귀가 중에 뒤따라오는 사람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벽, 출입문 등에 미러시트지 (60cm*50cm) 형태로 제작해 부착했다.

[출처] 한국시민뉴스

또한, 지난달 초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A씨가 퇴근길 어두운 골목을 홀로 걷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괴한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설치된 골목길이 어두워 A씨는 범인의 얼굴은커녕 어느 방향으로 도망갔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A씨는 비명을 질렀지만, 인근 주민들은 습관처럼 커튼을 치고 있었고 내다보지 않았다. 100m 정도 되는 골목길엔 폐쇄회로 CCTV가 단한 대도 없었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문이 주변에 퍼졌지만,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다. 인근 분식집에서 일하는 박모(여·38)씨는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도 퇴폐 마사지업소 등 유흥업소가 즐비한 동네"라며 "동네 주민이 성추행을 당해 분위기가 흉흉하지만, 평소에도 종종 있던 일이라 다들 쉬쉬하고 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들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고, 치안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인근 주택가와 공원 등은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으면서도 무방비하게 방치되어있다.

따라서, 모든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여성의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버 (자차)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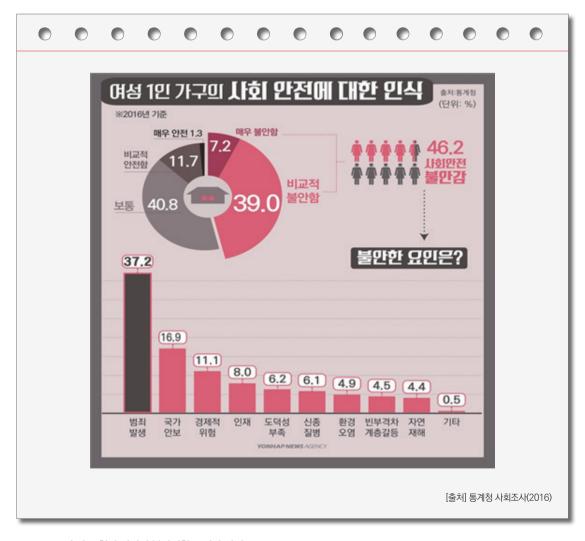
2. 현황 및 문제점

○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여성

2016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비율을 조사한 결과 범죄발생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 수치가 73.3%로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하였으며,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서도 여성의 50.9%가 불안하다고 느꼈다. 또한 여성 1인 가구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에서도 매우불안 7.2%, 비교적 불안함 39%로 총 46.2%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범죄 발생이 37.2%로 제일 높았다.

[성별 사회 안전에 대한 불안 비율(2016)] (단위:%)						
여 남						
전반적인 사회 안전	50.9	40.1				
범죄 발생	73.3	60.6				
신종 질병	65.5	58.4				





○ 2030 1인 가구 청년 여성의 불안전한 주거와 안전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20~80대 1인 여성가구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에서 1인 가구 2030 청년 여성 10명 중 4명 (36.3%)은 주거지 불안을 느끼며, CCTV, 방범창 등 안전시설 미비와 주거지 내부 계단, 복도 등 은닉장소가 불안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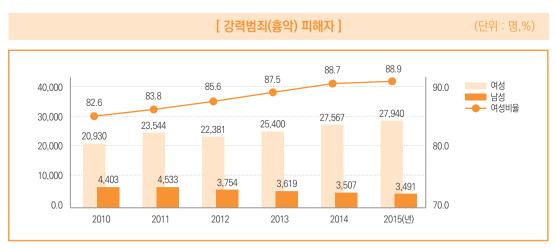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여성의 높은 범죄 피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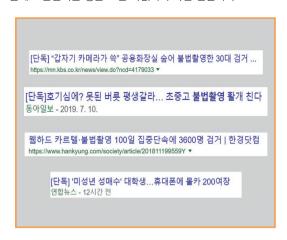
실제로 대검찰청의 강력범죄(흉악) 피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여성이 남성보다 안전에 있어 더욱 위험하다는 신호이다. 여성의 범죄 피해율은 2010년대부터 2015년대까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 불법촬영 현황

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건수는 2018년 기준 5925건이다.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공유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로 판결되는 형을 보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출처] 2017 경찰통계연보

○ 스토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1인 여성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는 2013년 312건에서 2015년 363건, 2018년 544건으로 2019년 583건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여성 1인 가구의 57%가 범죄발생에 대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무려 10명 중 6명이 불안감'을 안고 사는 것이다.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주거침입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경미하다. 폭행, 강도, 성폭력 등 추가적인 범죄가 벌어져야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어 그 불안감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출처]연합뉴스



3. 정책 제안

○ 제안내용

-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 운영
- 지하철 역 내 에스컬레이터에 반사경 안심거울 설치

[현재 지하철역 안심거울 설치(잠실역, 복정역, 가락시장역)현황]



· 1인 여성가구/원룸/주택 밀집가 등 미러시트 안심거울과 반사경 안심거울 설치를 통한 안심거울길 조성



안심거울은 부착된 거울을 통하여 뒷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어 불법촬영 및 범죄 예방이 가능하고, 범행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로고젝터 활성화 등



지하철역과 어두운 골목은 물론 성범죄 위험이 있는 공간에 로고젝터로 안심길을 조성하여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로고젝터마다 고유번호가 있어 비상 상황 발생 시 지구대에 고유번호를 말하면 그 위치로 출동 가능하도록 구현

-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1인 여성가구 주거 안전 공간 평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현행 조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 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거주 공간
-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6조(주거단지 등)

개정 조례(안)

제16조(주거단지 등)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 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다양한 가족(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거주 공간
-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3. 1인 여성가구 주거안전을 위한 공간

제17조(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7조(여성·아동 안전망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아동 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 3.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업 운영
- 4. 여성 1인 점포를 위한 여성안심도시 조성 사업 운영

4. 기대효과

-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예방하고 밤길 여성 및 행인의 범죄 불안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 몰카 범죄 등을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단순히 여성이 살기 편한 거주 환경이나 도시 조성을 넘어 범죄 및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설비 및 시설을 구축할 수 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올바른 성인식 TFT [2팀]

신가워 1명

1. 문제인식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집단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가출을 했다는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서 회유하고 협박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보도자료(출처: mbc news)에 따르면, 이 일당은 가출 청소년을 타겠으로 삼아 성폭력을 자행했으며, 가출 상태인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 가겠다 협박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며 자신의 말을 따르도록 길들이는 그루밍 범죄를 저질렀다. 이 일당은 성매매 알선 혐의도 받았는데, 물론 가정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는 하루 아침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의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가정문제를 비롯하여 가출을 전후로 열악한 생활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학업이 중단되거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정서 인지 행동 상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숙식과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성착취 당하는 것을 '선택'되는 것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처한 위기는 성착취에 대한 취약성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나게 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출 행위 자체보다는 가출 이후 스스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절도, 성매매 등 범죄가 생존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 가출 상황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부당 대우를 당하는 등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가정 밖 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위와 같은 상황은 가정 밖 청소년의 의식주, 의료서비스 활용, 교육 및 직업훈련 기회, 문화생활 영위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며, 나아가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및 직업생활,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 밖 청소년이 처한 위기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의 의식주와 기본적인 생활 안전망 확보 및 행복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조례를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이 제안서 이전에 올바른 성인식TF의 「성남시 가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제안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와 가출 경험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위기 취약성을 이해하고 이에 주목하여 가출 청소년의 위기관리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의료지원을 비롯한 통합적 지원을 중심 내용으로 삼았음을 인식하고, 해당 제안서의 전제와 구성 요소를 수용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위기관리와 자립지원에 관한 제안을 새로이 제시하고자 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가정 밖 청소년 실태

가정 밖 청소년의 위험상황 노출

가출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 아니다. 이들은 인권, 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별도의 사회적 지원이 없을 경우 정상적인 발달, 성장이 어려운 위기 청소년(at-risk youth)이다. 이들 위기 청소년은 거리에서의 생활 과정에서 여러 상황적 한계에 기인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래집단의 영향으로 일탈하는 등 다양한 문제상황에 취약하다.

가출 청소년이 가해의 주체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가출팸을 구성한 후 음주, 흡연, 본드 흡입과 같은 약물을 섭취하거나, 돈이 떨어지는 경우 앵벌이, 퍽치기, 삥 뜯기, 아리랑치기, 소매치기, 절도, 차털이 등의 범죄에 빠지는 경우도 보도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가출 팸 전과 후의 비행점수 차이가 큰 문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밤에 친구 들과 오토바이를 타고 몰려다니는' 행위나 '소주방, 호프집, 유흥 주점에 가 본 경험'과 같은 지위비행에서부터, '이성친구와 성관계'와 같은 성적 비행, '아리랑치기(술취한 어른에게 돈이나 물건 뺏기)' 와 같은 폭력비행도 유의미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여성 가정 밖 청소년을 중심으로는 성착취가 지배적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실태조사(2016)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03명 중 87명(84.5%)이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의 가출경험은 매우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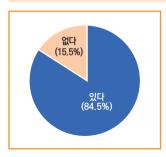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설문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 가출 청소년들이 잘 곳과 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숙식과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재워줍니다'를 통해 가해자 접촉하여 성범죄를 당하거나, 만남 앱 또는 지인 소개로 직접 성매매에 뛰어들기도 한다.

성매매 청소년 면담 자료에 따르면 가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자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조건만남을 시작하거나 남자친구가 성매매 모집책 담당이어서 그 남자친구에 의해 알선자에게 넘겨져서 협박과 강요로 성매매에 유입 되기도 했다.



[가출 경험]

(단위 : 명, %)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103	87 (84.5)	16 (15.5)
연령 🕌	만 13~14세	11	9 (81.8)	2 (18.2)
	만 15~16세	40	36 (90.0)	4 (10.0)
	만 17~18세	52	42 (80.8)	10 (19.2)
학교	학교다님	62	49 (79.0)	13 (21.0)
재학	학교 다니지않음	41	38 (92.7)	3 (7.3)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복수응답)]



[출체]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2014년,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16년, 2018년

○ 가출 청소년 시설 접근 취약성

가출한 모든 청소년이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남미애 외, 2012;김지연, 정소연, 2014)에서 조차 가출기간 중 잠을 잔 장소로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이 '친구나 아는 사람의 집(남자 44.8%, 여자 49.8%)'이라고 응답하였고, '쉼터'라는 응답은 10명 중 1명(10.4%,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쉼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대보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를 홍보의 부재에서 찾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 일반청소년 가운데 51.7%, 위기청소년의 27.9%가 청소년쉼터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 였고, 일반청소년의 47%, 위기청소년의 34.6%가 청소년쉼터를 알고는 있으나 위치, 이용방법을 모른다고 보고하였다(백혜정, 방은령, 2009;김지연, 정소연, 2014). 다른 요인으로는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에 있어서 상담복지센터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의 연계가 긴밀하지 않은 점, 쉼터별 서비스 제공 상황이 상이한 점. 예산 부족 등이 꼽혔다.

○ 사후관리 미진

지난 2020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청소년복지 지원법」일부개정법률인'이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것 처럼,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 당한다면 이후 해당 청소년들을 관리할 방법이 부재하여 다시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식으로 퇴소한 이후에도 마땅한 정착지원금 등이 나오지 않아 거주할 공간을 마련하거나 정착하기 어렵다. 2021년 2월 여성가족부 주최로 자립지원수당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5월 4일 최초로 자립지원 수당 지원을 도입하여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DB 구축과 실태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퇴소 전 자립계획수립 및 퇴소 청소년 사례관리에 따른 별도의 예산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당장 청소년 쉼터 예산도 적고 종사자들의 처우도 열악한 환경에서 퇴소 청소년을 관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 여성가족부 가정 밖 청소년 지원현황

시설명	지원내역
청소년 쉼터	 가출 청소년 조기발견을 통한 비행 및 범죄 유입 예방 가출 청소년 생활지원(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자문 지원, 학업지원, 진로탐색 및 훈련, 취업지원 등 보호와 자립을 지원
청소년자립지원관(6개소)	 주거안정 기반 사례관리 입소조건으로 근로활동과 그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관에 소액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일정률 이상 저축을 해야 함. 성남시청소년자립지원관 개관(2020. 02)
자립지원 수당 지원	- 1인당 월 30만원 씩 최장 36개월 동안 지급(2020.05.)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 '가출 청소년' → '가정 밖 청소년' 변경 추진



○ 경기도 가정 박 청소년 지원현황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

- ① 도지사는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 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
- 3 가축청소년 직업능력 개박 진로지도 등 자립지원
- 4. 가출청소년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
- 5. 가출청소년의 보호 등

제10조(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 설치 · 운영)

- ① 도지사는 청소년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청소년거점쉼터(이하 "거점쉼터"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거점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청소년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
- 2.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조사·연구·정책 제안
- 3.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 4. 유관기관·단체와 지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 5. 그 밖에 청소년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거점쉼터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점쉼터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청소년 쉼터 운영

: 현재 도내 청소년쉼터는 17개 시군에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성남시 가출청소년 지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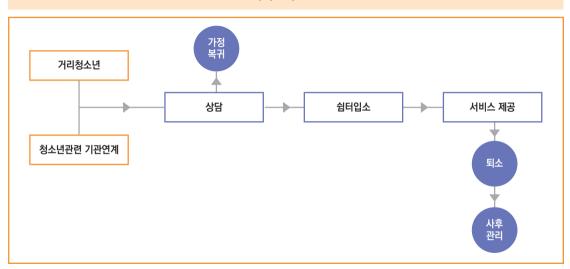
- 청소년쉼터
- : 가족해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9~24세) 누구나 이용 가능함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입소 기간	24시간~7일 이내	3개월 이내 ※ 3개월씩 2회 연장가능(최장 9월)	3년 이내 ※ 자립지원관이 없는 시도의 경우 필요시 1년 단위 지속 연장가능

- 성남시 소재 청소년 쉼터

쉼터명	유형	정 원	운영주체
성남시청소년일시쉼터	시(고정)	12	(사) 청소년이아름다운세상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15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성남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단기	15	(사) 청소년이아름다운세상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	중장기	10	N/A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	중장기	10	(사) 청소년이아름다운세상

서비스 구조도



연	번	제안명	제안내용	비고
1	1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신설	○ '가출청소년'에서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 가정 밖 청소년 대상 교육봉사로 봉사시간 대신 급여지급	4대 행복의회 (가결)



○ 타 지자체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 3.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
 -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
 -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1. 대학 장학금
 - 2. 주거 정착금 500만원
 - 3. 직업훈련비
- 4. 의료비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정착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교육 및 학습 지원금
 - 2. 자립 지원금
 - 3. 직업훈련비
- 4. 의료비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및 학습 지원금과 자립 지원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3. 점책 제안

○ 제안내용

- 가정 밖 청소년 정의를 통해 소년 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
-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지원대상 규정
-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금전적 자립지원 시행을 위한 단서 명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관리와 자립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시민을 말한다.
-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3.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 정한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쉼터, 상담센터 등을 의미한다.

제3조(기본 방향)

-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과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②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지원 대상)

- ①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대상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내의 가출 청소년 중 시설에 등록된 이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범위)

- 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1.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 검진, 의료 등 지원
- 2.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 3.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 4.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문화 복지 지원
- 5. 가정 밖 청소년의 직업훈련
- 6. 그 밖의 가정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규모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입법(정치)제안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

-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그 밖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자립과 회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 1.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2.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가정 밖 청소년 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청소년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 3. 성남시의회 의원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정 밖 청소년 중 성매매피해자 등 위기 청소년의 지원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를 당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등)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 1.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으로 지급받은 경우
 - 2. 지원금이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 3.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절한 경우
 - 4.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지급을 받은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연계·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기대효과

가정 밖 청소년의 회복과 자립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혁신특별위원회

김태연, 민소윤, 권희정, 이민하, 신가원 5명

1. 문제인식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운영 현황 및 성과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지난 2014년 제정된 성남시조례-제3070호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성남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여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으로 구성된 의회이다.
- 행복의회는 2015년 제1대 행복의회가 출범하여 '성남시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토크콘서트', '포럼' 등을 개최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의제를 선정, 현황 및 자료 조사 등의 정책연구 과정을 통해 직접 청소년 의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안을 발의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역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입법제안 활동을 추진하며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 서고 있다.















제5회 토크 콘서트

- 더불어 지난 4대부터는 '청소년 의원 선거' 제도를 도입하여 성남시 청소년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청소년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대표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그 결과 성남시조례-제3007호 '성남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 등 3건의 정책이 실제로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타 지차체 및 기관에 벤치마킹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자문 요청이 끊이지 않는 등 대한민국 청소년 참여 우수모델로 자리매김 하였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추진성과]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운영절차 및 내용]



예비의제 발굴

- 제안대회, 포럼, 토크 콘서트 운영 등을 통한 청소년 의견 수렴
- 청소년의원 선거 공약



정책연구

- TF팀 회의를 통한 현황 및 사례조사 등 정책과제 체계화
- 입법, 의회 운영 등 자문



입법제안

- 정책 검토 및 자문 등을 통한 실현 가능성 확인
- 시 해당 주무부서 및 시의회 의원, 행복의회 자문단 간담회 운영



정책반영

- 행복의회 본회의를 통한 정책결정(내부)
- 의원 및 집행부 발의 등을 통한 정책 반영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명칭의 한계: 정체성 혼란 및 모호성

- 하지만 이러한 활발한 활동과 우수한 성과에 비하여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행복의회라는 명칭 때문에 무슨 활동을 하는지, 어떤 단체인지 알리는데 정체성과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물론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명칭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정감가고 '행복'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보다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로 하는 단체인 만큼 전문적이고 공신력있는 정식 단체로써의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성남시청소년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시민과 청소년에게 보다 명확히 인식되고 행복의회를 알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바, 의회명 변경을 제안한다.



○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선거 도입에 따른 지속성 보장 및 조례 재정비

- 더불어 성남시 청소년 의원 선거를 도입하여 청소년의 투표로 선출됨에 따라 연임 규제 제한을 없애고, 전체적인 행복의회 조례 재정비를 통해 지역 청소년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의원의 활동 지속성을 보장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한다.

2. 현황 및 문제점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명칭의 하계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출신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행복의회라는 이름이 청소년을 대표하는 법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잘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무게감이 저하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어떤 단체인지 인식함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그래서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에서 '행복'을 빼고 성남시 청소년 의회라고 쓰는 것이 보다 전문적이고 공신력 있는 참여기구 활동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 저희가 의언들끼리 토론만하는 것도 아닌데, 대외적으로 다른 청소년 의회를 만나거나 할 때, 저희만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니까 청소년의회랑은 또 다른 동아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딱 들었을 때 '무까 다른거지?' 하는 혼란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복'의 의미도 너무 모호해서 '굳이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사실 궁극적으로 청소년의회가 청소년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직접적으로 명칭에 넣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혁신의회라고 이름을 짓지 않는 것 처럼요. 그래서 저희 이름을 '행복'을 빼고 그냥 성남시 청소년의회라고 쓰는게 활동하기에도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출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출신 의원 개별 인터뷰



" 저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에서 제 2대와 3대 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활동하면서 학교 친구들이나, 만나는 다른 참여 기구의 청소년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마다 성남시청소년 '행복'의회라고 이야기 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한결같았습니다. 항상 '행복'에 대해 되물었고, 친한 친구들의 경우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의회 모델의 청소년 참여 활동을 하면서 의회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의회는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무게감이 있어야 마땅한데, 이를 위해서는 '행복'을 빼고 성남시청소년의회라거나, 행복을 대체할 단어를 고려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출신 의원 개별 인터뷰



"행복의회는 이름 때문에 동아리 같은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법적 71구인데 정책이나 조례를 제안하면서 이름 때문에 피해를 본 적도 있거든요. 그냥 동아리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처럼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많아서, 특히 이름이 기존 청소년의회랑 다른 71구처럼 느껴져서 또래 청소년들이나 시의원분들한테 혼란을 준 적도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한 번에 알 수 없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다른 청소년의회처럼 행복을 빼고 성남시청소년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출처]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출신 의원 개별 인터뷰

○ 전국 청소년 의회 명칭 현황

- 전국에 청소년 의회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아동 등 참여 대상을 명시한 것 에는 차이가 있으나 모두 공통적으로 청소년 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공신력 있는 참여기구로써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

지자체명	청소년 의회 명칭	지자체명	청소년 의회 명칭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청소년의회	서울시 용산구	용산구청소년의회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청소년의회	서울시 광진구	광진구아동청소년의회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청소년의회	서울시 성북구	성북구어린이·청소년의회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청소년의회	서울시 강북구	강북구아동·청소년의회
경기도 안산시	안산청소년의회	서울시 도봉구	도봉구어린이청소년의회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어린이·청소년의회	서울시 은평구	은평구청소년의회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청소년의회	서울시 서대문구	서대문청소년의회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청소년의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구청소년의회
경상남도 양산시	양산시청소년의회	서울시 금천구	금천구청소년의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의회	서울시 동작구	동작구청소년의회
전라북도 군산시	군산시어린이·청소년의회	서울시 관악구	관악청소년자치의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구어린이·청소년의회	서울시 강동구	강동구청소년의회

3. 정책 제안

○ 제안내용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성남시청소년의회'로 명칭 변경
- :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로 하는 단체인 만큼 전문적이고 공신력있는 정식 단체로서 이미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성남시청소년의회'로 명칭 변경
- 청소년의원 연임 제한 해제
- : 의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현 조례 개정을 의원의 임기는 1년 이되, 선출된 의원의 연임기간은 규제 하지 않도록 변경
- 전체적인 조례 재정비
- : 행복의회 구성에 대한 세부 사항 재정비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국에 청소년 의회 현황을 삭펴보면 청소년 아동 등 참여 대상을 명시한 것에는 차이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조례제목개정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제목개정

성남시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구성)

- ① 성남시 청소년행복의회(이하 "행복의회"라 한다) 의원은 성남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연령이나 거주 지역 및 성별 등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 ② "청소년행복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삭제 2017. 3. 29.〉
- 2. "청소년 행복의회"란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거주중인 만 12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 ③ 행복의회 청소년의원 수는 40명 이내로 한다.

제2조(구성)

- ① 성남시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 의원은 성남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 또는 거주 및 활동 청소년으로 구성하고, 연령이나 거주 지역 및 성별 등을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세 개의 지역구로 안배하여 청소년들의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② "청소년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삭제 2017. 3. 29.〉
- 2. "청소년의회"란 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거주, 활동중인 만12세 ~ 만18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시의회에서 지방 의회 우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 ③ 청소년의회 의원 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제3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원 임기 및 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다

제4조(의장단 구성)

-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 ② 의장은 행복의회를 대표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장단 구성)

-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전체회의에서 선출한다.
- ② 의장은 <mark>청소년의회</mark>를 대표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 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회)

〈본조제목개정 2017. 3. 29.〉

① 행복의회는 필요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7. 3. 29.〉

②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u>분과위원회</u>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7. 3. 29.〉

제5조(상임위원회)

〈본조제목개정 2017. 3. 29.〉

① 청소년의회는 필요시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7. 3. 29.〉

②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mark>상임위원회</mark>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7. 3. 29.〉

제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행복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행복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차성으로 의결하다.
- ③ 회의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 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① <mark>청소년의회</mark>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mark>청소년의회</mark>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차성으로 의결하다.
- ③ 회의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 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운영기관)

시장은 행복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행복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2. 행복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규정)

행복의회의 세부 운영규정은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제7조(운영기관)

시장은 <mark>청소년의회</mark>의 원만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 기과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mark>청소년의회</mark>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2.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규정)

청소년의회의 세부 운영규정은 구성원이 자체적으로 의결하여 정한다.

4. 기대효과

- 성남시 청소년들이 '성남시청소년의회' 의 개념과 활동내용 등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
- 별도의 부가 설명 없이 청소년의회의 취지와 목적이 잘 드러나게 된다.
- 성남시 청소년 대표로서, 전문적이고 공신력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성남시 학교 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제정

보건의료 TFT [1팀]

이가희, 김서진, 김서현, 김태연, 신가원, 이민하. 황혜정. 허다인 8명

1. 문제인식

현재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로 우리는 감염병 예방, 건강증진과 같이 '건강'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다수가 모이는 시설 중 학교의 경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중점적인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 내청소년들이 의료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학교보건실'의 중요성은 매우 커졌다. 이와 함께 사회 계층 중에서도 '청소년'들의 현 건강 상태. 질병 예방 등 건강증진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이 늘어났다.

청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은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성남시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성남시' 중심 조례의 필요성

현재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과 같이 폭넓은 범위의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규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성남시'를 중심으로 하여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성남시 관내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및 규칙이 부족하다.

○ 청소년들의 주요 의료서비스 공간, '학교보건실'의 문제점

특히 의료서비스의 접근에 있어서 청소년들과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면서도, 많이 이용하는 주요시설인 '학교보건실'에 관하여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먼저, 학교보건실의 의약품 구입 및 투약에 있어서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만큼 의약품 구비 및 취급과 관련하여 부실하거나, 투약의 연령 금기를 지키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위생 상태와 관련해서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교보건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성남시 관내 청소년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실 시설, 용품 및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공정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예산지원을 통한 보건실 환경개선과 함께,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실태조사, 보건실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등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현황 및 문제점

○ 성남시 관내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의 부재

성남시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거의 경기도를 기준으로 한 포괄적인 범위로 정해져있다. 따라서 경기도 건강증진 조례로는 성남시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관련 조례가 존재하지만 개선하고 추가해야 할 부분이 존재하여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에 있어서 조례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하다.

○ 성남시 관내 학교보건실의 환경개선 필요성

학교보건실에서는 위생관리 혹은 약과 관련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문제사례로는 의약품 구입 및 투약에 있어서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만큼 학교 측은 의약품 취급에 주의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조례가 없어 실제로 의약품의 구비나, 투약 및 환경에 있어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부 학교들은 4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이 지난 약품을 보건실 캐비닛에 보관하거나 의료처치 도구를 담은 수레인 '드레싱카'에 비치하고 있고, 학교 보건 필수 시설 및 기구 9종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 등 여러 보건실 위생상태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 학교보건실에서 사용하는 약을 각 성분에 따라 '14세 이하 사용주의', '12세 미만 사용 금지' 등 연령 금기에 따라 투약해야 하지만 학교 내에서 이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보건실 물품 구비 부실 사례



충남 일부 학교의 보건실에 유효기간이 최대 2년 4개월 가량 지난 약품이 보관·비치돼 있거나 3년이 다 되도록 침구류 세탁을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령의 A중학교는 유효기간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2년 4개월이 지난 약품을 보건실 캐비닛에 보관하거나 의료처치 도구를 담은 수레인 '드레싱카'에 비치하고 있었다. 또 학교 보건 필수 시설 및 기구 9종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서천의 B중학교의 경우 사용기한이 2년 5개월이 지난 상처치료 약품 등 2종이 보건설에 보관비치돼 있는 것은 물론, 2014년 9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단 한 차례도 침구류 세탁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학교는 또 보건실에 각종 교과서와 악기, 배구공 등이 보관돼 있는 등 사실상 보건실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채 창고로 사용돼 왔다. 이밖에 청양의 C중학교는 보건실을 이전하면서 필수항목 50종 중 전용 약품 보관장·소독기·냉장고, 수도시설 및 세면대, 세족기, 순간 온수기 등 기본 설비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오 의원은 "학생들에게 처방하는 약이 변질됐을 경우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약의 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학교보건법에 학교 설립자는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를 갖추도록 했다"라며 "일부 학교의 경우 입법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학교보건 관리업무가 엉망이다"라고 질타했다.

[출처] :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 중 7곳은 법정 학교보건실 면적을 확보하지 않는 등 학생보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564개 초등학교의 보건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 379곳(67.2%)의 보건실은 면적기준에 미달했고 305곳(54.1%)은 침대 등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초중고교는 66m²(26평) 규모의 보건실과 간이침대, 체중계, 응급약품 등을 구비해야 한다.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교육청 관내 초등학교는 보건실 면적이 25~40m²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49곳 중 40곳(81.6%)이 기준에 미달했다. 이어 성동교육청(77.5%), 강서교육청(75.8%), 북부교육청(75.4%) 등이 기준 면적에 크게 모자랐고 남부교육청은 48.4%로 가장 낮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남교육청과 학생 유입이 많은 목동을 포함한 강서교육청 관내 학교는 교실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보건실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보건실 면적을 확대하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70803/8474176/1

⇒ 위 사례들과 같은 학교보건실의 물품 구비와 시설 관리의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남시는 '성남시 학교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내 학교보건실을 관리해야함.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학교보건실 시설 지원 사례)

세종시교육청은 2015년 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해 19개 학교에 1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다. 2016년에는 7개 학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에 한 곳당 1천만원씩, 7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성남시 관내 학교보건실에 대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

의약품 구입 및 투약 그리고 보건실 환경 관리에 있어서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만큼 학교마다 의약품 구비, 그리고 학교보건실의 환경이 제각각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필수는 있지만 권장은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각 학교의 보건 시설 유지를 통한 학교 내 청소년의 포괄적인 건강관리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교보건실에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아래의 물품들(권장 포함)을 최대한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

영 역	시설과 기구 및 용품명	규격	구분
	1. 사무용 책상·의자		필수
	2. 건강기록부 및 서류 보관장	시건장치 포함	"
	3. 약품 및 의료기구보관장	시건장치 포함	"
	4. 소독(멸균)기		"
•	5. 냉장고, 전자레인지(온장고)		"
	6. 전화기(착발신)		"
	7. 컴퓨터, 프린터기		"
	8. 온·습도계		"
	9. 가습기		"
1.	10. 수도시설 및 세면대(씽크대)		"
일반 시설	11. 냉·난방시설		"
및 기구	12. 순간온수기(온수설비)		"
	13. 물 끓이는 기구		"
	14. 보건게시판		"
	15. 페이퍼 타올 또는 핸드드라이어		"
	16. 세족기	샤워기 부착	권장
	17. 손전등		"
	18. 진공청소기		"
	19. 긴의자	3-4인용	"
	20. 공기청정기		"
	21. 문서파쇄기		"
2. 환자 안정용 기구	침대, 침구류 및 보관장, 칸막이(파티션), 보온기구(전기요 등)		필수
	1. 자동신장체중측정기		필수
	2.전기시력표, 눈가리개, 검사용지시봉	3미터(또는 5미터)	"
	3. 혈압계	크기별 커프 구비(소,중,대)	"
	4. 청진기	전문가용	"
3.	5. 펜라이트		"
건강 진단	6. 상담용 의자·탁자 및 진찰용 의자		"
및	7. 혈당측정기		"
상담용 기구	8. 검이경		"
	9. 체온계(디지털고막체온계)		"
	10. 비접촉식체온계		권장
	11. 확대경		"
	12. 신장계, 체중계, 줄자		"
•			



영 역	시설과 기구 및 용품명	규격	구분
	13. 색각검사표		"
	14. 신체검사용 청력계(순음청력계)	헤드폰사용	"
	15. 검안경, 비경		"
	16. 치과용 거울, 탐침		"
	1. Dressing set(거즈/스폰지캔, 포셉 등)		필수
	2. Dressing Cart		"
	3. 의료용 가위(밴드시저), 농반		"
	4. 처치대(진찰대)		"
	5. 들것	접이용	"
	6. 부목	규격별	"
4.	7. 목발	규격별 또는 조절용	"
응급 처치용	8. 경추보호대	조절용	"
기구	9. 산소포화도측정기		"
	10. 휴대용 응급처치가방		"
	11. 휠체어	하지거상형	"
	12. 냉·온 찜질기		"
	13. 수동식인공호흡기(Ambu-Bag)		"
	14. 켈리		권장
	15. 적외선치료기		"
5.	1. 조도계		권장
환경위생	2. 먼지측정기		"
검사용 기구	3. 소음계		"
	1. 성교육용 교구		필수
	2. 흡연예방교육용 도구		"
6. 보건 교육용	3. 심폐소생술 실습용 인형	피드백장치포함	"
기구	4.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
	5. 구강(치아) 모형		권장
	6. 기타 보건교육 교구		"
7. 기타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 등	5	권장

3. 점책 제안

○ 제안내용

- 성남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보건시설 유지를 위한 필요 경비 지원
-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성남시 학교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및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성남시 관내학교에 재학하는 학교청소년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 시설, 용품 및 서비스 제공함에 있어 효율적으로 공정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1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로 한다

제3조(보조기준액 제한)

성남시장은 성남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보건시설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시장이 각 학급 학교의 보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

- 1.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제2조와 별표에 따른 물품
- 2. '경기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 3. 보건실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 4. 학교보건법 제9조 2에 따른 보건교육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실 여건 개선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의 적정하고 균형 있는 지원을 위하여 성남시 보건실 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남시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성남시의회 의원
 - 2. 성남교육지원청 교육경비업무 담당국장
 - 3.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주로 의료서비스를 접하는 곳인 학교보건실을 〈성남시 학교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를 통해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한다.
- 청소년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된다.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학교보건실이 시설지원을 통해 더 발전하여, 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보다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 성남시 학교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하여 성남시 관내 청소년의 건강 및 의료에 관한 지원이 확대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청소년들의 의료서비스의 증진은 학업능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개정

보건의료 TFT [2팀]

이민하, 김서진, 김서현, 김태연, 신가원, 이가희, 황혜정, 허다인 8명

1. 문제인식

○ 소득에 따른 치과 의료 이용의 불평등

치과 의료 이용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분해(안은숙, 신호성) 논문에 따르면, 소득과 교육 등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집단의 경우 치과 의료 이용 필요도는 증가하지만 분석 결과 치과 의료 이용의 집중 지수 및 수평적 형평성 지수는 모두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불평등을 보였으며, 의료 필요도를 반영할 경우 불평등 정도는 약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의료 이용의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소득은 단일변수로는 가장 큰 기여도를 보였으며, 인구학적 요인보다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에 대한 치과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중학생의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어려움

중학생 시기가 치아우식이 더 심하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성남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3명을 대상으로 치아 관리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가 중학생 때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도 역시 많은 중학생들이 구강 건강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본래의 제도의 대상 확대를 통해 중학교 시기에 의무 구강검사가 한번 더 이루어 진다면, 본래의 조례가 제정된 취지대로 평생 구강 건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인터뷰 주요내용]

"초등학생 때는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지정된 병원에서 관리도 받고, 아프면 진료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치아가 쉽게 썩는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초등학생 때는 치아가 아프기 전에 검사 받고 하다 보니 관리가 잘 되는 편이였는데, 지금은 혼자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프서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치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때보다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걸 보면 저 혼자 관리하기에는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는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 구강 검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도 치과 가기 싫어서 말하지 않기도 하고, 나중에 가면 엄청 썩어 있어서 치료하느라 힘들었어요. "

2. 현황 및 문제점

○ 성남시 초등한생 치과주치의 사업 현황

- 구강질환 예방 효과가 높은 초등학생 4,5학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평생 구강건강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구강보건사업
- 사언내용
- · 대 상: 성남시 관내 72개교 초등학생 4.5학년 (초등학생4학년: 8.161 / 초등학생5학년: 8.195 통계청 2020.11.3. 기준)
- · 장 소: 참여 치과 의료기관
- · 세부내용
- ① 필수서비스: 구강검사, 구강위생검사 및 관리, 구강보건교육, 불소 바니쉬 도포
- ② 선택서비스: (구강상태에 따라 필요시) 치석제거, 치아홈 메우기, 방사선 파노라마 촬영
- ·비 용:연1회무료
- · 소요예산 : 1인당 4만원 편성

초등학생 4학년은 경기도에서 3억원을 편성하여 지원 초등학생 5학년은 성남시에서 3억원을 편성하여 지원

[출처] 성남시청 홈페이지

· 참여방법

[일반 참여방법]

- ① "덴티아이" 앱 접속 및 로그인
- ② 구강검진문진표 작성
- ③ 방문 희망하는 참여 치과 선정, 예약
- ④ 치과 방문 및 서비스 이용
- ⑤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은 수정구보건소 재능나눔 토요치과 연계 지원
- ※ 데EI0F0I

앱을 이용하여, 치과 병원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되어 구강검진결과를 맞춤형 예방리포트로 쉽고 빠르게 확인 가능하며, 서울·경기·성남· 부산·밀양·인천 치과주치의 참여

[코로나 상황 속 현 사업 진행 현황 : 치과주치의 온라인 서비스]

- ① 치아를 촬영해 전송
- ② 치아 표면의 세균막인 플러그를 검사하고,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치간, 잇몸 등 치아 구역별 검사 결과를 알려줌
- ③ 구강 건강과 위생 상태에 관해 치과주치의가 코멘트를 달고, 바른 칫솔질, 치실질 바른 식습관, 불소 이용법 등을 교육 (온라인 구강 관리 서비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대상자 들에게 신청 안내 문자와 함께 칫솔 치약 세트, 구강용 치면 착색제 등을 집으로 택배 발송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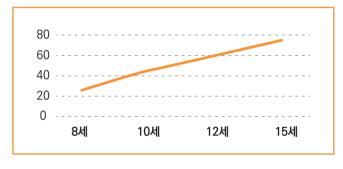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문제점

- 현재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초등학교 4, 5학년을 대상으로 영구치가 완성되는 12세 전후로 검진을 받는 시스템인데, 두 학년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이 사업의 목적인 평생 구강 건강의 기반을 다지기에 한계가 있다.
- 성남시는 가정에 따라 경제적인 소득 차이가 심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만을 벗어나 청소년들의 구강 상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기에 적용대상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 성남시 의회 제 217회 문화복지 위원회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적이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의료진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유치가 모두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인 4학년이 구강 건강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이며, 사업의대상으로 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가 제안되었다.

하지만 아래에 학술자료에 따르면 특히 중학교 2학년 시기에 경우 영구치 치열이 완성되며, 일생의 구강건강 기반을 조성하는 때라고 언급한다. 또한, 치아우식 경험자율은 8세에서 27.2%, 10세에서 46.2%이었고 12세에서 60.5%, 15세에서 74.6%로 나타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강건강은 오히려 나빠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 경험자율]



[출처] 중학생들의 구강 보건 인식이 구강 건강 상태와 구강 건강 행위에 미치는 영향, 조은숙 원광대학교 보건대학원 / 고등학생의 구강증상 인지 및 구강관리행태에 따른 치아우식경험, 남지역, 김혜진

⇒ 이에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인 초등학교 4~5학년 때에 1차 구강 검사를 실시하고, 영구치 치열이 완성되고 치아 우식이 심한 중학교 2학년 때 2차 구강검진을 진행하여 변화도를 측정하고,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3. 정책 제안

○ 제안내용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의 적용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청소년(15세)으로 확대

· 1차 구강검진 : 초등학교 4~5학년 · 2차 구강검진 : 중학교 2학년

· 사업 소유 예산

구분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지원기관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인구(명)	8,161	8,195	8,172
1인당 소요 예산(원)	40,000	40,000	40,000
총 소요 예산(원)	300,000,000	300,000,000	300,000,000 (예상)

- ⇒ 확대 지원하려는 대상인 중학교 2학년은 예산 추정 규모가 현행 4,5학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
- 적용대상이 청소년이므로 지원 대상 협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대표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관 기관도 참여하도록 하며 협의체 구성에 청소년 유관기관 대표 포함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개정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조례제목개정	조례제목개정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성남시 <mark>청소년</mark>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초등학생들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치의과학적	이 조례는 성남시 청소년들의 예방적이고 지속적인 치의과학적
구강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구강관리를 통하여 그들의 평생 구강건강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과주치의"란 등록된 초등학생에게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 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 2.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청소년"이란 9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2. "치과주치의"란 등록된 <mark>청소년</mark>에게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 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 3.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일정금액)를 말한다.

이번 (자차)제안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정책의 방향
- 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 3.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 병 의원의 관리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 계회옥 수립하여야 하다

- 1 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 정책의 방향
- 2. 청소년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 3. 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 치과 병 의원의 관리

제4조(지원대상)

- ①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성남시 관내 초등학생으로 운영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제3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② 지원대상은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 ① <mark>청소년</mark> 치과주치의사업의 지원 대상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성남시 관내 <mark>청소년</mark>으로 운영 기준은 매년 시장이 제3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② 지원대상은 성남교육지원청, <mark>청소년 유관기관</mark>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mark>청소년</mark>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관리 등)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관리 등)

시장은 <mark>청소년</mark> 치과주치의 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는 성남시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선정 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제7조(치과주치의 선정 및 진료범위)

청소년치과 주치의는 성남시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촬영), 구강 보건교육 등으로 한다.

제8조(의료비 신청)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 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보건 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료비 신청)

청소년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

-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 (이하 "협 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생략)
-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 2.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 3.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 국장
- 4. 학부모 대표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협의체의 구성·운영)

- ① 시정은 <mark>청소년</mark>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mark>청소년</mark> 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현행과 같음)
- 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 2. 치의학·의료 관련 교수 및 전문가
- 3. 성남교육지원청 교수학습 국장
- 4. 학부모 대표
- 5. 청소년 유관기관 대표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기능)

혐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장이 <mark>청소년</mark> 치과주치의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기대효과

- 기존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대상을 청소년으로 넓힘으로써 성남시 청소년의 평생 구강 건강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 가정 내 경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치과의료서비스접근에 대한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 성남시 청소년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를 시작으로 하여 앞으로 성남시의 청소년 복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됨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을 위한 체계적인 치과 의료시스템이 갖추어진 성남시로 거듭남을 통해 치과 의료증진 면에 있어 다른 지자체의 본보기가 됨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성남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청소년 교통비 TFT

조정훈, 유재석, 양다원, 고예진 4명

1. 문페인식

2019년 9월 28일 첫차부터 경기도 버스 요금이 인상되었다. 기존의 현금 900원, 교통카드 870원이였던 일반형 버스의 청소년 버스요금이 인상 이후 현금 1,100원, 교통카드 1,010원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번 버스요금 인상은 청소년의 경우 기존보다 현금 22.2%, 교통카드 16.1% 비율로 인상되었으며, 이는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로 구분되는 요금체계에서 청소년의 버스요금 인상률이 가장 높다.

[2019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표(시행시기: 2019, 9, 28.(토)]

구	н		교통	카드			현	금	
Т	正	현행	조정안	증감	조정률	현행	조정안	증감	조정률
	일반	1,250	1,450	200	16.0%	1,300	1,500	200	15.4%
일반형 버스	청소년	870	1,010	140	16.1%	1,100	1,100	200	22.2%
.—	어린이	630	730	100	15.9%	800	800	100	14.3%
	일반	2,050	2,450	400	19.5%	2,500	2,500	400	19.0%
좌석형 버스	청소년	1,520	1,820	300	19.7%	1,900	1,900	300	18.8%
	어린이	1,370	1,640	270	19.7%	1,700	1,700	300	21.4%
	일반	2,400	2,800	400	16.7%	2,900	2,900	400	16.0%
직행좌석형 버스	청소년	1,680	1,960	280	16.7%	2,000	2,000	200	11.1%
·	어린이	1,680	1,960	280	16.7%	2,000	2,000	300	17.6%
	일반	2,600	3,050	450	17.3%	3,100	3,100	400	14.8%
경기 순환버스	청소년	1,820	2,140	320	17.6%	2,200	2,200	300	15.8%
E	어린이	1,820	2,140	320	17.6%	2,200	2,200	300	15.8%

[출처] 경기도 버스 정보 시스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와 학원 등을 이동하다. 평일에 일반형 버스를 타고 등 하교 할 때와 학원을 왕복할 때 버스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계산해보면하루 4.040원, 주말을 제외 5일, 4주를 기준으로 한달에 80.800원에 비용이 든다.

1년이면, 969.600원, 중·고교를 재학하는 6년이면 5.817.600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중·고생 한달 평균 용돈이 4만 3천원이라는 금액에 비해 교통비로 많은 지출이 발생하고, 청소년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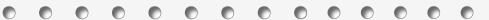


























"중고생 한달 평균 용돈은 4만 3.000원"

학생브랜드 엘리트가 1일부터 20여 일간 엘리트의 중 고등학생 및 학부모 온라인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용돈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한 중·고등학생의 한 달 평균 용돈은 4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는 전국 중·고등학생 326명, 학부모 98명이 참여했다.

◆학생의 75%가 정기적으로 용돈 받아, 평균 용돈은 4만3000원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는가"에 대한 설문에 학생의 75%가 "그렇다"고 대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용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을 받는 주기는 매달이 57%, 매주가 34%로 대부분 월이나 주 단위로 용돈을 관리하고 있었다.

한달 용돈을 묻는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의 평균은 약 4만3000원이었으며, 여기에는 식비·교통비·준비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식비나 교통비 등은 이용 여부에 차이가 있어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출처] : 중앙일보 - MT교육 정도원기자

(https://news.joins.com/article/11928646#none)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지원금액이 미비하고 실효성이 떨어져 성남시만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3. 현활 및 문제점

○ 기흐무제

현재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생기고 있다. 환경문제가 생기는 요인은 많지만 크게 쓰레기 무단투기, 이산화탄소 등 자동차배기가스,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오염 등등이 있다. 하지만 이중 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으며 개선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문제 중 하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타고 다니는 자동차 탄소배출이 있다

아래 통계를 보면 기후변화에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개인 자가용을 줄이고 버스 타는 것을 장려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줄이고 환경보호에 기여해야한다.

[온실가스별 기후변화 기여도] (단위: %)



[표1.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단위: 백만톤 CO,eq.) [그림1.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량 및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출처] 다나와 자동차 http://auto.danawa.com/news/?Tab=F5&Work=detail&no=4358616

○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정책 vs 경기도 버스회사의 버스비 인상

-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7월부터 버스업체를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노동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 버스업체는 그 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무제한 근로가 허용되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대규모 운수종사자 충원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업계는 2018년 16.4%, 2019년 10.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급증한 상황에서 추가 인력채용 여력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인상하는 이유

서울·인천은 이미 준공영제 도입해 52시간제를 시행중으로 인상요인 없다. 이에 반해 경기도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운영, 인력충원에 따른 비용을 전적으로 업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며 재원이 제때 확보되지 않으면 버스운행이 22.8% 감축 돼 노선이 폐지되거나 운행횟수가 줄어들고, 노-사 갈등과 파업 등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 움에 따라 요금인상 불가피하다.

[출처] 경기도뉴스포털

⇒ 이렇듯 대규모 운행감축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 최소화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서울·인천과 달리 경기도만 인상하고, 청소년의 인상률이 가장 높은 현 상황에서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현 버스비 지원 정책 사례

- 경기도 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황

지자체명	지원유무	지자체명	지원유무	지자체명	지원유무	지자체명	지원유무
수원	Χ	안양	Χ	이천	Χ	여주	Х
고양	Χ	파주	Χ	오산	Χ	양평	Χ
용인	Χ	시흥	Χ	하남	Χ	과천	Χ
성남	Χ	김포	Χ	구리	Χ	가평	Χ
부천	Χ	광명	Χ	안성	Χ	연천	Χ
안산	Χ	광주	Χ	포천	Χ	동두천	Χ
화성	0	군포	Χ	의왕	Χ	남양주	Χ
						의정부	Χ

- 경기도 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현황

사업목적	-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금액	- 지원비율 : 신청자가 등록한 교통카드 번호로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확인 하여 총 이용금액에 나이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 만13~18세 : 총 이용금액 × 30% · 만19~23세 : 총 이용금액 × 15% - 반기별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면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만13세는 부모님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을 이용한 청소년 (환승 구간 중 경기 대중교통이 포함되면 전체교통비를 이용금액으로 인정)
제외대상	 청소년 교통비는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시 다른 정부 지원금 수급에 제한 및 자격 탈락이 있을 수 있음.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등록서류	- 공인인증서:신청하시는 청소년의 공인인증서나 부모님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지역화폐:만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일반형 버스 기준 청소년의 버스요금은 카드 1,010원, 현금 1,100원이다. 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하루에 최소 왕복 요금은 2,020원이며, 5일, 4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달 사용 금액은 40,400원이며, 이 경우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120원이다.
- ⇒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좋으나 **이용금액에 30%의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청소년들이 지급받는 실제 금액은** 매우 적어, 교통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형식과 허울만 있는 제도에 그치고 있다.

- 화성시 무상교통 『세이브 버스(Save Bus)』: 청소년

사업목적	 화성시민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으로 교통부분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 교통 정책 교통약자까지 언제 어디서나 누리는 보편적 이동권 보호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 올해 11월부터 청소년을 시작으로 대상자 단계적 확대 검토
지원대상	- 1단계(2020년 11월 시행) : 화성시민 만 7~18세 이하 - 2단계 : 19~23세, 65세 이상 확대시행 검토 - 3단계 : 2022년 지원대상 점진적 확대 검토
지원금액	- 매월 화성시 관내 통행 목적의 시내·마을버스 이용요금
지원방법	- 화성시 무상교통 전용카드 충전 사용 ⇒ 익월(분기) 정산 후 현금(계좌) 지급 · 월(분기)별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비용을 정산, 검증 후 대상자 계좌 지급
신청자격	- 대상자 연령을 일단위 기준
지원범위	- 화성시 관내통행 목적의 시내 마을버스 이용요금 지원 (승하차 정류소 기준이며 관외통행과 수도권 환승 할인은 제외)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 화성시 무상교통사업은 중복 지원 불가 화성시 무상교통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중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 선택 (중복 신청 불가)
신청절차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부모·세대주)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 (https://savebus.hscity.go.kr) - 무상교통(전용카드) 신청 - 전용교통카드 등록 및 사용 - 배월(분기)교통비 정산 - 교통비 지급

- 화성시의 경우 청소년의 **버스 이용요금 전액을 지원**하며, **계좌로 입금**되어 정산된 지원금을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과 더불어 친환경 대중교통정책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며, 이후 대상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더욱 폭넓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 ⇒ 따라서 청소년의 교통비 절감 및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화성시의 청소년 교통비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교통비 지원 금액은 늘리되, 이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등의 보완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정책 제안

○ 제안내용

- 만 12세 이상 만19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등·하교시간에 대중교통을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전액 지원

「성남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 따라 성남시 내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계의 경제적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남사랑상품권"이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 설치」제2조 제4호에 따른 유가 증권을 말한다.
- 2. "통학 교통비"란 청소년들의 경제적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만 12세 이상 만 19세 미만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에 대하여 버스비에 한하여 전액 지원한다.

제4조(지원 내용)

- 1. 청소년의 등·하교 시간은 6시 30분에서 9시, 15시에서 19시로 지정한다.
- 2. 청소년 교통비의 1회 지원 기간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4회 지급한다.
- 3. 조례에서 정한 등 하교 시간에 버스를 이용한 청소년에 한하여 버스비를 전액 지원한다.
- 4. 성남시장은 분기별로 "성남사랑상품권" 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 ① 시장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지원액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 2. 지원 대상과 실태 파악 관련 사항
 - 3. 지원액
 - 4. 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지급 방법)

- 1. 지원 등·하교시간에 버스를 탑승한 청소년들에 한하여 지원을 한다.
- 2. 교통비 지원 지급 방법은 "성남사랑상품권" 으로 지급을 한다.

제7조(지워중지 및 화수 조치)

- 1. 지원 대상자가 교통비 지원을 더 받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 기관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그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교통비 지워은 중지한다
- 2. 지원 대상자가 사망을 한 경우 그 지원 대상자 에게 지원 되어야 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원을 중단한다.
- 3.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성남사랑상품권" 을 수령할 경우 "성남사랑상품권" 은 회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지원 대상자가 지원기관에 실수로 지원금액 보다 많은 금액에 "성남사랑상품권"을 지원 받을 경우 원래 지원 금액이 아닌 추가된 지원 금액을 지원기관에 알리고 환수해야 한다.
- 5.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로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형사고발
- 6.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대여를 해주거나 부정 사용한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청소년이 느끼는 부담감을 줄여준다.
- 대중교통을 장려함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 청소년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성남시 청소년 심리검사 지원 조례」제정

청소년 심리 TFT

이주워 1명

1. 문제인식

○ 청소년들의 심리와 감정의 무관심 증가

- 통계청의 2018, 2020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소년의 3분의 1은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감 등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의 인식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방관하여 극심한 우울과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 2018년 청소년(9~24세)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2천여 명이며,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안전사고, 악성신생물(암) 순으로 나타남.
- 2019년 청소년 고민 상담유형은 정보제공(18.2%), 정신건강(18.1%), 대인관계(16.6%), 학업·진로 (12.3%) 순임.

[출처] : 통계청 2020 청소년 통계

[청소년(9~24세) 사망원인]



[**스트레스 인지율(2019년)**] (단위: %)



[**우울감 경험률(2019년)**] (단위: %)



[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 청소년 심리 지원의 신뢰성과 안전성 필요

-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학교의 상담실을 통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클래스,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에서 위탁 운영하는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 등이 현재 존재한다.

하지만 위클래스의 경우, 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어 비밀보장이 어렵다는 점과 1388의 경우,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져 접근성이 좋지만 전문적인 상담이 힘든 부분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2021년 2월 11일에 진행된, 학교 상담실 이용자와의 인터뷰 내용]

" 중학교 때 심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다고 생각해서 고민 끝에 학교 상담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상담사 선생님께서는 오히려 진로나 입시 이야기만 하셨다. 그 이후로 신뢰감이 떨어졌고, 주위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이미 다들 상담실을 신로하지 않는다고 했다."

[2021년 2월 12일에 진행된,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1388 이용자와의 인터뷰 내용]

"한 때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어서 1388 카톡을 통해 상담원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상담원은 그저 "친구가 힘들었겠어요."만 반복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짜증만 늘어났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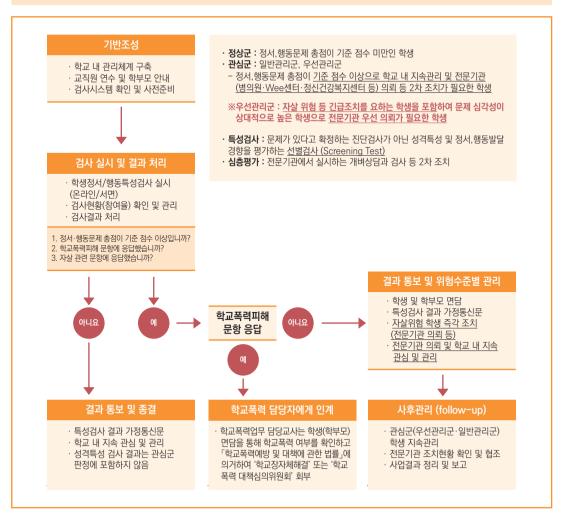
- 학교에서는 Holland 진로적성탐색검사, 한국형 MI 다중지능검사, 한국형 RIASEC 진로탐색검사 등을 시행하여 대부분 진로와 학업, 인성 위주의 검사를 자주 진행하고 중요하게 다룬다. 반면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특정 학년 대상으로만, 지정된 기간에만,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심적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드러난다.



구분	내용
Holland 진로적성탐색검사	 6개의 직업적 성격유형을 측정하고, 측정된 진로유형(성격유형)에 따라 전공학과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검사 직업사회 경험이 적고 학업성적이 낮거나 진로성숙이 낮은 학생들에게 능력적성검사나 직업흥미검사들이 효과적인 진로적성을 찾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극복
한국형 MI 다중지능 검사	· 검사하는 지능으로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시각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자연지능, 자기이해지능, 대인관계지능 · 학생 자신의 강점영역과 약점영역을 확인함을 통해 자기 이해 및 진학, 진로 탐색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한국형 RIASEC 진로탐색검사	· 6개 유형의 흥미, 적성, 가치, 직업영역에 대한 선호도를 검사

[출체] 휴노 스쿨온 초중고 표준화 심리검사 서비스, 제일교육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리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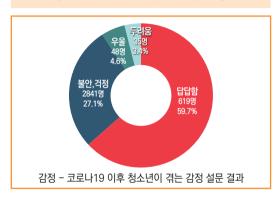
2. 현황 및 문제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

-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생활 패턴이 바뀌고 외출이 제한되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코로나19와 우울감을 합성한 'COVID 블루(Corona Blue)'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는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늘어났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2020 청소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한도희 백석대 교수, 김윤나 서울사이버대 교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1,055명을 대상으로 2020년 7월 1~21일 사이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결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6.41점(10점 척도)에서 이후 4.14점으로 2.27점 하락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학생들이 가진 감정은 답답함(59.7%), 불안과 걱정(27.1%),우울함(4.6%), 두려움(3.4%) 등 부정적인 감정이 컸다.

[출처] 한국청소년재단, 『청소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2020

[코로나로 겪는 가장 큰 감정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전, 후의 삶의 만족도]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서 실시한 우울·위축 문제 상담은 30,983건으로 전년도 17,120건 시행된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우울·불안, 충동·분노조절 문제에 대한 상담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8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해 및 자살 문제에 대한 상담은 6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9월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 현황]

구분	우울·위축	강박·불안	충동·분노조절	자해	자살문제
2019년 3~9월	17,120	7,338	952	1,562	1,660
2020년 3~9월	30,983	14,983	1,211	2,176	3,292

[출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 심리 치료의 부정적 인식과 회피율 증가

- 우리나라는 심리 치료, 정신과 진료 등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어도 진료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심리 치료를 받기를 꺼려한다. 이는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과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정신질환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평생 살아오며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와 상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2.20%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에서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의 국가별 비교 (한국:평생. 그 외:12개월)] (단위 : %)



[출처] 보건복지부 삼성서울병원 2016년도 정신질환실태조사



한국에서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와 급속한 산업화로 자살률이 치솟고 있지만, 전문적인 정신·심리 상담 치료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한국에서는 매일 30여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데, 한국의 인구대비 자살률은 미국의 3배 수준이고, 지난 10년 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 만나 동반 자살을 하는 현상도 크게 늘었다. 최근 몇 주간 대학총장, 아이돌 그룹 리더, 스포츠뉴스 아나운서, 축구선수, 대학생, 교수 등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한국에서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의 자살은 일상사가 되었을 정도이다. 자살의 80% ~ 90%는 우울증의 결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하지만, 최신 기술과 유행의 '얼리 어답터'인 한국에서 유독 서구식 상담 치료만큼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출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 청소년의 심리적인 문제를 대처하지 못했을 때의 발생하는 문제점

- 한국자살예방협회의 연구 자료를 보면 전체 자살자의 약 30%는 우울증 때문에, 50%는 신체적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성적 문제 등 개인적인 문제로, 나머지 20%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심리적 문제를 대처하지 못하면 자살 충동, 더 나아가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

[출처] 우울증과 자살-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 우울과 불안이 지속된다면 일상적인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더 나아가 극단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도 있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청소년 우울증은 수면, 식사, 신체, 사고방식,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몇 달 또는 몇 년간 증상이 계속되기도하고 또 재발이 잘 되기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는 조울증상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게 되거나 심하면 자살에까지 이를 수도 있게 되는 무서운 병이다.

청소년 우울증 환자들의 많은 경우에 주로 몸이 여기저기 아픈 증상만 나오는 수도 있어 다른 과에서 필요없이 장기간 검사나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증상에는 소화불량, 두통 등의 다양한 부위의 통증, 목과 가슴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변비 및 설사. 성욕감퇴 등이 종종 나타난다.

청소년 우울증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증상이 심한 주요 청소년 우울증과 증상이 상대적으로 덜 심한 청소년 우울증인 감정부전장애로 나눌 수 있는데 주요 우울증은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상태로서 자살사고, 환청, 망상 등을 보인다.

또한, 보통의 청소년 우울증과는 달리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고 많이 먹고 몸이 천근같이 무겁고 다른사람의 태도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비전형 청소년 우울증도 있고 계절에 따라 증상이 심해지는 청소년 우울증도 있다.

[출처] 공공보건포털 G-health - 자살까지 이어지는 '청소년 우울증'…해결법은?

○ 국내·외 청소년 심리 상담 정책 및 제도 사례

- 독일 학교심리서비스 기관 (Schulpsychologischer Dienst) / 독일의 김나지움
- · 학교상담사가 각 학교당 2명이 존재
- · 초기 면접 상담 실시
- · 정신분석, 가족상담, 행동치료, 인지치료, 게슈탈트 상담, 학습상담 등

[출처] 독일의 학교상담시스템 - Wee센터



독일의 한 초등학교 2학년인 A학생은 수업시간에 ADHD 학생처럼 행동하였다. 그래서 담임교사는 학부모 상담을 요청했는데, A학생의 아버지는 학생의 문제행동을 담임교사의 문제로 보고 담임 교체를 학교당국에 요구했다. 담임교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을 학교심리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였다. 학교심리서비스 기관에서는 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장면에서 A학생을 직접 관찰했다. 그리고 부모의 동의 하에 A학생을 대상으로 ADHD 검사를실시했다. 그 결과, 이 학생은 담임교사때문이 아니라 본인 자신이 ADHD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판정이 나왔다. 따라서학부모가 원하는 담임 교체를 할 필요가 없었으나, 담임교사가 그동안 아버지의 부당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해당 학생과도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생의 복지 차원에서 학급담임을 교체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학생에게는 ADHD 치료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와 약물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출처] 홍종관 대구교대 교육학과 교수(한국학교상담학회 회장)



3. 점책 제안

○ 제안내용

- 성남시 청소년 심리 검사 비용 지원 대상 확대
- · 심리/정서 검사에 해당하는 MMPI-2/A, HTP, SCT, KFD 등 최대 16만원의 비용이 드는 심리검사를 시에서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해준다
- · 성남시 청소년 심리검사 비용 지원 제도의 홍보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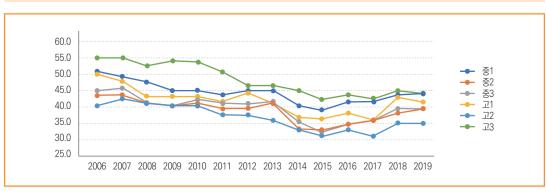
	검사명	소요시간	내용	검사료	비고
종합심리검사		3시간 이상	지능, 인지, 정서, 성격 등 심리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검사입니다. - 청소년 : K-WISC-IV, K-WAIS-IV, HTP,KFD, SCT, BGT, Rorschach, MMPI 등 - 학부모 : MMPI2, SCT, CBCL 등 ※ 검사 종류는 검사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60,000	신규 상담사례 신청가능
11=27.11		1시간 30분 이상	인지 능력을 중심으로 심리상태, 성격 등을 탐색하는 검사입니다.	40,000	
	다면적 인성검사		심리상태, 스트레스의 정도, 적응수준의 정도를 파악하여 보다 심중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검사입니다. (MMPI-A, MMPI-2)	20,000	
기	성격 유형검사		개인마다 타고난 심리적 경향과 그 경향이 지니는 성격의 역동을 알아내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도록 돕는 검사입니다. (MBTI, MMTIC)		본 센터 내담자에
기 타 검 사	진로검사	1시간	자신의 성격, 능력, 유능감, 직업적 흥미를 알아봄으로서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 는 검사입니다. (Holland 진로발달, 탐색검사)	10,000	한해 개별 심리검사 가능
	학습검사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동기, 학습 태도, 심리적 요인을 이해하는 검사입니다. (U&I 학습유형검사)		
	기질검사		자신의 성격 특성 및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JTCI, TCI)		

[출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심리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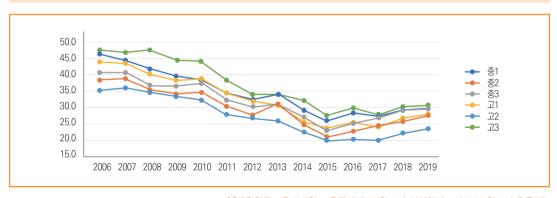
- 심리 상담이나 검사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 불필요 사실 강조
- · 의료법 제15조 제1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에 따르면 청소년 스스로 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기관이나 병원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보호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유롭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한다.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대상 범위 및 실시기간 확대
- ·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과 스트레스 인지율을 학년별로 분석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015년 21.0%에서 2016년 22.7%, 2017년 24.4%, 2018년 25.7%, 2019년 27.7%로 전체 학년 중 가장 크게 늘었다.
- ·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스트레스 인지율 또한 2015년 38.7%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19년에는 43.2%를 기록하여 4년 연속 증가했다.

⇒ 따라서 현재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대상인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뿐만 아니라 전원의 심리검사를 학교에서 공통으로 진행하여 검사결과에 따른 지원을 연계한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정한 실시기간 외 청소년이 원하는 기간에 언제든지 유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꿈드림, 성남시청소년재단 등 청소년 유관기관을 이용하여 같은 지원을 받는다.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 (2006~2019)]



[출체]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청소년 건강행태조사로 본 청소년 우울감'



『성남시 청소년 심리검사 지원 조례』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심리검사를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이란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심리적 문제"란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심리적 혼란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심리 문제를 예방·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성남시민은 시장과 교육장이 추진하는 청소년의 심리 상담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소년 심리 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심리 문제 예방의 목표 및 추진방향
- 2. 심리 문제 예방에 관한 시책
- 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 4. 심리 문제의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홍보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 상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심리상담. 검사 비용 전체 지원
- 2. 심리 검사를 위한 교내, 청소년 유관기관 프로그램 진행
- 3. 심리적 문제에 관한 실태조사
- 4.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호자의 동의 불필요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엄수) 청소년의 심리 검사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 기대효과

- 청소년의 우울감, 불안감 등의 심리적 문제 해결
- 올바른 심리치료나 상담, 검사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여 청소년의 우울감을 감소시키고 자살률을 점차 낮춘다.
- 심리검사 및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
- 청소년 심리 지원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충
- 행복감을 느끼고 자아 정체성을 올바르게 탐색하는 청소년기를 형성

Seongnam City Youth Happiness Council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입법(정책)제안

「성남시 청소년 예산 검토 권한 부여에 관한 제언」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유재석, 김영중, 이가희, 양다원, 정규연, 황혜정 6명

1. 문제인식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역할 및 권한의 한계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성남시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여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성남시조례-제2812호 '성남시 청소년 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5년 제1대를 시작으로 현재 5대 의회가 활동하고 있다.

특별히 지난 4대 부터는 '청소년 의원 선거' 제도를 도입하여 성남시 청소년들의 직접선거를 통해 청소년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대표성을 보장하고 의제발굴, 정책연구, 입법제안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논의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기에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입법제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 제안하는 정책이 조례로 반영되기에는 오랜 시간과 과정이 걸리며, 1년이라는 임기의 의정활동 중에 반영되기에 한계가 있으며 제안한 정책들의 피드백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의 참여 보장을 위해 실제 의회를 모델로 하여 청소년 의회를 구성 하였음에도. 이에 부합하는 권한과 역할은 부족하다.

○ 청소년 관련 예산을 청소년이 심의해야 할 필요성

현재 성남시의 청소년 관련 예산은 성남시 집행부에서 편성하여 성남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으로 편성된다.



정책을 수립하고 전개하는데에 당사자의 의견수렴은 가장 중요하며, 필요한 단계이다. 하지만 어느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책사업의 적용 대상인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이 전해지고, 반영되는 절차와 과정은 부재하다.

따라서 성남시 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과정에서 행복의회에게 심의 권한을 부여하여 청소년 당사자로써, 또 성남시 청소년을 대표로써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에 청소년의 생각과 목소리가 전할 수 있도록 역할 부여가 필요하다.

2 현할 및 뮤데저

○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관련 예산 편성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제안과 반영

지난 2~3대 행복의회에서는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 편성의 청소년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첫걸음으로 「지방재정법」 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예산 편성은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교육·청소년 부문 제안사업 심사 등의 청소년 참여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단순히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시 주무부서 및 성남시의회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한 정책제안 활동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18년 10월 29일 성남시조례-제3212호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 안에는제26 조(청소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2년 후 우리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 분야 예산에서도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행복의회에 성남시 청소년 예산 심의 권한 부여를 통해 선도적인 청소년 참여 모델로 앞장 서 있는 성남시가 한 발자국 더 진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안의 정책 반영 과정]











2018. 8. 8. 성남시청 예산법무과 정책제안서 전달





○ 청소년 대상 국가 재정 및 예산 편성 등의 교육에 대한 움직임

지난 10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이 마련한 정책을 실제 국가 정책에 입안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회의,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꿈드림센터' 등에 재정배움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정책 제안 단계부터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직접 생각해 보는 등 체험을 통해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의 재정역량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며 정부 단위의 정책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청소년에게도 국가재정 가르치자 :... 여가부-재정정보원 협약체결]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청소년에게도 국가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고를 길러주기 위해 손을 맞잡고 교육 기회를 마련한다

여가부는 오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재정정보원과 '청소년을 위한 재정역량 성장협약'을 체결한다. 양측은 여가부가 청소년들이 마련한 정책을 실제 국가 정책에 입안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특별회의', 학교밖청소년 '꿈드림센터' 등에 재정배움 콘텐츠를 지원한다.

청소년 재정교육을 위한 지도자 직무교육을 지원하고, 청소년특별회의와 국민참여예산제 연계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청소년들이 지역과 일상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의 콘텐츠를 보고 활동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심의 절차에 행복의회 참여를 통한 가능성

올해 5대부터는 '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제안을 넘어 예산심의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 시작으로 2021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 편성과정에서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예산심의 단계를 추가하여 청소년 사업 부분의 정책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먼저 예산의 구조 및 수립과정 등 재단 예산담당부서 팀장님의 전문교육을 받고, 이를 기반으로 1차적으로 소속 지역구별 해당수련시설의 청소년 사업 예산을 심의하였고, 이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복의회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심의된 내용을 해당 시설에 전달하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의견을 제출받았다. 그 결과 <u>반영 4건, 일부반영 2건</u>의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처음 진행된 시도였으나, 명백히 청소년이 주도하고 검토함으로서 객관적, 사회적으로 예산 수립은 성인(어른)들이 도맡아한다는 편견을 깬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예산편성에 관한 사고와 책임감, 역량을 갖췄으며,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계기가 되었다. 또한 수혜 대상자인 청소년의 입장과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처럼 성남시의 청소년 관련 예산과정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자료제공이 된다면 행복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청소년 정책 수립 및 운영의 기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정당성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는 2020년 4월 1일 ~ 4월 24일 (1차 서류접수) ⇒ 2020년 5월 9일 (2차 면접심사) ⇒ 2020년 5월 16일 ~ 6월 25일 (3차 청소년선거) 를 통해서 선출된 성남시 청소년의 대표이다. 의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합의기관이며, 법률의 제정, 예산의 심의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성남시의회와 마찬가지로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또한 성남시 내의 청소년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청소년 의회인 만큼 성남시 청소년 예산 심의 권한을 행복의회에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예산 편성을 이룰 수 있다.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선출 절차]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및 오리엔테이션

3차 청소년 선거

최종 당선자 공고

- 선거기간 : 6. 19.(금) ~ 7. 8.(수), 20일간
- 선 거 권 : 만9세 ~ 24세 청소년(선거 시작일 기준 1995, 6, 20, ~ 2011, 6, 19, 출생자)
- 선출인원 : 성남시 청소년 의원 32명
- 총 참여인원 : **청소년 3.208명**
- 투표방법 : 온라인전자투표시스템 접속 ⇒ 투표하기 클릭 ⇒ 본인인증 ⇒ 투표 (지역구별 2표씩, 총 6표) ⇒
 - 투표완료 (http://www.snyouth.or.kr/youthcouncil)











○ 최종 당선자: 35명(연임 포함)

· 권역별: 수정구 9명, 중원구 10명, 분당구 16명

· 교급별 : 중등 11명, 고등 24명· 성 별 : 남 8명, 여 27명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35명	• 연임 3명	수정구 중원구 9명 8명 분당구 15명					

최종 당선자 구성							
수?	수정구		중원구		당구		
9	명	10)명	16	6명		
중등	고등	중등	고등	중등	고등		
4	5	3	7	4	12		
남	여	남	여	남	여		
3	6	3	7	2	14		

○ 해외 청소년 예산 심의 사례



[오리간 주 포틀랜드 시의 커뮤니티 예산 검토위원회]

매년 포틀랜드시의 교육위원회는 연간 예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커뮤니티 예산 검토위원회인 (CBRC)를 임명을 한다. 학생 구성원과 자원 봉사 위원으로 구성된 CBRC는 교육감의 제안된 예산과 학생 관련 사업의 기타 예산 문제에 대해 검토와 평가하고, 이를 이사회에 권고하는 역할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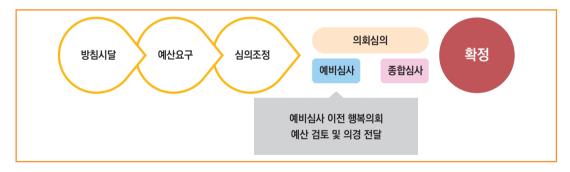
[출처] : CBRC 홈페이지

(https://www.pps.net/Page/14446#:~:text=The%20CBRC%20reviews%2C%20evaluates%2C%20and,of%20Local%20Option%20Levy%20funds.)

3. 점책 제안

○ 제안내용

- 예산 및 청소년 정책사업 관련 전문교육 실시
- · 성남시 예산 담당부서 및 청소년 담당부서의 전문교육 실시
- · 예산재정과 : 예산의 구조 및 수립과정 등
- · 교육청소년과 : 청소년 정책 사업 안내 등
- 성남시 청소년 관련 예산 심의 권한 부여
- · 지방자치단체(성남시)의 예산편성 절차 중 '<mark>의회심의</mark>'과정의 소관 상임위원회'예비심사'이전에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의 성남시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심의 과정 추가
- ·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 이전에 행복의회 참여 및 검토의견 전달



4. 기대효과

- 성남시의 청소년 관련 정책 조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청소년 관련 정책에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인식 제고
-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청소년 정책 관련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청소년의 권익 증진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유박언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유발언(1)

「청소년 주**개권 보장에** 관한 정책 제안」

판교고등학교

양다원 의원

여러분들은 혹시 주거권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주거권이란,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재, 다수의 주거정책에는 '청소년'이라는 대상이 누락되어있으며, '청소년 정책'에는 주거와 관련된 사항이 항상 부재합니다.

탈가정 청소년,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이를 위한 적절한 청소년 대상의 주거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혹은 가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보호시설에서 성장하게 된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청소년'이 되어 사회에 강제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청소년을 부모나 보호자에게 의탁된 존재가 아닌 독자적인 하나의 개인으로서 보아, 주거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주거위기의 유일한 해결책인 청소년 쉼터와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한 동안만 거주가 가능하며, 이러한 거주기간의 제한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가정 청소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바로 조건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자립지원단의 '2016년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시'에 따르면 탈가정 청소년들 중 보호종료 후 자립을 하려고 할 때 겪는 문제점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31.1%)과 주거문제 (24.2%)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탈가정청소년의 수는 27만명으로 추정되며, 1년간 약 3만명의 청소년만이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대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여 탈가정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성남시에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의 지원 대상자에 '주거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포함시키고, 이들을 위해 '성남시 주거복지센터'에 청소년 부서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주거권 보장의 의무를 지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청소년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이를 토대로 주거지원 정보 제공, 지원주택 등의 다양한 주거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성남시 내에서 청소년의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정착하는데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탈가정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를 보는 부정적인 편견이 사라지고, 청소년들을 하나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 또한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정착하는 첫 단계를 지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자유발언(2)

「우리는 오늘을 여는 주인공, 청소년 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고등학교

신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5대 행복의회 청소년 의원 신가원입니다.

행복의회에서는 임기 초반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단 대표이사님, 시의원 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올해 논의할 안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보통은 의장단, 윤리위원장 그리고 자원하는 의원에 한하여 참여자를 구성하여 만남을 가집니다. 저는 자원한 의원이었고, 4대와 마찬가지로 TFT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제안사항을 PR하기 위해 참여를 결심했죠. 그때 당시 의장님과 저희는 간단한 티타임을 가지면서 행복의회 현황 보고 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는 중, 남녀 성별에 관한 이야기가 언급되었고, 특정 성별을 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과 상황 속 불편했던 저에 대한 기억이 뚜렷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그의 저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행동의 윤리에 대해 주장하며 "복종은 지지와 동치"한다고 했습니다. 1930년대 독일에서 2020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또 시민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침묵은 복종과 지지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집단이 어떻게 세상을 바꾼다는 거야?" 불현 듯 저는 행복의회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비장하게 말한 것 치고는임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건 둘째치고 본회의까지 참석해 있는 것을 보면 저는 꽤 훌륭한 정치인 꿈나무인 것 같습니다.

그만두기 싫었습니다. 권력이 권리를 밟아 죽이는 것은 숨 쉬듯이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약한 것들이 밟혀 죽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침묵으로써 여성이, 청소년이, 사회 경제적 열위에 선 개인이 밟혀 죽는 일이 쉽다고 인정하기는 죽어도 싫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는 힘들지만, 무언가 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영영 변하지 않을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설령 이 말들이 어른들에게는 닿지 않아도, 반드시 세대는 교체되고, 우리의 경험은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청소년' 이었음을 잊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년간 우리는 꿈을 가장 견고한 형태로 만드는 연습을 해 왔습니다. 가장 젊은 생각을 가장 낡은 문법으로 번역하여 이해하기 쉬운 울림으로 바꾸고, 이제 그것을 전달하는 단계까지 데려온 셈입니다. 이 경험은 우리가 청소년이었던 날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하고, 또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낡은 문법을 깨고 젊은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성의 산실인 것처럼, 우리는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여성, 노동자, 학생, 장애인, 성소수자. 원래 존재하는 우리의 이름들을요. 우리는 오늘을 여는 주인공, 청소년이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의회 신가원 이었습니다.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전체 회의록





일 시	2020. 8. 8.(토) 09:30~12:30	장 소	야탑수련관 3층 공연장			
진행자	최경민 의장	기록자	중등부의장 민경환			
참석자 (총 21 명)	- 의원 : 유재석, 정규연, 민경환, 최경민, 김예진 조정훈, 김서원, 이가희, 허다인, 양다원, 황혜정 정세은, 김서현, 이민하, 신가원 - 간사 및 자문위원 : 김마리, 허지수, 김주환, 홍	, 전우석, 채원희, 이주원,				
주요안건	의장단 선거, 위원회 및 TF팀 구성(의장단,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윤리위원회, TF팀), 전문교육 3회차 - 윤리위원회 규정, 슬로건 선정 등					

1. 의장단 선거

- 1) 의장 선거 결과
- 1차 : 재적인원 35명, 참여인원 29명
- · 정규연 11표, 채원희 5표, 최경민 13표
 - ⇒ 행복의회 규정 제33조(선거) ②항 선거에서 1위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2인의 후보를 대상으로 재선거 진행
- 2차: 재적인원 35명, 참여인원 28명
- · 정규연 13표. 최경민 15표 ⇒ 최경민 당선
- 2) 부의장 선거 결과
- 고등 부의장: 재적인원 35명, 참여인원 29명
- · 권희정 찬성 28표, 반대 1표 ⇒ 권희정 당선
- 중등 부의장: 재적인원 35명, 참여인원 29명
- · 민경환 찬성 25표, 반대 4표 ⇒ 민경환 당선

2. 위원회 및 TF팀 구성

1) 특별위원회 구성

회의내용

위원회명	위원장	서기	윤리위원	위원
혁신	김태연	민경환	이민하	민소윤, 신가원, 권희정, 김예진
대외교류	김서현	김예진	고은교	고예진, 최경민, 신가원, 정세은,
네뇐╨ㅠ	급시한	급에건	<u>'</u> ''_''	조정훈, 허다인, 황혜정
정책연구	이주원	김지유	신가원	김서희, 김서원, 이규리
예산심의	유재석	정규연	양다원	김영중, 이가희, 전우석, 조서윤

- 특별위원회 운영방향

위원회명	운영방향					
혁신	– 윤리위원회 벌점제도 개선 및 연임의원에 대한 제도 개정 추진					
대외교류	– 타지역 의회 교류 추진					
네치파뉴	- 관내 학생회 연계 홍보 협력 추진					
정책연구	정책연구 - 행복의회 제안 정책 및 제안대회 정책 검토 후 연구 의제 설정					
예산심의	예산심의 - 재단 예산 심의, 검토 역할 추진 등					

2) 상임위원회

위원회명	위원장	서기	윤리위원	위원
교육문화	채원희	이민하	김예진	최이찬, 권희정, 신서연, 유재석, 한수지, 전우석, 민소윤, 허다인, 이동탁
인권권익	정규연	양다원	김지유	고예진, 김서희, 김영중, 김태연, 신가원, 고은교, 민경환, 김서원, 정세은
환경복지	이가희	조정훈	조서윤	이규리, 최경민, 김서현, 황혜정, 김채영, 김서진, 이주원

3) TF팀

TF팀명	팀장	부팀장 및 서기	팀원	활동방향
올바른 성인식	권희정	김서희 조서윤	김서현, 고은교, 정세은,김서원, 전우석	- 성남시 지역 안심 거울 활성화 - 성남시 여성 1인 가구 지역 보완 강화 (CCTV 설치 지원) - 안심여성귀가 서비스 복잡한 신청 절차 개편 및 홍보 활성화 - 청소년 피임 자판기 설치 대중화
청소년 심리	이주원	_	_	향후 논의 필요
청소년 정치참여	정규연	민소윤	신가원, 이민하	- 정치참여교육 의무화 - 정치교육 관련 기관 출범 등 인프라 구축 ⇒ 정치교육 현황 및 사례조사 진행
중고교 학생회연합	신가원	황혜정 김예진	민경환, 최경민, 양다원	- 성남시 중고교 학생회 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 ⇒ 타지자체 조례 및 운영현황 조사
청소년 교통비	유재석	_	조정훈	향후 논의 필요
청소년 문화지원금	채원희	이규리	신가원, 김영중	- 청소년 문화지원금 지원 조례 제안 ⇒ 타 지자체 사례 조사
보건 의료 정책	이가희	황혜정	허다인, 김서현, 김태연, 김예진, 이민하, 신가원, 조서윤	- 성남시 보건의료 실습 조례 제안 ⇒ 타 지자체 관련 조례 조사 - 보건실 의료시설 및 구비물품 확인 ⇒ 각 학년 보건실 모니터링 - 청소년 체력 증진 프로그램 - 코로나 속 청소년 안전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청소년증	양다원	고예진	김지유, 유재석 조정훈, 이민하	- 학생증을 청소년증으로 대체방안 논의 - 청소년증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 교통비 팀과 연합하여 개선안 강구

회의내용

3. 위원회 및 TF팀 구성

- 1) 우리의 앎으로 청소년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1표)
- 2) 오늘을 여는 주인공, 청소년입니다.(15표) ⇒ 최종 결정
- 3) 청소년, 우리가 걷는 곳이 길이 됩니다.(11표)

4. 전문교육 3회차 윤리위원회 규정

결정사항

행복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 TF팀 구성, 행복의회 슬로건 결정

건의사항 및 기타

9월 정례회의 희망 날짜 단체 카톡방을 통해 조사 진행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2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0.08.29.(토) 09:30~12:30 장 소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 (ZOOM 활용)					
진 행 자	최경민 의장, 김마리 간사 기 록 자 고등부의장 권희정					
참석자 (총 40 명)	- 의원 : 민경환, 김서희, 권희정, 고예진, 이규리, 이민하, 김영중, 최경민, 신가원, 정규연, 유재석, 김태연, 양다원, 정세은, 김지유, 황혜정, 조서윤, 민소윤, 최이찬, 김서현, 조정훈, 허다인, 이주원, 김예진, 신서연, 이가희, 채원희, 김서진, 고은교, 이동탁, 김서원, 전우석, 김채영 - 간사 및 자문위원 : 김마리, 김주환, 김지한, 허지수, 홍승민, 김화자, 박태형					
주요안건	의정활동 보고 및 향후 일정 안내, 전문교육 4회차-예산구조 및 수립과정, 2021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청소년 사업 예산심의(1차 지역구별 예비심사) 및 심의결과 공유					
회의내용	1. 의정활동 보고 및 향후 일정 안내 1) 08. 26.(수)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및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장남과의 간담회 진행 - 행복의회 조례 개정(명칭 변경 등) - 행복의회 활동 장소 - 향후 운영방향 등 2) 08. 08.(토) 의장단 회의 결과 - 의정목표 : 열려있는 제5대 행복의회 - 의정병침 : 교류, 홍보, 소통 3) 2020 성남시 청소년 ON&OFF 미래학습 포럼 관련 청소년 인터뷰 영상 촬영 - 최경민 의장, 민경환 중등 부의장, 신가원 의원, 정규연 의원, 김서연 의원 참여 2. 전문교육 4회차 : 예산구조 및 수립과정 1) 교육내용 - 예산의 구조, 예산 운영원칙, 예산 운영 절차 - 예산편성, 예산배정, 예산집행, 예산변경, 예산결산, - 예산 편성 절차 계획(6월-8월), 운영(7월-8월), 심의조정(8월-9월), 방침결정(10월), 의회심의(11월~12월), 확정(12월) - 유의사항					

3. 예산심의 및 심의 결과 공유 : 1차 지역구별 예비심사

재적인원 : 34명, 참여인원 : 33명						
예비심사 (시설명)	찬성	반대	기권	의결 결과		
수정청소년 수련관	30 II	0표	3표	가결		
중원청소년 수련관	30표	2표	1표	가결		
양지동/은행동청소년 문화의집	27丑	5 .	1丑	가결		
성남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30표	2표	1표	가결		
분당서현 청소년수련관	33 II	0표	0표	가결		
분당정자 청소년수련관	32표	0표	1丑	가결		
분당판교 청소년수련관	32표	0표	1丑	가결		
분당야탑 청소년수련관	27丑	4 H	2표	가결		

결정사항

회의내용

없 음

건의사항 및 기타

없 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3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0.09.05.(토) 09:30~12:50	장 소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 (ZOOM 활용)
진 행 자	최경민 의장, 김마리 간사	기 록 자	중등부의장 민경환
참석자 (총 36 명)	- 의원 : 유재석, 정규연, 민경환, 최경민, 김예진 조정훈, 김서원, 이가희, 허다인, 최이찬, 이든 김채영, 한수지, 신서연, 이동탁, 조서윤, 정세은 - 간사 및 자문위원 : 김마리, 김주환, 홍승민, 2	민하, 양다원, 황혜정, 채 -, 신가원	
주요안건	전문교육 5회차- 헌법의 이해, 주제토론, TF팀	소그룹 회의	

- 1. 전문교육 5회차 : 헌법의 이해
- 1) 교육내용
- 헌법의 개념과 법의 종류
- 헌법의 분류
- 국민의 기본권
- 내가 생각하는 기본권이란?

2. 주제토론

1) 주제: 개인의 재산권 VS 장애인의 이동권

주민이 10만명인 A도시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1명 살고 있다. 시청에서는 장애시민을 위해 모든 관공서와 편의시설에 장애인용 승강기, 이동장치를 설치하려고 한 다. 이때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 1인당 1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당신이 이 도시의 시민이라면 어떤 입장을 지지하겠는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가?

2) 진행방법

- 소그룹으로 분할 후 각 조마다 토론 진행
- 소그룹에서 대표 의견 최종정리 및 토론내용 발표자 선정

회의내용

조구분	찬/반	명단
1조	찬성	고예진, 채원희, 김서희
(김주환 자문위원)	반대	정세은, 최경민, 한수지, 이규리
2조	찬성	신가원, 김예진, 이주원
(홍승민 자문위원)	반대	김영중, 민경환, 황혜정, 최이찬
3조	찬성	이민하, 김지유, 김서원
(허지수 자문위원)	반대	김채영, 유재석, 조정훈, 김태연, 허다인
4조	찬성	양다원, 조서윤, 고은교
(김지한 자문위원)	반대	신서연, 정규연, 김서진, 민소윤

3. TF팀 소그룹 회의 및 회의 TF팀명 내용 - 청소년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 심화로 인한 자살율 증가 청소년 심리TF - 청소년 심리검사 비용 지원 및 홍보, 보호자 동의 없이 심리상담 가능하도록 변경 - 성남시 민주시민 교육관련 조례 개정 청소년 - 3대 민주시민교육TF 제안 조례 검토 및 보완 정치참여TF - 학생회 연합에 대한 조사 보완 추진 중고교 - 학생회 운영 현황에 관한 설문조사 진행 예정 학생회연합TF - 정책제안서의 문제점, 정책제안, 기대효과 등을 역할분담을 통해 작성 - 사용량에 비례하여 교통비 지원, 등하교 시간 청소년요금할인 청소년 교통비TF - 추후 일주일간 정책제안의 문제점 토의 및 보완예정 - 청소년문화지원금을 매년 2월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증을 지참하면 회의내용 청소년 문화상품권 4만원 지급 문화지원금TF - 중1~중2(첫째주), 중3~고1(둘째주), 고2~고3(셋째주)로 분할지급 - 추후 문화상품권의 사용처 조사 예정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조례의 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아동으로 확대 보건의료 - 청소년의 정기 건강검진 횟수 증가. 교내 보건의료시설 검토 정책TF - 청소년의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하는 등으로 활성화 - 청소년 코로나 예방을 감염병 예방으로 확대 및 관련 조례 검토 - 청소년증의 부정적 인식과 온라인 금융거래에서의 사용 여부에 대해 토의 청소년증TF - 성낚시 내에서 청소년증 사용 시 혜택과 홍보 - 초등학생 대상 올바른 성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 및 청소년 피임 자판기 설치 등에 올바른 대한 세부 주제 선정 성인식TF - 청소년피임자판기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대한 설문조사 진행 - 4차 정례회의 : 9/12(토) 결정사항 - 1차 정책제안서 제출: 9/26(일) 건의사항 및 기타 없 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4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0.09.12.(토) 09:30~12:10	장 소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 (ZOOM 활용)
진 행 자	최경민 의장, 김마리 간사	기록자	고등부의장 권희정
참석자 (총 명)	 의원: 유재석, 정규연, 민경환, 최경민, 김예진 조정훈, 김서원, 이가희, 허다인, 최이찬, 양다원 한수지, 신서연, 이동탁, 조서윤, 정세은, 김서현 간사 및 자문위원: 김마리, 김주환, 홍승민 	, 황혜정, 채원희, 이주원,	,,
주요안건	전문교육 및 성남시청소년 행복의회 예산심의 경	검토의견 공유, 특별위원호	l 및 TF팀 소그룹 회의

1. 전문교육 6회차 : 삼권분립과 입법기관

- 1) 교육내용
- 정부형태 및 국회소개
- 지방자치 및 의회의 기능
- 입법절차에 대한 이해
- 조례안의 의회 심의 및 의결
- 성남시청소년 행복의회 정책 추진과정

2. 2021년 성남시청소년재단 예산심의 검토의견 공유

- 1차 검토결과 이며 추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노력 및 2차 검토의견 향후 제출 예정

검토 결과								
반영	4건	미반영	26건	일부반영	2건	해당없음	2건	

회의내용

A정청소년수련관 반영 2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해당없음 2건 중원청소년수련관 반영 1건 미반영 5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반영 1건 미반영 2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6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분당전자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5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분당마교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5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분당마합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4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해당없음 0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해당없음 0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대당성소년소당되지 방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대당성소년소당되지 방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대당성소년소당되지 방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대당성소년소당되지 방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대당성소년소당되지 방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대당성소년소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되었다.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대당성소년소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되었다. 양대당성소년소당당성소년소당당성소년소당성소년소당성소년소년소당성소년소당성소년소	세부 내용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반영 1건 미반영 2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6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5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5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4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생남시청소년상담복자센터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해당없음 0건		수정청소년수련관	반영	2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해당없음	2건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6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5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분당만합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4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생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해당없음 0건		중원청소년수련관	반영	1건	미반영	5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시설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5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분당아탑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4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자센터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해당없음 0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반영	1건	미반영	2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분당 전 보다 한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6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해당없음 0건	시설명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5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해당 없 음 0건		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반영	0건	미반영	4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3 33 32 12 23 2 2 2 2 2 2 2 2 2 2 2 2 2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오채도처시되므하이지 바여 이거 미바여 1개 이탈바여 이거 체다어오 이거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1건	해당없음	0건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반영	0건	미반영	1건	일부반영	0건	해당없음	0건

3. 특별위원회 소그룹 회의 및 회의

위원회명	내용
혁신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행복의회 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 '선발'에서 '선출'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재정비
대외교류	- 활동 카드뉴스 제작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SNS를 이용한 홍보 - 분당구 학생회들과 교류 (온라인으로 진행) 추진

3. 특별위원회 소그룹 회의 및 회의

위원회명	내용
정책연구	– 성남시 청소년 인권 매뉴얼 제작 추진을 위한 자료조사 및 인권 침해사례 설문조사 진행
예산심의	- 성남시 청소년 예산 심의 권한 부여 제안 추진 - 타 청소년 의회 사례조사, 정책제안 필요, 현재 성남시에서 청소년 예산심의 참여 방법 사례 조사

3. TF팀 소그룹 회의 및 회의

TF팀명	내용
청소년 심리	- 성남시 청소년 심리검사 비용 지원 및 부모동의 없이 심리 검사 진행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안 추진 및 이를 위한 조례안 작성 중
청소년 정치참여	- '성남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검토 및 개정사항 논의 - 8조 2항, 3항 내용 추가 및 수정 등
중고교 학생회연합	- '성남시 중고등학교 학생회 연합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안서 작성
청소년 교통비	- 등하교 시간대에 교통비 할인, 사용횟수에 비례해 교통비 지급, 사용횟수 조사, 버스 탑승 후 마을버스 탑승 시 요금할인 - 마을버스 수 확대
청소년 문화지원금	- '성남시 청소년 문화지원금 지급 조례'(가칭) 제안 추진 - 필리델피아 문화 기금 및 청소년 문화기금 사례 조사 및 유사 조례 및 법류 검토 등
보건의료 정책	- 경기도 건강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성남시 건강기본조례' 제안 추진 · 성남시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사업, 성남시 청소년 건강검진사업, 청소년 독감예방접종 대상 및 범위 확장 등의 내용 포함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조례'를 기반으로 대상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논의
청소년증	- '성남시 청소년증 활성화 지원 조례'(가칭) 제안 추진 - 청소년증 2021년 기준 신규발급, 재발급 신청 대상 1회에 한해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혜택 - 성남시 내 청소년증 홍보 SNS 페이지 생성 - 성남시 내 청소년증으로 사용 시 요금할인 시설 청소년증 인증마크 부여 등
올바른 성인식	- 올바른 성인식 TF팀 정책을 위한 자료조사 - 청소년피임자판기에 대한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대한 설문조사 진행 (홍보방법)

회의내용

결정사항

- 1차 정책제안서 제출 : 9/27(일) 밤12시 까지 - 5차 정례회의 : 10/10(토)

건의사항 및 기타

없 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5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0.10.10.(토) 09:30~12:00	장 소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 (ZOOM 활용)
진행자	최경민 의장, 김마리 간사	기록자	중등부의장 민경환
참석자 (총 31 명)	 의원: 유재석, 정규연, 민경환, 최경민, 김예진 조정훈, 허다인, 김서현, 이민하, 양다원, 채원희 정세은, 신가원 간사 및 자문위원: 김마리, 김주환, 홍승민, 허지 	, 이주원, 김서진, 이규리,	
주요안건	TF팀 별 소그룹 회의(1차 정책제안서 수정 및 보왼	r), TF팀 회의결과 발표	

1. TF팀 별 소그룹 회의

- 피드백 자료를 기반으로 TF팀 별 수정 및 보완 방향 논의

2. TF팀 별 회의결과 발표

TF팀명	내용
올바른 성인식	- 문제인식, 현황 및 문제점에서 안심거울 통계자료 수정 - 서울시 10대 여성지원조례를 바탕으로 성남시 청소년 성보호 조례로 수정 - 정책에 관한 조례 수정 및 추후 관련 조례안 추가 예정
청소년 심리	 문제인식에 관한 출처&통계의 구체적인 자료 추가 도표와 그림 추가, 오류있던 명칭을 정확한 명칭으로 수정 현황 및 문제점의 구체적인 사례, 출처 추가 성남시청소년심리검사 신설 관한 조례 추가, 기대효과 수정
청소년 정치참여	- 조례 수정, 설문조사와 다음 정책에 관한 회의 진행
중고교 학생회연합	- 정치참여교육TF와 함께 설문조사 사전 준비 & 진행 예정 - 현황 및 문제점에 구체적 사례 추가, 사례기관들의 구체적 설명 수정, 기타 첨삭
청소년 교통비	 교통비 인상에 관한 여론조사 착수, 이와 관련해 매체에서 구체적 조사 현황 추가 학교 밖, 안 청소년들의 교통비 사용 실태 조사 청소년들의 교통비 지원 현황 및 문제점 조사

회의내용

2. TF팀 별 회의결과 발표

TF팀명	내용
청소년 문화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현재 실행되고 있는 바우처 사업을 바탕으로 '성남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급조례'로 정책방향 변경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해당하는 조례 추가 조사,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조례 보완 제안
보건의료 정책	- 문제인식의 주제를 흐리는 불필요한 부분 삭제 - 치과주치의 자료,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내용 추가 보완
청소년증	- 청소년증 발급 현황, 자체 설문조사의 통계를 그래프로 출처 추가 - 현황 및 문제점에서 공적상황에서 인정받지못하는 사례를 보충 - 추가 정책 방향 논의 등

- 정책연구특별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추가 회의 진행

결정사항

- TF팀별 2차 정책제안서 10월 25일 제출
- 제안대회 및 토크콘서트 일정 추후 안내

건의사항 및 기타

없 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6차 정례회의 회의록

01 11	2020 10 21 (E) 00:20 12:20 The CRID WITH SIMSON SE				
일시	2020. 10. 31.(토) 09:30~13:20 장소 온라인 비대면 화상회의 (ZOOM 활용				
진 행 자	최경민 의장 기록 자 고등부의장 권희정				
참석자 (총 32 명)	- 의원 : 유재석, 정규연, 민경환, 최경민, 김예진, 김지유, 김태연, 고은교, 민소윤, 김서희, 김영중, 고예진, 조정훈, 이가희, 허다인, 최이찬, 황혜정, 채원희, 이주원, 김서진, 이규리, 권희정, 신서연, 이동탁, 조서윤, 김서현, 이민하, 신가원 - 간사 및 자문위원 : 김마리, 김주환, 홍승민, 허지수				
주요안건	TF팀 별 소그룹 회의(2차 정책제안서 수정 및 보완), TF팀 회의결과 발표				
	1. TF팀 별 소그룹 회의 - 각 TF팀이 제출한 2차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자문위원 및 간사 피드백 진행 - 피드백 자료를 기반으로 TF팀 별 수정 및 보완 방향 논의 - 중간 점검 발표 준비 등 2. TF팀 별 정책제안 중간 브리핑				
	TF팀명 내용				
	- 성남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례 신설 올바른 - 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모란역·야탑역 등 사람이 많은 지하철 역 및 골목길 안심거울 활성화 성인식 - 청소년의 학교 및 학원가 등 주변 지역의 cctv 설치 확대 지원 - 청소년의 올바른 성 교육을 위해 '청소년 피임자판기' 대중화				
	- 성남시 청소년 심리검사 지원 조례 신설 청소년 - 성남시 청소년 심리 검사 확대 및 비용 지원 심리 - 심리 상담이나 검사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 불필요 - 시에서 지정한 특정 학년의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행				
-10U II O	청소년 -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정치참여 - 시장의 청소년 민주교육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제7조 4항에 신설				
회의내용	- 성남시학생회총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중고교 - 관내 중등학교 전체를 포괄하는 학생회 연합을 구성 학생회연합 - 성남시 학생회연합의 구성 및 의결방식, 의견제시 방식 등 연합 운영 - 경기도 학교 자치조례에서 규정하는 교장, 교육장 등과의 의사소통 방법과 창구를 명백히 밝힘				



	TF팀명	내용	
	청소년 교통비	- 성남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설 - 청소년의 등·하교 시간은 6시 30분에서 9시, 15시에서 19시로 지정 - 청소년 교통비의 1회 지원 기간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4회 지급 - 조례에서 정한 등·하교 시간에 버스를 이용한 청소년에 한하여 버스비를 전액 지원 - 성남시장은 분기별로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	
	청소년 문화지원금	- 성남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신설 - 성남시 거주 만9세부터 만18세 대상 문화 바우처 지급 -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	
회의내용	보건의료 정책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개정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의 적용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청소년(15세)으로 확대 적용대상이 청소년이므로 지원 대상 협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대표하여 전달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관기관도 참여하도록 하며 협의체 구성에 청소년 유관기관대표 포함 	
	청소년증	- 성남시 청소년증 활성화 지원 조례 신설 - 청소년증 발급에 따른 혜택 지급	
	- 예산심의특팀	별위원회는 회의종료 후 추가 회의 진행	
결정사항	- 11월 정례회의 날짜는 11월 7일, 11월 14일 진행(장소 추후 공지) - 11월 말 중 자문단 간담회 진행 - 정책제안서 및 발표 PPT는 수정 후 11/1(일)까지 카페 게시		
건의사항 및 기타	없 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7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0. 11. 08.(토) 09:30~12:00 장 소 중원청소년수련관 5층 차오름실			
는 . 진 행 자	최경민 의장 기록자 중등부의장 민경환			
참석자 (총 28 명)	- 의원 : 유재석, 정규연, 민경환, 최경민, 김예진, 김태연, 고은교, 민소윤, 김서희, 김영중, 고예진, 조정훈, 이가희, 허다인, 최이찬, 양다원, 황혜정, 채원희, 이주원 ,김서진, 이규리, 권희정, 조서윤, 김서현, 이민하, 신가원 - 간사 및 자문위원 : 김마리, 김주환			
주요안건	TF팀 별 소그룹 회의(3차 정책제안서 수정 및 보완), TF팀 회의결과 발표			
회의내용	1. TF팀 별 소그룹 회의 - 각 TF팀이 제출한 3차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자문위원 및 간사 피드백 진행 - 피드백 자료를 기반으로 TF팀 별 수정 및 보완 2. TF팀 & 특별위원회 별 회의결과 발표 TF팀명			
	- 오늘 의논한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정책제안서 준비 추진			
결정사항	- [8차 정례회의] : 11. 14.(토) 09:30 ~ 성남시의회, 자문단 중간점검 진행 - 12월 정례회의 일정 투표 진행			
건의사항 및 기타	없 음			





일 시	2020.11	.14.(토) 09:30~12:30	장 소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진 행 자	최경민	<u>l</u> 의장, 김마리 간사	기록자	고등부의장 권희정
참석자 (총 34명)	 의원: 유재석, 정규연, 최경민, 김예진, 김태연, 고은교, 민소윤, 김서희, 김영중, 고예진, 조정훈, 허다인, 양다원, 황혜정, 채원희, 이주원, 김서진, 이규리, 권희정, 신서연, 이동탁, 조서윤, 김서현, 이민하, 신가원 간사 및 자문위원 · 김마리, 김주환, 허지수 ·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아름방송 김용기 보도부장, 성남시청소년재단 전략기획실 변호용 실장, 기획조정팀 김화자 팀장 기타: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 성남시청소년재단 전략경영본부 김영환 본부장 			
주요안건	전문교육 7회차	- 훈육 목적 자녀 체벌, 주제토	르, TF팀 소그룹 회의	
회의내용	1) 교육내용 - 아동학대 정 - 아동복지법 - 아동 학대 둔 - 부모의 자녀 - 아동권리 및 2. 주제토론 1) 주제 : 민법 민법 제915조 허가를 얻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민법 문제 해결 방안 체벌 금지 찬성, 반대 아동학대 해결책 제915조의 부모의 자녀 징계권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감회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당신은 어떤 입장을 지지하겠는	조항 삭제에 대한 찬반토론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 수 있다. 이와 같이 민법 제	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915조의 부모의 자녀 징계권
	1) 진행방법 - 각 TF팀이 제출한 3차 정책제안서를 기반으로 자문단 중간점검 진행 - 피드백 자료를 기반으로 TF팀 별 수정 및 보완 방향 논의 - 향후 진행될 자문단 간담회 준비 등 2) 세부내용			
	TF팀명		내용	
	청소년 교통비	 성남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청소년의 등·하교 시간은 6 청소년 교통비의 1회 지원 7 조례에서 정한 등·하교 시간 성남시장은 분기별로 "성님 	시 30분에서 9시, 15시에서 간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하여 l에 버스를 이용한 청소년에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4회 지급
		l		

	올바른 성인식	 성남시 가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례 신설 가출 청소년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 가출 청소년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 가출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 건강 교육 및 심리, 정서지원 성남시 내에 청소년 쉼터 산부인과 전문의 및 간호사 의무화 가출 청소년의 학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청소년 유해 업소 및 매체 감시,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 시민활동지원 등 가출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남시 여성 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 신설 성남시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 반사경 안심거울 설치 1인 여성가구, 원룸, 주택 밀집가 등 미러시트 안심거울과 반사경 안심거울 설치를 통한 안심거울길 조성 호신용 스프레이, 호신용 경보기 등의 지원 여성안심택배함, 로고젝터 확대 운영
회의내용	청소년 심리	- 성남시 청소년 심리검사 지원 조례 신설 - 성남시 청소년 심리 검사 확대 및 비용 지원 - 심리 상담이나 검사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 불필요 - 시에서 지정한 특정 학년의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실행
	청소년 정치참여	-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 시장의 청소년 민주교육의 책임에 관한 내용을 제7조 4항에 신설
	중고교 학생회연합	- 성남시학생회총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설 - 관내 중등학교 전체를 포괄하는 학생회 연합을 구성 - 성남시 학생회연합의 구성 및 의결방식, 의견제시 방식 등 연합 운영 - 경기도 학교 자치조례에서 규정하는 교장, 교육장 등과의 의사소통 방법과 창구를 명백히 밝힘
	청소년 문화지원금	- 성남시 청소년 문화 바우처 지원 조례 신설 - 성남시 거주 만9세부터 만18세 대상 문화 바우처 지급 - 1인당 10만원의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
	보건의료 정책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개정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의 적용대상을 초등학생에서 청소년(15세)으로 확대 - 적용대상이 청소년이므로 지원 대상 협의 과정에서 청소년의 입장에서의 의견을 대표하여 전달 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관기관도 참여하도록 하며 협의체 구성에 청소년 유관기관대표 포함
	청소년증	- 성남시 청소년증 활성화 지원 조례 신설 - 청소년증 발급에 따른 혜택 지급
결정사항		t서 제출 : 11/15(일) 서 PPT 제출 : 11/18(수) : 12/5(토)
건의사항 및 기타	없 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9차 정례회의 회의록

NO-11 61	크시앙포인영국의의 5시 영대외의 외의국
일 시	2020.12.05.(토) 9:30~12:30 장 소 ZOOM으로 화상회의
진 행 자	정규연 인권권익상임위원장, 민경환 중등부의장 김마리 간사 기록 자 중등부의장 민경환
참 석 자 (총 26명)	– 의원 : 유재석, 정규연, 민경환, 김예진, 김지유, 김태연, 고은교, 민소윤, 김서희, 김영중, 고예진, 조정훈, 이가희, 허다인, 이민하, 양다원, 이주원, 김서진, 이규리, 신서연, 이동탁, 정세은, 신가원 – 간사 및 자문위원 : 김마리, 홍승민, 허지수
주요안건	- 청소년 인권이란? -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및 대응 체계 논의
회의내용	1. 청소년, 인권, 청소년인권에 생각을 해보고 포스트잇을 통해 이를 공유 [청소년이란?] - 무한한 가능성(홍송민) - 미래보단 현재(허지수) - 성인이 되기 인접 사람들?(고은교) - 항상 존경 환원을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존재(이규리) - 어른이 되기 위한 준비 단계(검시전) - 뭐든 해보고 싶을 수 있고, 해볼 수 있는 시기(정세은) - 를에 박히지 않고 응용될 수 있는 대상(검마리) - 집품 하기 보안으며 성장해(하라) 존재(청마인) -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시기(전에 가입) -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해(하라) 존재(청마인) - 자기 자신을 형성하는 시기(전에 가입) -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해(하라) 존재(정규연) - 가장 넓은 참에 함위를 가질 대상(이민하) - 자이정체성을 탐색하고 스스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존재(이주원) -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이동탁) - 경제사회적으로 중속된 계층 5. 5(신가원) - 누구에게나 있는 시기, 자아를 형성하는 단계(신서연) -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려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존재(양다원) - 물과 같은 존재(김지유) - 아른이 되기 전, 정신적으로 나 신체적으로 자라나는 단계, 자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배우는 시기(김태연) - 존재만으로 가치있는 인격자원(유재석) - 가장 넓은 참여범위를 가질 대상(이민하) -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사회전율을 준비하는 연령대(김영중) - 자신의 미래를 그리는 시기(교예진) - 어른이 되기 전에 수많은 생각을 지난 대상(인소요) - 누구에게나 빛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민경환) - 우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조정훈) [인권이론?] -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김마리) - 마명히 누려야할 권리(신가원) - 당연함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하지수) - 가장 기본적인 권리(신가원) - 가장 기본적인 권리(신가원) - 가장 기본적인 권리(신자진) -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 리리(오교) - 인간으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인소윤) - 당연하지만 현재로써 어려운 것(리지유) -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 리리(전지유) - 사람이 가지는 기본적 리리(전지유) - 가장 기본적인 권리(보다원) -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마명히 자기저져야 하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현연한 권리(양대원) - 누가 더 많이 누리가나 적게 누리지 않아야 하는 권리(이민하) - 본두가 누결 자리이 있는 라진(하다인) - 모두가 누리야하는 권리(하다인)

-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김태연)
-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가희)
- 하나의 사람에게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권리(이규리)
-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것(민경환)
- 사람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정규연)
- 사람이 가져야할 기본적 권리(신서연)
- 누구나 어떠한 차별 없이 누려야하는 기본적이고 인간적인 권리(김서희)
-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보편적인 권리(김영중)

[청소년인권이라?]

- 어리다고 구분되지 않을 권리(김마리)
- 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이 존중받을 권리(고예진)
- 청소년의 특성을 좀 더 존중하는 것(허지수)
- 청소년도 동등하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 갖는 권리(김서진) 청소년이 인간다운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권리
- 청소년들이 더욱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려야할 권리(민소윤)
- 지금은 선언적 권리(신가원)
- 청소년이 청소년답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바탕(김지유)
- 청소년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정규연)
- 청소년에게 필요한 권리(신서연)
- 청소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고은교)
- 사회에서 동등한 하나의 주체가 되는 것(이가희)
- 청소년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주원)
- 청소년이 동등한 인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권리
- 청소년이라고 무시 받지 않을 권리(허다인)
-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돕는 것(김영준)
-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청소년을 위한 권리(정세은)
-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에 도움을 주는 권리(이민하)
- 회의내용 - 청소년들의 권리이자 의무(유재석)
 - 아동과 어른으로 분류되지 않고, 다른 청소년이라는 인격체들에게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김서희)

 - 청소년이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조정훈) 2) 청소년 인권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 논의

3.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및 대응체계 논의

- 1)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 장소 및 상황 별 일어날 수 있는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 논의

장소	사례
학교	성적순으로 심화반을 통해 보충수업, 교내/외 대회 수상, 자습실을 차별적으로 이용가능 등
가정	가정폭력에 소외된 청소년,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의 입지
병원	산부인과와 정신의학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이 떨어짐
온라인	n번방처럼의 디지털 성폭력과 온라인 학교 폭력

- 청소년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체계

조	방법
1	SNS를 활용한 청소년 연결 단체, 또래상담사 앱, SNS로 홍보, 활성화
2	개인적으로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제공 학교마다 익명 우체통 설치, 청소년 인권 조례 개정
3	학생 주도 인권단체 설립, 청소년 인권 도움 웹사이트, 토크콘서트, 학생회 인권부 활용, 청소년 인권 의식 제고

결정사항

없 음

건의사항 및 기타

- 자문단 간담회 때 발표 최종 TF팀 ppt 카페에 업로드
- 다음 회의 때는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



제도대 성난시청소년해보인히 | 10차 정례회의 회의록

15 M5H 45	남시청소년행복의회	10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0.12.12.	(토) 09:30~12:10	장 소	ZOOM으로 화상회의
진 행 자	최경민 의	당, 김마리 간사	기록자	고등부의장 권희정
참석자 (총 27명)	이민하, 양다원, 황혜	령민, 김예진, 김태연, 민소윤 정, 채원희, 이주원, 김서진, 0 김마리, 김주환, 홍승민, 허지	l규리, 권희정, 조서윤, 정세	조정훈, 이가희, 허다인, 최이찬, 은, 신가원
주요안건	TF팀 소그룹 회의, 특	별위원회 회의		
		및 회의 입법제안서 최종본 수정 안으로 자문단 간담회 최종 준	비(PPT 수정 및 제작 등) 내용	
	을바른 성인식 - 청소년 심리 - 청소년 정기참여 - 중고교 학생회연합 - 청소년 교통비 -	전책제안서 최종본을 입법제인 PPT 각 부분 역할분담 및 PP PT 최종본 완성 입법제안서 기반으로 정책 제 PPT 최종본 수정 정책제안서 최종본 한글 파일 PPT 공백 페이지에 넣을 영성 정책제안서 최종본 오타 수정 정책제안서 최종본 수정 PPT 및 발표 대본 제작 입법제안서 기반으로 정책 제 정책제안서 최종본 오타 수정 PPT 및 발표 대본 제작	안서 기반으로 수정 「최종본 수정 안 내용 구체화 로 전환 찾음 및 발표 대본 제작 안 8조 수정	
회의내용	보건의료 - 입법제안서 기반으로 PPT 최종본 수정 청소년증 - 정책제안서 최종본을 입법제안서 기반으로 수정 - 발표 대본 제작 2. 특별위원회 회의 및 회의 1) 논의안건 : 특별위원회 별 주요 과업 점검 및 수행 계획 논의 2) 세부내용			
	특별위원회명		내용	
	혁신	- 입법제안서 및 자문단 간담 - 발표 대본 각자 작성 후 취합 - 정책제안서 최종본 수정		

특별위원회명	내용
혁신	- 입법제안서 및 자문단 간담회 발표 PPT 최종 수정 - 발표 대본 각자 작성 후 취합 예정
예산심의	- 정책제안서 최종본 수정 - PPT 제작 31일까지
대외교류	- 교류가 가능한 청소년 의회 조사 - 비대면 교류활동 논의
정책연구	- 학교, 가정, 온라인 장소에 따른 인권 침해 사례와 대처 및 신고 방법 조사

결정사항

- 오늘 중 정책제안서 최종 한글 파일 카페 제출 12/31 간담회 발표 피피티 최종 카페 제출 1월 정례회의 희망 날짜 카카오톡 투표

건의사항 및 기타

없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11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1.01.16.(토) 09:30~12:30	장 소	ZOOM으로 화상회의
진행자	최경민 의장, 김마리 간사	기 록 자	고등부의장 권희정
참석자 (총 28명)	- 의원 : 유재석, 정규연, 최경민, 김예진, 김지유, 김태연, 고은교, 민소윤, 김서희, 김영중, 조정훈, 이가희, 허다인, 양다원, 황헤정, 채원희, 이주원, 김서진, 이규리, 권희정, 이동탁, 김서현, 이민하, 신가원 - 간사 및 자문위원 : 김마리, 김주환, 허지수, 홍승민		
주요안건	전문교육 10회차- 상임위 심의 및 의결 관련 교	육, 상임위원회 의안심의	

- 1. 전문교육 9회차 : 상임위원회 심의 및 의결 관련 교육
- 1) 교육내용
- 1.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결과정
- 의안 제출, 발의- 심사(심의)-본회의 의결-이송-공포
- 2. 예시로 살펴보는 심의 유형 및 방법
- 3. 조례안 심사(심의) 시 고려사항
- 4. 의결의 유형

2. 상임위원회 1차 의안심의 및 심의내용 공유

1) 상임위원회 배정 현황

구분	조례명	비고	
	- 성남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	문화지원금TF	
교육문화	-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정치참여TF	
상임위원회	- 성남시 청소년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증TF	
	- 성남시학생회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학생회연합TF	
	- 성남시 가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Oni = 14011111	
교육문화	-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올바른성인식TF	
상임위원회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혁신특별위원회	
	- 성남시 청소년 예산 검토 권한 부여에 관한 제언	예산심의특별위원회	
	-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개정		
환경복지	- 성남시 학교 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 제정	보건의료TF	
상임위원회	- 성남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소년 교통비 TF	
	- 성남시 청소년 심리검사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 심리TF	

회의내용



2) 세부내용

구분	내용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1. 성남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 - 조례 내의 청소년을 만16세~만18세로 규정하는 이유 - 성남시 거주 청소년 뿐만 아니라 재학 청소년까지 지원하는 방안 - 구체적인 지급경로 - 지급 대상의 연령을 낮추는 방안 2.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 구체적인 교육 과정 - 현황 및 사례의 설문자료에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않음 3. 성남시학생회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참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조례 그대로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의견 대립 - 조례 제2조의 오류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1. 성남시 가출 청소년 성보호 관한 조례 - 타 지자체에서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원 범위 (건강검진 지원, 산부인과를 비롯한 시설이 있는지 여부) : 타 지자체에서의 현재 가출 청소년 지원 관련 사례를 통해서 이 조례의 실현 가능성을 보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타 지자체의 추가적인 자료 조사가 필요함 - 성남시 내의 유해 환경에 대한 대비 제도 (신고포상) : 「성남시 가출 청소년 정보호 관한 조례」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 - 가출 청소년 지원 조례,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법적 지원이 성남시 내에는 없으나, 가출 청소년센터는 있음 : 현재 가출 청소년 센터의 지원 현황에 대해서 조사, 가출 청소년에 관해서 어디까지 지원해주고 있는지 인식이 필요하다고 느낌 (건강검진, 시설 내의 산부인과 지원 등) - '문제인식' 부분에서의 'n번방' 사건의 사례는 가출 청소년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었음 : 이에 관해서 문제인식 부분에서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다른 사례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됨 - 정책제안 부분에서 전반적인 흐름의 모순 :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인지, 가출 청소년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자하는 조례인지에 대한 혼란의 여부가 있음 2.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현재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타 지자체의 사례 여부 : 타 지자체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는지 조사가 필요함을 느꼈고, 이에 따라 현자

회의내용

	2) 세부내용	
	구분	내용
	인권권익 상임위원회	3.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문제인식' 부분에서 행복의회 토크 콘서트, 포럼대회 개최 관련 내용에서 대회 내용 추가 설명이 필요 : 행복의회가 전반적으로 한 역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옴 - '정책제안' 부분에서 조례 재정비 관련한 설명이 부족 : 연임 제한을 없애는 것, 행복의회 의원 수 축소에 관련한 현황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낌. 정책제안에서 개정된 조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현황 및 문제점에서 나왔던 '행복의회'의 명칭 관련 부분을 제외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성남시 청소년 예산 심의 권한 부여에 관한 제안 - '정책제안' 부분에서 조례 수정 관련 내용의 누락 : 조례의 어떤 부분이 수정되는 것인지 명시를 정확히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옴. 원래 있던 조례에서 어떠한 부분이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 위원회와의 차이점 : 이미 있는 청소년위원회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심의하는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다른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낌. 행복의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예산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설명도 필요함
회의내용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1. 성남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교통비 혜택을 주는 것인지? : 등·하교 시간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버스를 이용하면 지원 가능 - 등·하교 시간 이외에 사용하면 이용 불가능한 것인지? : 등·하교 시간 이외에 사용한 버스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능 - 지하철 이용료는 제외하고 버스비만 지원하는 이유는? : 등교를 할 때 지하철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버스비 인상률이 높아서 버스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함. 지하철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옴 - 성남시에는 따로 청소년 지하철 이용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서 지하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옴 2. 성남시 학교 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 제정 - 경기도 교육청이 2019년에 학교 보건실 규칙을 14년 만에 개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작성한 것인가? : 2019년 개정 규칙을 바탕으로 제정한 것이며, 주로 예산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함 - 「성남시 학교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제2조(정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조로 명시되어 있던 것을 제2조로 바꾸는 것을 제안함

결정사항

- 12차 정례회의 : 01. 23.(토) 09:30 ~ 온라인으로 진행

- 중등 부의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12차 정례회의 시 진행

- 중등부의장 출마 선언문 제출 기한 : 01. 20.(수)

건의사항 및 기타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12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1.1.23	장 소	ZOOM으로 화상회의
진 행 자	최경민 의장, 김마리 간사	기 록 자	중등부의장 황혜정
참석자 (총 29명)	- 의원 : 유재석, 정규연, 최경민, 김예진, 김지유 허다인, 김서현, 이민하, 양다원, 황혜정, 채원희 - 간사 및 자문위원 : 김마리, 김주환, 허지수, 홍	l, 이주원, 김서진, 이규리,	
주요안건	중등 부의장 선출, 윤리위원회 전문교육, 인권권	!익상임위원회 2차 의안심	의

1. 중등 부의장 선출

- 1) 중등 부의장 사퇴에 따른 보궐선거 진행
- 재적인원 27명/참석인원 25명
- 찬성 24명/반대0명/기권1명으로 황혜정 의원 중등부의장 당선

2. [전문교육 10회차] 윤리위원회 출석 관련 교육

- 1) 회의불참 사전공지
- 회의 개의 최소 1일 이전, 윤리위원회에 사전공지가 원칙
- 질병으로 인한 불참 시에는, 회의 개의 익일 오전 12시까지 윤리위원회에 불참 공지
- 회의 불참 증빙서=행복의회 네이버 카페 서식 참조
- 2) 출석 유의사항
 - 온라인 ZOOM 회의일 경우: 25분까지 채팅으로 'OO중(고) OOO출석합니다.'를 남겨야 인정되며, ZOOM에 입장하더라도 채팅으로 출석하지 않을 시 무단 불참으로 처리

구분		증빙0	증빙X
조퇴/지각	사전공지O	0.25	1
	사전공지X	1	1
브라	사전공지O	1	2
불참	사전공지X	1.5	3.5

회의내용

3) 벌점 규정

4) 오픈채팅방

- 의의 : 불성실, 모범 의원에 대한 익명 제보

- 규칙 : 익명원칙, 양방향 소통 가능 소셜 미디어 형태 이용, 윤리위원 반수 이상소속

- 절차 : 오픈채팅방 제보 공지-제소이유 밝힘-증거제출-윤리위원회 판결

구분	벌점
회의 중 욕설 및 인신공격 사용 시	4
의회 내 분란 조성 시	3
물리적 폭력의 행사가 발각되었을 시	7
다른 의원의 폭력행사를 알고도 의회에 신고하지 않고 묵인했을 시	5

- 5) 윤리위원회 회부
- 벌점 7장 이상일 경우 제소된 의원이 있을 경우
- 6) 상점제도

구분	벌점
전체회의 분기 개근(무지각), 소속 위원회의 분기 개근(무지각) 시	3
분기 정근 (전체회의, 위원회의 합산 지각 3회 미만)	2
분기 무단결석 및 무단지각이 없을 시 (질병 및 인정불참 3회 미만)	1
해당 분기에 받은 벌점이 없을 시	1
의회 내에서의 봉사 및 선행 시	1
사회에서의 선행 등으로 의회의 위상을 높였을 시	1

- 분기별 우수의원 1인 이상씩 선정하며, 공로상 및 상품을 수여할 수 있음
- 우수의원 선정은 상점 최고점자 순으로 함.

3. 인권권익상임위원회 2차 의안심의

구분	세부내용
성남시 가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의 주제가 불명확하며 방향성에 혼란이 있음 조례 지원 대상, 지원 내용에 대한 이유가 불명확함 '성남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과 내용 중복 ⇒ 성남시 가출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남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구체화 할 것을 제안 조례안 내용 중 '현장상담'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 현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됨. 조사 이후 필요한지 여부 판단 필요 조례안 실현 가능성: 가출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조례에서 경제적인 부담, 예산적인 부분에서 세분화된 계획이 필요함.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	- '문제인식' 부분에서 제시하는 사례의 변화 필요 - 성남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와 유사 - 조례안 방향전환 : 여성 1인 가구의 치안을 강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제안 구체화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문제인식' 부분에서 행복의회 토크콘서트, 포럼, 대회 개최 관련 내용에서 대회 내용 추가 설명이 필요 - '정책제안' 부분에서 조례 재정비 관련한 설명이 부족
성남시 청소년 예산 검토 권한 부여에 관한 제언	- '정책제안' 부분에서 조례 수정 관련 내용의 누락 - 주민참여예산제 청소년위원회와의 차이점, 청소년 행복의회의 심의 범위에 관한 내용 누락

회의내용

3. 인권권익상임위원회 2차 의안심의

TF 팀명	내용
올바른 성인식	 문제인식에서 n번방 사건 청소년 비중이 높다는 것과 조례 위치 조정 조례제안과 기대효과 차후에 조정 예정 여성친화도시 화성시 등의 사례 개정에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시행 현황 및 문제점 보완하기로 함
청소년 심리	- 제안설명 PPT 수정 및 검토 - 제안설명 대본 작성 및 발표준비



2) 세부내용

회의내용

TF 팀명	내용
청소년 정치참여	- 설문자료의 보완성 자료의 객관성 구체적인 대상 명시로 설득력 가지고 나머지 심의 할 때 추후 공지
중고교 학생회연합	- 질문 바탕으로 답변 마침
청소년교통비	- 상임의원회 대본 예상 질문 및 답변준비 ppt 확인 및 검토
문화지원금	– ppt 검토
보건의료	- 발표자 확인
청소년증	- 추후 추가적인 회의 진행

결정사항

- 황혜정 중등 부의장 당선13차 정례회의 : 2월 6일14차 정례회의 : 2월 20일

건의사항 및 기타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13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1.2.6.(토) 09:30~12:00	장 소	ZOOM으로 화상회의
진 행 자	최경민 의장, 김마리 간사	기록자	중등부의장 황혜정

참석자 (총 26명) - 의원: 유재석, 정규연, 최경민, 김태연, 고은교, 민소윤, 김서희, 김영중, 고예진, 신가원, 조정훈, 이가희, 허다인, 김서현, 이민하, 양다원, 황혜정, 채원희, 이주원, 김서진, 이규리, 권희정, 조서윤

- 간사 및 자문위원 : 김마리, 김주환, 홍승민

주요안건

환경복지/교육문화 상임위원회 2차 의안심의

1. 환경복지상임위원회 2차 의안심의

구분	세부내용
성남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개정	- 문제인식에서 '소득에 따른~ '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청소년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보다는 저소득층 아동구강의료지원의 목적에 더 가깝게 느껴짐 부가 설명 추가
성남시 학교 보건실 시설 지원 조례 제정	 경기도 학교 보건 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과 이 정책의 다른 점고민 필요 성남시에 맞춰진 구체적인 정책 COVID-19 사태로 인한 변화 파악 및 수정 '드레싱카를를 '드레싱카에'로 용어 수정 성남시 내의 사례를 추가 조사 정책제안의 제2조(정의)부분에서 '학교는 초 중등 교육법 제3조가 아닌, 제2조에서 정하는 학교로 한다'라고 수정 학교 보건 실 지원 조례에서 4조 4번에 보건교육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학교보건실 지원이라는 주제의 명확성을 위해 부가설명 추가
성남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현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이 상반기와 달리 (한도12만원내) 전액지원으로 바뀜 정책 내용 수정 - 교통비를 지원하는 대상이 성남시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임 임을 추가 설명 - 제3조 지원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들도 등 하교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 추가 설명 - 경기도와 화성시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나와있는 지원범위처럼 지금 제안 하는 조례에도 지원 범위에 대한 조항 추가 - 문제 인식에서 출처를 정확하게 수정
성남시 청소년 심리검사 지원 조례 제정	- 문제인식 부분의 자료는 의도 전달에 자료가 부적함함 수정 - 정책제안의 〈청소년 심리 지원의 신뢰성과 안전성의 필요〉에서 학교 안의 위 클래스가 비밀보장이 어렵고, 1388이 전문적인 상당이 힘든 부분에 관한 인터뷰나 설문조사가 추가

회의내용

2. 교육문화상임위원회 2차 의안심의

구분	세부내용
성남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	- 아동인권실태조사 여가시간 통계자료에서 일일 기준 명시 - 통계자료 최신 것들로 수정 - PPT랑 문서 통계자료 동일하게 수정 - 학교 밖 청소년 언급 강조 하지 말 것 - 청소년 증에 주민등록 초본 내용 다 포함 되어있으므로 수정
성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개정	- 현황 및 문제점에서 표와 차트가 일치 - 명칭을 통일 - 민주시민 교육 우리나라 사례 추가 - 경기도 꿈의 학교 파주 교육 지원 청 주관으로 진행된 이 사례로 보완 되었다는 것을 명시
성남시 청소년증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 문제인식 청소년 증 활성화 안된 사례를 마스크로 했는데 일상사례 조사 및 추가 -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인터뷰 말고 정확한 설문 자료 필요
성남시학생회연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어두운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경험 말고 자세한 통계자료 제시 - 문제인식 부분에서 학생들의 빈약 도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 참고 명시 - 해외사례에서 본 받아야 할 이유를 명시

결정사항

없 음

건의사항 및 기타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14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1.03.13.(토) 09:30~11:38	장 소	중원수련관 1층 어울림실	
진 행 자	최경민 의장, 김마리 간사, 명미경(이관부서 담당자)	기록자	고등부의장 권희정	
참석자 (총 명)	- 의원 : 유재석, 정규연, 최경민, 김태연, 민소윤, 김서희, 김영중, 고예진, 조정훈, 이가희, 허다인, 김서현, 이민하, 황혜정, 채원희, 김서진, 이규리, 권희정, 신가원 - 간사 및 자문위원 : 김마리, 김주환, 허지수, 홍승민			
주요안건	공지사항, 개별 TF팀 회의 논의 내용 및 향후 계	획 발표, TF팀 회의 및 결 ³	과 발표	

1. 공지사항

- 1. 중간고사 일정 톡방에 보내기
- 2. 4월 정례회의 날짜 톡방에 투표
- 3. 사업운영부서와 담당자 변경된 사항
- -〉 운영부서: 성남시청소년재단 본부 →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 -> 담당자 : 김마리 → 명미경
- -> 기타 청소년의원 권한 및 행복의회 운영사항 : 동일(변경없음)
- 4. 6대 연임신청 : 3월 15일(월)

2. 개별 TF팀 회의 논의 내용 및 향후 계획 발표

1) 세부내용

회의내용

TF 팀명	내용
올바른 성인식	- 가출 청소년 관한 조례안 부분 의료 지원관련과 1366 여성 폭력 사이버 상담 사이트 홍보 2가지로 조례 정리 - 제 6조 (관리, 운영의 위탁) 부분 예산적인 문제 추가
청소년 심리	- 정책제안서 및 PPT 최종본 수정
청소년정치참여	- 현황 및 문제점 부분 설문자료 표와 원형차트 내용 맞지 않은 부분 수정 - 전체적 수정
중고교학생회연합	- 청소년들의 의사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제대로 의견 수렴 되지 않는 사례 추가 조사 - 외국 사례 세부화
청소년교통비	- 설문자료 추가 제작 - 출처를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수정
청소년문화지원금	- 문제인식 부분 비용 자료 최신 자료로 수정 - '학교 밖 청소년 포함' 표현 삭제
보건의료정책	- 현황 및 문제점 부분 문장 호응 맞게 수정 - 조례안 부분 제 2조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정
청소년증	- 문제인식 부분 청소년증 활성화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사례 수정 - 현황 및 문제점 부분 청소년증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설문자료 추가 - 청소년증 사용범위를 학교단위로 축소한다는 내용 삭제

3. TF팀 회의 및 결과 발표 1) 세부내용

회의내용

TF 팀명	내용
올바른 성인식	- 심의 결과 PPT 내용에 추가 및 수정
청소년 심리	- PPT 최종본 수정
청소년정치참여	- 제안서 오류 수정 및 PPT 준비 및 발표 역할 분담 결정
중고교학생회연합	- 제안서 및 PPT 수정, 대본 작성
청소년교통비	- 출처를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수정 - 설문자료 추가 제작 시간 관계상 보류
청소년문화지원금	- 비용 문제 자료 수정 - PPT 수정
보건의료정책	- 심의 결과 조례안 - PPT 수정
청소년증	- 문제인식 부분 자료 및 정책 제안서 부분 수정

결정사항

- 15차 정례회의 및 자문단 간담회 대비 PPT 리허설 진행: 3월 27일 (토) 조례 최종본 및 PPT 최종본 올리기: 3월 20일 (토)까지

건의사항 및 기타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5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1년 3월 27일 토 09:	30~12:00	장 소	중원수련관 5층 차오름실		
진 행 자	최경민 의장, 명미경 간사 기록 자 중등부의장 황혜정					
참석자 (총 명)	- 의원: 유재석, 정규연, 최경민, 김태연, 고은교, 민소윤, 김서희, 김영중, 고예진, 조정훈, 이가희, 허다인, 이민하, 양다원, 황혜정, 채원희, 이주원, 김서진, 이규리, 권희정, 신가원 - 간사 및 자문위원: 명미경, 김주환, 김선율, 홍승민, 허지수					
주요안건	공지사항, 3차 의안 심의					
	1. 공지사항 1) 4/3(토) 정례회의(차오름실) 2) 4/10(토) 정례회의+자문단 간담회(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자문위원 초청 중 3) 연임 신청한 9명,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진행, 선거 없이 진행 4) 4월 간담회 때 수정된 부분 PPT 발표에 추가하여 설명 5) 중원청소년 수련관 관장님, 팀장님 인사 진행 6) 본회의 날짜(5/22토요일 오전 예정) 7) 발표를 흥미롭게 진행할 수 있는 요소 고려하기 8) 최종 정책제안서+PPT 4월3일 정례회의때까지 카페에 전부 업데이트 2.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TF 팀명		내용			
	청소년문화지원금 - 피드백 토대로 사례, 제안내용 전환					
	청소년정치참여	- 오타 및 오류 수	H			
	청소년증	- 청소년증 발급 범	· 다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추기	+		
	중고교학생회연합	- 제안서 내 오타	및 오류사항 수정			
	3. 인권권익상임위원회					
	TF 팀명		내용			
회의내용	청소년 성보호	- 성보호 인식 심의	내용 기반으로 수정			
	혁신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반으로 내용 수정			
	예산특별위원회	- 발표준비 미흡으	로 발표 중단			
	4. 환경복지상임위원회					
	TF 팀명		내용			
	보건의료	- 보건실 오타 및 9 - 치과 주치의 지원	2류사항 수정 I대상 피드백 수용하지 않음			
	청소년 교통비	- 오타 및 오류 수	3			
	청소년 심리	- 상임위원회 피드	백 토대로 수정			
	5. 질의응답 1) 청소년 정치참여 TF팀 정당 관련해서 질의응답 2) 제안하고자 하는 바 명확하게 표시, 정치참여, 학생회 연합tf 융합 제안 6. 상임위원회 별 회의 진행 1) 교육문화 상임위원회 모두 가결 2) 인권권의 상임위원회 수정가결(예산특별위원회, 혁신특별위원회), 부결(청소년 성보호) 3)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모두 가결					

160

결정사항

건의사항 및 기타

김서진 의원 윤리위 선출



건의사항 및 기타

없 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16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1년 4월 3일 토 09:	30~12:30 장 소 중원수련관 5층 차오름실				
진행자	최경민 의장, 명미경 간사 기록 자 고등부의장 권희정					
참석자 (총 명)	- 의원: 유재석, 정규연, 최경민, 김태연, 고은교, 민소윤, 김서희, 김영중, 고예진, 조정훈, 허다인, 김서현, 이민하, 양다원, 황혜정, 채원희, 김서진, 이규리, 권희정, 신가원 - 간사 및 자문위원: 명미경, 김주환, 홍승민, 허지수					
주요안건	공지사항, TF팀 회의, 본회의 및 간담회 준비					
	1. 공지사항(논의한 사항) 1) 수정 가결 3개 팀 반영사항 발표 2) 4/10(토) 정례회의+자문단 간담회(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자문위원 초청 증 3) 본회의 날짜(5/22토요일 오전 예정) 4) 최종 정책제안서+PPT 4월3일(4월6일(화)) 정례회의 때 까지 카페에 전부 업데이트 5) 정책제안 발표에 필요한 영상, 사진 및 폰트 카페에 전부 업데이트 6) 5월 정례회의 투표(22일 본회의 전 2회 운영)					
	TF 팀명	내용				
	청소년문화지원금	- PPT 수정 및 정책 제안서 완성 - 간담회, 본회의 발표자: 채원희				
	청소년정치참여	- PPT 수정 및 정책 제안서 완성 - 정책 제안 발표에 영상 추가 - 간담회 발표자: 정규연, 본회의 발표자: 파트별로 발표				
	청소년증	- PPT 수정 및 정책 제안서 완성 - 간담회, 본회의 발표자: 양다원				
회의내용	중고교학생회연합	- PPT 수정 및 정책 제안서 완성 - 간담회 발표자: 신가원, 본회의 발표자: 황혜정				
	3. 인권권익상임위원회					
	TF 팀명	내용				
	올바른 성보호	- PPT 수정 및 정책 제안서 완성 - 간담회 발표자: 고은교, 본회의 발표자: 김서희				
	혁신특별위원회	- PPT 수정 및 정책 제안서 완성 - 간담회, 본회의 발표자: 김태연, 민소윤				
	예산특별위원회	- PPT 수정 및 정책 제안서 완성 - 간담회, 본회의 발표자: 유재석				
	4. 환경복지상임위원회					
	TF 팀명	내용				
	보건의료	- PPT 수정 및 정책 제안서 완성 - 정책 제안 발표에 연극 추가 - 간담회, 본회의 발표자: 김예진(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이가희(보건실 시설 지원)				
	청소년 교통비	- 정책 제안 발표에 영상 추가 - 간담회, 본회의 발표자: 조정훈				
	청소년 심리	- 전담회, 논화의 필요자: 요청분 - 정책 제안 발표에 영상 추가 - 간담회, 본회의 발표자: 이규원				
결정사항	본회의 업무분장(자유발언, 개회식 사회자), 간담회 및 본회의 활동보고 담당자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17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04.10(토) 09:30~12:30	장 소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		
진 행 자	고등부의장 권희정	기록자	중등부의장 황혜정		
참석자 (총 명)	 의원: 정규연, 김예진, 김태연, 고은교, 민소윤, 김서희, 김영중, 조정훈, 이가희, 허다인, 양다원, 황혜정, 채원희, 이규리, 권희정 간사 및 자문위원: 명미경 / 허지수, 김주환, 홍승민,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최미경 의원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이용행 팀장, 아름방송 김용기 보도부장, 중원청소년수련관 이재영 관장 및 청소년활동팀 김광식 팀장 				
주요안건	공지사항, TF팀 회의, 본회의 및 간담회 준비				

1. 정례회의

- 1) 간담회 리허설 진행, 5월 정례회의 일정 논의
- 2) 수정사항 발표

TF 팀명	내용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주민참여예산 심의와의 차이점 추가
혁신특별위원회	수정사항 없음
올바른 성인식	수정사항 없음
청소년 교통비	현재 실행되는 정책과 다른 부분 수정
청소년 정치참여	수정사항 없음
청소년증	ppt 수정
보건의료 정책	수정사항 없음
청소년 문화지원금	수정사항 없음

2. 보건의료 TF

1) 보건의료 TF 구성원 각 학교 보건실 상태 점검표 추가

회의내용

3. 청소년증 TF & 청소년 문화지원금 TF

1) 청소년증 혜택내용 청소년증 TF팀과 문화지원금 TF팀과 함께 대상 확대 고민

4. 청소년증 TF

- 1) 상품권 지급에 객관적 시각 필요
- 2) 악용 방지책 마련 필요
- 3) 단말기를 통한 자원봉사 인증제도 제안

5. 청소년 정치참여 교육 TF

1) 민주시민 조례 폐지 - 평생교육 관련 조례로 통합, 관련 사항 적용 및 방향전환 필요

6. 질의응답

- 1) 자유발언 내용 관련하여 질의 관련된 절차와 정보 안내
- 2) 청소년증 기능 확대 및 현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 및 응답
- 3) 문화지원금 피드백 내용 추가적인 사항 관련하여 질의 및 응답

7. 자문단 간담회 자문, 제언내용

- 1) 학교보건식 시설 지원 조례 관련 관심
- 2)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청소년증 발급 관련, 현재 성남시는 발급률5% 여성가족부와 조폐공사 측 의견조사 등 관련 조사와 활성화 지원 노력 계획중 학교측에 청소년증 단체발급 협조 요청한 상황이며, 관련 할인혜택도 고민중
- 3) 아름방송 김용기 부장님 청소년의회 명칭변경 관련 조례 개정 필수라고 생각하며 예산심의 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현안을 해결했으면 함 청소년증 발급 혜택 관련, 성남사랑 상품권 발급이 과용되고 있다고 생각함, 만약 실현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 발생 우려, 청소년증 내 교통카드 기능 병합 제안
- 4) 청소년 자원봉사 마일리지 등 봉사활동 참여에 대한 지자체 청소년 독려 필요
- 5) 청소년증TFT 제안 관련, 양평군 '청소년증 하나로 올패스' 사례 언급

8. 공지사항

- 5월 본회의 준비사항 꼼꼼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및 TFT팀별로 발표하는 의원 뿐만아니라 모든 의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기기간 동안 준비한 내용이 빠짐없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 바람.
- 4월 중 본회의 발표 자료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5월에는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연습하고 리허설 하는 시간으로 추진할 수 있음
- ★ 6대 모집중, 친구, 후배 및 선배, 지인대상 적극적인 홍보와 추천 필수 ★

결정사항

회의내용

5월 8일(토). 15일(토) 정례회의 진행

건의사항 및 기타

보건의료TFT 본회의 시 보건실⇒치과 순으로 진행 5대 본회의 자유발언 신가원, 김서희 의원



제다내 서나시처소녀해보이히 | 18차 정례회의 회의록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18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1.05.08. (토) 09:3	0~11:48 장 소	중원청소년 수련관 5층 차오름실		
진행자	최경민 의장, 명미경 간사 기록 자고등부의장				
참 석 자 (총 28명)		정, 채원희, 이주원, 김서진, 권희정, 신	- 영중, 고예진, 조정훈, 이가희, 허다인, !가원		
주요안건	TF팀별 회의, 의안심의 및 본	회의 준비			
회의내용	간사를 두는 것으로 수정 및 2) 의안심의 결과 - 각주 수정, 그래프 내용 표 3. 본회의 준비 1) 세부내용 - 일정표 안내 ★ 6대 모집중, 친구, 후배 및	내 수정사' 수정사' 피드백 기반 대본 작수정사' 피드백 기반 대본 작수정사' 성남사랑소 수정사' 수정사' 수정사' 수정사' 수정사' 수정사' 수정사' 수정사'			
결정사항	- 5월 15일 (토): 19회 정례호 - 5월 22일 (토): 제5대 성남/	의 청소년행복의회 본회의(장소: 성남시	· 의회 본회의장)		

건의사항 및 기타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19차 정례회의 회의록

일 시	2021.05.15. (토) 09:30~12:45 장소 중원청소년 수련관 5층 차오름실
진행자	최경민 의장, 명미경 간사 기록 자 중등 부의장 황혜정
참석자 (총 명)	- 의원 : 유재석, 정규연, 최경민, 김태연, 고은교, 민소윤, 김서희, 김영중, 고예진, 조정훈, 이가희, 허다인, 김서현, 이민하, 양다원, 황혜정, 채원희, 이주원, 이규리, 신가원 - 간사 및 자문위원 : 명미경, 허지수, 4대 의장 및 의원 2명(본회의 자문)
주요안건	본회의 리허설 및 각 특별위원회, TF팀 점검
회의내용	1. TF팀별 회의 1) TF팀 별 진행사항 관련 회의 및 PPT 수정 2. 본회의 리하설 1) 간사 선생님 설명 및 본회의 최종 리허설 진행 2) 시나리오 및 개회사, 폐회사, 소감문, 활동보고 확인 3) 팀별 발표자료 확인 3. 상임위원회별 질의응답사항 정리 1) 교육문화상임위원회 1건 (청소년 문화지원금TF 조례 내용) 2) 환경복지상임위원회 1건 (청소년교통비TF 조례 내용) 3) 인권권익상임위원회 1건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조례 내용)
결정사항	- 보건의료TF팀 치과주치의 발표 이민하 의원님으로 변경 - 학생회연합 TF팀 발표 신가원, 황혜정 의원님으로 변경
건의사항 및 기타	 청년 자문위원 질문내용을 상임위원회 별로 정리하여 질문자, 발표자 준비 16일(일)까지 팀별 정책제안서와 자유발언 제안서 최종본 카페에 업데이트 18일(화)까지 PPT, 시나리오 카페에 업데이트 22일(토) 본회의날 9시까지 교복착용, 개인 음료수나 텀블러 지참하여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집결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행복의회 부록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 청소년의원 현황

전체 : 22명 수정구 6명 / 중원구 6명 / 분당구 7명 / 4대 연임의원 3명

TOT 00/ 50T 00/ 441 00-10					
연번	소속구	성명	성별	학교/학년	비고
1	수정구	유재석	남	성일고등학교 3학년	예산심의특별위원장
2	수정구	정규연	Ф	복정고등학교 3학년	인권권익상임위원장
3	수정구	최경민	남	동광고등학교 3학년	제5대 의장
4	수정구	김태연	여	위례한빛중학교 2학년	혁신특별위원장
5	수정구	고은교	Ф	성남여자고등학교 3학년	
6	수정구	민소윤	여	위례한빛중학교 2학년	
7	중원구	김서희	Ф	동광중학교 3학년	
8	중원구	김영중	남	성남고등학교 2학년	
9	중원구	고예진	여	금광중학교 2학년	
10	중원구	조정훈	남	야탑고등학교 1학년	
11	중원구	이가희	여	숭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환경복지상임위원장
12	중원구	허다인	여	효성고등학교 2학년	
13	분당구	양다원	여	판교고등학교 2학년	윤리위원장
14	분당구	황혜정	여	내정중학교 3학년	중등부의장
15	분당구	채원희	여	성일정보고등학교 2학년	교육문회상임위원장
16	분당구	이주원	여	한솔고등학교 3학년	정책연구특별위원장
17	분당구	김서진	여	양영중학교 3학년	
18	분당구	이규리	여	매송중학교 2학년	
19	분당구	권희정	여	성일정보고등학교 3학년	고등부의장
20	연임	김서현	여	효성고등학교 2학년	대외교류특별위원장
21	연임	이민하	여	숭신여자고등학교 2학년	
22	연임	신가원	여	한국외국어대학교부속고등학교 2학년	

Seongnam City Youth Happiness Council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제5대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활동보고서

발행일 : 2021년 7월

발행처 : 성남시청소년행복의회, 성남시청소년재단 중원청소년수련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32 🏗 031-729-9300

http://www.snyouth.or.kr/jwyouth

